

자료 다-5-2 (공판기록 3675~3694)375)

서울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
(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92노401 자살방조 등
증인 한원석(韓元錫)
생년월일 1968. 1. 1.생
주민등록번호
직업 도서출판 '실험세계' 발행인
주거 서울

재판장은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
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증인에게는 송달불능이 되었는데, 어떻게 나오
게 되었나요.

답 : 제가 이사를 가서 송달이 안된 것 같은데, 제
가 신문을 보고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알고 전민련에
연락하여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 증인은 1990. 대유공전을 졸업하고 방송통신대
에 편입학하여 현재 졸업반이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월간 '실험세계'의 발행인입니까.

답 : 월간은 준비중이고, 도서출판 '실험세계'의 발
행인입니다.

375) 공판기록에서는 별지 형식으로 뒤에 있었으
나 내용상 앞으로 옮김.

문 : 증인은 대유공전 재학시인 1989. 중반부터 친
구 최정복의 소개로 김기설을 알게 되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술 한잔씩을 나누며 호형호제하는 사이
가 되어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당시 김기설은 자신의 이름을 '한정덕'이라
면서 가명이라고 하였지요.

답 : 예.

문 : 김기설이 전민련으로 옮긴 후에는 전보다 자
주 만났는데, 당시 증인은 전민련 사무실과는 약 50미
터 떨어진 곳에 있는 공해추방연합의 문예실 총국의
일을 보고 있었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김기설은 전민련으로 옮긴 후로는 한정덕이란
이름을 쓰지 않고 김기설이라고 하면서도 '김기설'도
가명이라고 하여 증인은 그렇게 알고 있었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1990. 10. 초순경 김기설이 액면 금230만원의
약속어음 1매를 가져와 증인에게 할인을 부탁하여 증
인은 평소 잘 아는 박영춘씨에게 부탁하고 박영춘씨
는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하여 할인하여 준 사실이 있
지요.

답 : 예.

문 : 위 약속어음은 1990. 12. 31.이 지급기일인데,
부도되었지요.

답 :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분실신고된 것이었습
니다.

문 : 결국은 위 약속어음 날짜대로 지급되지 않았
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박영춘씨에게 책임을 느끼고 증인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28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
는 형식을 빌어 금230만원을 차용하여 대신 변제해
주었지요.

답 : 예.

문 : 한편 김기설은 돈을 곧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다가 1991. 2. 13. 16:00경 공해
추방연합 사무실 맞은 편에 있는 다방에서 김기설을
만나 재촉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그래서 김기설은 이자를 감안하여 금 300만원
을 2. 18. 15:00까지 꼭 갚겠다고 하여 증인은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지요.

답 : 예.

문 : 이것이 그때 김기설로부터 써 받은 각서이지
요.

이때 변호인은 증인에게 증제23-1호, 각서376)를 제시
하다.

답 : 예, 맞습니다.

문 : 위 다방에서 김기설이 자필로 쓴 것인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이 용지는 어디서 난 것인가요.

답 : 정확한 기억은 없습디만, 당시 기설이형이
제계 선물로 준 전민련 수첩이 있었는데, 거기서 뜯어
낸 것인지, 아니면 기설이형 수첩에서 뜯어낸 건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문 : 그러면 그제 전민련 수첩에서 뜯은 것인가요.

답 : 예, 그건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문 : 김기설이 이 각서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요.

답 : 예.

문 : 그후 4. 25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역시 지키지 못하였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김기설이 1991. 5. 8. 분신한 후 신문보도 등을
통하여 비로소 '김기설'이 그의 본명이라는 사실을
알았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여러가지로 김기설에게 속았다는 생각
을 하지 않았나요.

답 :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을 좀 받았거든요.

문 : 이름도 가명이고, 각서를 썼는데도 돈을 안갚
는 등 이런 이유였지요.

답 : 예.

문 : 그후 유서를 기설이가 쓰지 않았고 남이 대필
하였다는 등의 보도와 강기훈씨가 혐의를 받고 있다
는 보도를 본 일이 있지요.

답 : 예.

376) 총자료집 II책 860쪽 참조.

문 : 그래서 증인은 갈등을 겪은 일이 있지요.

답 : 예.

문 : 어떤 갈등을 겪었나요.

답 : 신문에 보도된 유서가 정확하게 제가 받은 각
서와 똑같은데, 신문에는 유서대필로 보도되어 저는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김기설씨
글씨인데, 아니라고 판명이 나서, 저는 이것을 제출해
야 되는데, 이것을 제출하게 되면 제 신상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런 것으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라
서 제가 아는 형, 이것을 해준 박영춘씨에게 가서 고
민을 얘기하니 '명동성당으로 가자'고 해, 가서 서준
씨씨를 만나서 각서를 건네주게 된 것입니다.

문 : 그때가 91. 6. 초경이었나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그래서 증인이 지금 얘기한 이런 경위를 설명
해준 일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이것이 증인이 자필로 쓴 것이며, 그 내용도
사실인가요.

이때 변호인은 증인에게 증제23-2호, 자술서377)를 제
시하다.

답 : 예, 맞습니다.

검사 신상규

증인에게

문 : 증인이 김기설을 알게 된 후, 90. 10. 증인이
김기설의 어음을 할인해주기까지 증인과 김기설은 어
떤 관계로 만나고, 얼마나 자주 만났으며, 그 사이에
현금 등의 차용관계가 있었나요.

답 :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 : 1989. 중반에 최정복의 소개로 김기설을 만났
다고 했는데, 어떤 관계로 만났나요.

답 : 최정복은 대유공전 동기입니다. 그냥 최정복의
소개로 이름은 한정덕이고, 성남 민주화청년운동연합
회 사람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형이라고 부르며 만났
습니다.

377) 총자료집 II책 861쪽 참조.

재판장

증인에게

문 :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요.

답 : 평소 두달에 한 번정도 만났는데, 제일 처음 만났을 때는 대유공전 운동장에서 김기설이 찾아와서, 최정복이 소개해서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검사 신상규

증인에게

문 : 얼마나 자주 만났으며 돈 거래가 있었나요.

답 : 돈 거래는 없었고, 두달에 한번 정도 만났습니다.

문 : 김기설이 약속어음을 가져와 증인에게 할인을 부탁했을 때, 김기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 때이며, 증인은 어디에 있을 때인가요.

답 : 저는 당시 월간 '피쉬 라이프'라는 잡지사 기자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김기설씨는, 당시는 한정덕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성남 민청련에 있다고 했습니다.

문 : 김기설이 증인에게 할인을 부탁한 장소가 어디인가요.

답 : 당시 제가 방송통신대 총학생회 문화부 차장으로 있을 때였는데, 해화동에 있는 방송대 총학생회 사무실이었습니다.

문 : 이 자술서는 증인이 쓴 것이 맞는가요. 이때 검사는 증인에게 증제23-2호, 자술서를 제시하다.

답 : 예, 맞습니다.

문 : 여기에 보면, '90. 11.경 3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빌려줄 당시 차용증서같은 아무런 근거자료도 받지 않았고, 갚기로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어도 상환하지 않아 91. 2. 13 김기설을 만나 각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여 각서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인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여기에 기재된 내용과 지금 증언한 내용과의 사이에는, 증언은 90. 10.초 230만원짜리 어음을 할인 해주었는데 부도가 났다는 얘기고, 이 각서는 90. 11.에 아무 차용증서나 근거자료도 받지 않고 3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데, 어느 것이 맞는가요.

답 : 90. 11. 초에 3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아니고, 300만원이 된 것은 230만원짜리 어음이 부도가 나서 제가 국민카드로 그것을 매꾸기 위하여 차용한 것입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아까 '부도가 난 것은 아니고 분실신고된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언제 분실된 것인가요.

답 : 만기에 박영춘의 아버님이 은행에 가서 지급 제시를 하자 분실신고되어 부도가 났다고 해서 지급을 못 받은 것입니다.

검사 신상규

증인에게

문 : 그러면 각서에 '90. 11.경 3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서같은 것을 아무 것도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 자술서의 내용은 지금 증언한 내용과는 다르지요.

답 :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문 : 230만원 어음할인하여 부도가 난 것과 3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각서를 안 받은 것과는 다르지 않은가요.

답 :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230만원을 할인하여 부도가 났는데, 이것을 국민카드로 300만원해서 갚아주었다는 것입니다.

문 : 오늘 증언한 것이 그때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230만원짜리 어음을 할인해주면서 김기설에게 얼마를 주었나요.

답 : 230만원을 주었습니다.

문 : 이자도 안 댔고요.

답 : 예.

재판장

증인에게

문 : 230만원을 다 주었다면 할인이 아닌데, 이는 어음거래관계로 법률상 명백한 일인데, 230만원짜리 어음을 할인하여 230만원을 모두 준 것인가요.

답 : 230만원을 주었습니다.

문 : 어음의 액면금이 230만원이 분명한가요.

답 : 예.

문 : 맨 처음에 어음을 받고, 김기설에게 지급한 돈이 230만원 전액이었다는 것인가요.

답 : 그건 제가 안주고 박영춘의 아버지가 선이자 얼마인가를 떼고 준 것이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 신상규

증인에게

문 : 90. 11.에 증인이 김기설에게 300만원을 준 일이 없지요.

답 : 예.

문 : 지급일일에 분실신고되어 부도로 지급하지 못했다는 그 어음은 지급장소가 어느 은행이며, 그 발행인은 누구인가요.

답 : 지급자와 발행인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문 : 그래서 230만원 대신에 카드로 280만원 상당을 끊어 박영춘에게 변상을 해준 날은 언제인가요.

답 : 91. 1. 초경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문 : 어음의 만기가 12. 31.이고 그때까지의 이자는 모두 지급이 된 셈인데, 1. 초에 갚으면서 50만원이나 많은 280만원을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280만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국민카드로 빌리기 위하여 280만원어치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전표를 떼고 230만원을 차용해 박영춘의 아버님께 드린 것입니다.

문 : 증인이 280만원 전표를 끊고 230만원을 받은 업소는 어디인가요.

답 :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있습니다. 제 국민카드가 아직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문 : 각서 내용이 '2. 18. 15:00까지 갚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간까지 명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답 : 있었습니다.

문 : 그것이 무엇인가요.

답 : 저는 믿고서 차용증서 등을 하나도 안받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1. 초에 돈을 줄 때 며칠 후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어긴 것이 3번쯤 되었습

니다. 그래서 열을 받아서 각서를 받은 것입니다.

문 : 15:00라고 명시한 것이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답 : 열을 받아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 : 각서를 쓴 용지에 대해 변호인이 물었는데, 김기설의 수첩에서 뜯은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의 수첩에서 뜯은 것인지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가요.

답 : 저에게서 뜯었는지, 기설이형에게서 뜯었는지 생각이 안납니다.

문 : 증인 것이거나, 김기설의 것이거나 두 사람중의 누구 것인지는 몰라도 그 수첩에서 뜯어낸 종이라는 뜻인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증인 것일 경우에 그 수첩은 무슨 수첩인가요.

답 : 기설이형이 준 전민련 수첩입니다.

문 : 김기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증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같은 수첩인가요.

답 : 예.

문 : 그 각서를 쓴 날자가 2. 13이라는 것이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그러면 증인이 김기설로부터 전민련 수첩을 선물받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수첩을 받은 것이 언제쯤이고, 어디서 받았는지 아는가요.

답 : 90. 11. 말이나 12. 초에 전민련 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문 : 이러한 수첩인가요.

이때 검사는 증인에게 증제 11-1호, 전민련 제출 수첩을 증인에게 제시하다.

답 : 예, 맞습니다.

문 : 이 각서와 김기설의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과는 그 절취선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변호인 이석태

증인은 그 용지가 증인의 수첩에서 나온 것인지 김기설의 수첩에서 뜯은 것인지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고, 더구나 증인은 전문적인 감정인도 아니므로 절취선의 일치 여부에 관하여 진술할 입장에 있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발문의 철회를 명하여 줄 것을 바라고

이에 이의신청.

검사 신상규

증인이 두 사람중 한 사람의 수첩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고, 절취선의 일치 여부는 법원에서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

재판장

변호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위 검사의 신문의 철회를 명한다 결정고지하고 법원은 절취선의 일치 여부의 확인은 하지 안겠다고 고지.

검사 신상규

증인에게

문 : 증인이 김기설로부터 받았다는 전민련 수첩을 가지고 있는가요

답 :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 : 이 수첩에 보면 2월, 3월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4월부터 기재가 되어 있지요

이때 검사는 증인에게 증제11-1호, 수첩의 일정표³⁷⁸⁾란을 제시하다.

답 : 예.

문 : 이 수첩은 홍성은에게 김기설이 준 수첩인데, 여기에도 3. 20.부터 기재가 되어 있지요.

이때 검사는 증인에게 증제7호 수첩을 제시하다.

답 : 예.

문 : 전민련에서 예산부족으로 91. 수첩이 90.에 이미 배포된 것이 아니고 91. 3경에 배포되었기 때문에, 홍성은도 김기설로부터 수첩을 선물받은 것이 3월이고, 김기설의 수첩도 4월부터 사용을 했는데, 증인은 90. 11. 말에 받았다고 했지요.

답 : 예, 그때쯤 받았다고 했습니다.

문 : 증인의 자술서는 언제 어디서 쓴 것인가요

답 : 거기에 적혀 있는대로, 91. 11. 18. 공해추방운동연합회 맞은편에 있는 모 다방에서 썼습니다.

문 : 증인에게 증인소환장이 송달이 안되었는데, 전민련에 연락을 해서 알고 나왔다고 했지요

답 : 예.

문 : 전민련의 누구에게 연락을 했나요

답 : 전민련 사회부 간사님에게 전민련 사무실로 연락을 했습니다.

문 : 그러면 며칠전 기사가 난 것을 보고, 전민련 사무실로 전화를 했었다는 것인가요

답 : 예.

문 : 누구와 통화하였나요

답 : 사회부 간사님요

문 : 통화는 언제 하였나요

답 : 4. 6.경에 했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그전에는 증인으로 채택되었는지 여부를 물랐다는 것인가요

답 : 예,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문 : 증인은 어음관계에서 증개해준 것에 불과하고, 배서관계는 증인은 빠져 있고, 김기설이 직접 박영춘의 아버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답 : 예.

문 : 그 약속어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답 : 김기설씨에게 주었습니다.

문 : 약속어음이란 그것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고, 변제를 받은 후에 돌려주는 것이 상식인데, 돈을 받지 않고 돌려준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요

답 : 당시 돈을 못 받았지만 믿고서 돌려준 것입니다.

문 : 약속어음을 돌려준 때는 언제였나요

답 : 91. 1. 초에 3명이 만나서 돈을 친구 아버님에게 갚을 때 약속어음을 돌려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언제까지 갚아라하면서 김기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문 : 그 장소는 어디였나요

답 : 기독교 방송국 옆 모 다방이었습니다.

문 : 원금이 230만원이 맞습니까

답 : 예.

문 : 그러면 230만원에 대해 50일 정도에 김기설이 금 300만원을 갚기로 하였다는 것인가요

법원 사무관 최 인 기
재판장 판사 임 대 화

* 증인 선서서 <생략> (공판기록 3695)

답 : 신문을 보고 카드 할인하는 곳에 전화를 하였더니 280만원의 매출전표를 끊어야 230만원의 현금을 준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으며 할부의 이자까지 감안하여 김기설에게 300만원을 갚으라고 한 것입니다.

문 : 친구 아버지가 직접 김기설에게 빌려주었으므로 김기설이 직접 갚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증인이 갚아준 것은 증인이 호의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보증을 선 것인가요

답 : 제가 소개를 한 것이므로 도의적 책임으로 갚아준 것입니다.

문 : 혹시 김기설이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는 어느가요

답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문 : 이전 어음외에 김기설과의 거래관계는 있었나요

답 :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피고인

증인에게

문 : 검찰관의 질문에 의하면 마치 전민련 수첩이 3월경에 제작이 되어 그때서나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전민련 수첩은 그 전해 12월경에 위촉판매를 통하여 500여부가 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추가 부수가 제작되어 12월에 사무실에 있었으며, 3월 것은 위촉판매에서 남은 분량을 전민련에서 회수한 것인데, 검찰관은 마치 전민련이 예산부족으로 3월에 제작을 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같지요

답 : 예, 맞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증인은 그 수첩을 평소에 가지고 다녔나요

답 : 예, 가지고 다녔습니다.

문 : 차용증 같은 것은 수첩을 쪽 찢어 받을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닌 듯한데, 깨끗한 종이에 작성하지 않고 수첩 찢은 것에 받은 이유는 무엇가요

답 : 믿었기 때문이었고, 그것이라도 받아야 제 속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378) 총자료집 I 책 728쪽 참조.

☐자료 다-5-3 (공판기록 3696~3703)379

서울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

(제 5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92 노 401 자살방조 등
증 인 이 영 수 (李永洙)
생 년 월 일 1964. 10. 16. 생
주민등록번호
직 업 공 무 원
주 거 서울

재판장은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
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검사 윤석만

증인에게

문 : 증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에 근무하는가요.

답 : 예.

문 : 증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답 : 저는 감정인들이 감정을 할 때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각종 분류된 증거물을 사진실에 촬영의뢰하고, 적외선 촬영, 자외선 촬영 등은 제가 하고 있으며, 문서분석실의 시약이나 소모품 등의 청구 및 서류를 정리하고 있으며, 감정서를 타자하고, 이영미 부재시 접수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 : 문서분석실에서는 문서감정처리부를 비치하고 문서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회보 상황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지요.

답 : 예.

379) 공판기록에서는 별지 형식으로 뒤에 있었으나 내용상 앞으로 옮김.

문 : 평소 문서감정처리부는 문서분석실 여직원 이영미가 감정결과회보서를 보고 기재하는 것인가요.

답 : 예.

문 : 증인은 91. 5. 27. 문서감정처리부³⁸⁰⁾ 감정 접수번호 4407호에 대한 감정결과판에 '1과 2 상이한 필적, 1과 3은 동일한 필적, 절취선 일치하지 않음'이라고 빨간 볼펜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여기에서 1, 2, 3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는가요.
답 : 1이 유서이고, 2가 수첩이고, 3이 강기훈 진술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그때 위 기재내용은 이미 써 있는 감정결과내용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기재한 것이지요.

답 : 예.

문 : 수정액으로 지운 내용은 '1, 2, 3, 4, 5 모두 동일한 필적. 들출부분이 3매와 겹쳐지는 상태이므로 절취선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이동여부 논단할 수 없음'이었던가요.

답 : 예.

문 : 지운 내용도 처음에 이영미가 기재한 것이지요.

답 : 예.

문 : 이영미가 처음 기재한 내용을 지우고 증인이 새로 기재한 것은 감정물이 유서, 수첩, 강기훈 진술서 등 3점인데 감정결과에는 1, 2, 3, 4, 5 다섯 가지 필적이 동일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를 수정하게 된 것이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감정결과를 수정할 때 감정결과회보서를 보고 기재한 것인가요.

답 : 아닙니다.

문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그때 이영미가 감정서 원본과 발송분을 발송 처리하려고 서무계에 모두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제가 타자할 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기재한 것입니다.

문 : 증인이 감정결과 회보서를 보고 쓴 것이 아니라면 증인은 어떻게 감정결과를 기재할 수 있었나요.

답 : 감정인 중 김형영 실장님이 타자를 칠 줄 몰

380) 총자료집 II책 520쪽 참조.

랐기 때문에 제가 김형영 실장님의 감정서를 대신 타자해 주었는데, 그 타자할 때의 기억으로 감정결과를 기재한다는 것이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문 : 증인은 감정결과 회보내용과는 다르게 유서와 수첩이 상이한 필적이라고 기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5. 25. 발송했던 감정내용이, 유서와 이력서, 주민등록분실서 등 5가지 필적이 다르고, 또 수첩과 위의 5가지 필적이 다르다는 내용이었었는데, 제가 그것을 유서와 수첩이 상이하다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변호인 박연철

증인에게

문 : 문서감정처리부는 평소에 이영미씨가 기재를 하는가요.

답 : 예.

문 : 이영미씨가 없을 때 증인이 기재를 하는가요.

답 : 예.

문 : 이것을 기재할 때는 이영미씨가 없었나요.

답 :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이영미는 발송처리 등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처리한 것입니다.

문 : 이영미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이 기재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 당시 이영미는 문서분석실 내에는 없었습니다.

문 : 국과수 내에는 있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것을 지우고 증인이 정정하여 기재하였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견 외에 이영미가 이미 쓴 것을 지우고 정정한 일이 있었나요.

답 : 예, 있습니다.

문 : 그것은 증인의 어떤 권한에 의한 것인가요.

답 : 이영미가 없을 때 제가 접수처리부를 자주 기재하였기 때문에, 제가 접수를 하고 기재를 하다가 틀린 사항을 발견하면, 제가 지우고 다시 쓰곤 하였습니까.

문 : 그러면 이영미가 원래 기재한 것을 다시 확인해볼 정도로 그 접수처리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정확하게 기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군요.

답 : 접수처리부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는 제가 생각을 못하겠고, 그날 제가 접수를 하다가 보니까 틀린 것 같아서 지우고 다시 적은 것 같습니다.

문 : 만일 틀렸다면, 단순히 기억에만 의존하여 틀렸는지 여부를 확인하는가요, 아니면 실제 감정서를 보고 확인을 하는가요.

답 : 실제 감정서를 보고 하는데, 저희 방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그때 바로바로 잡아놓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서가 서무계에 가 있는 상태에서 타자할 때의 기억만으로 기재한다는 것이 착오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문 : 타자할 때 본 감정서에 대한 기억만으로 정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답 : 예, 제가 확인을 않고 했던 것은 제 착오였습니다.

문 : 그런데 증인이 기억하는 것은 틀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를테면 증인이 감정물 1, 2, 3, 유서, 수첩 그리고 강기훈의 진술서로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확실히 기억된 것이었나요, 그것이 감정물이었다는 것을.

답 : 그것이 감정물이었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었는데, 5. 29.자 발송했던 유서, 이력서, 주민등록분실신고서 등 5가지 필적이 다르다고 나왔었고, 수첩과 이 5가지 필적이 다르다고 회보되었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잠깐 착각을 일으켜서 유서와 수첩이 다르다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문 : 증인은 착각이라기보다, 이영미가 쓴 것에는 5가지 이상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증인이 지우고 쓴 것이 아닌가요.

답 : 그 감정서의 의뢰내용에는 3가지밖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

문 :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증인이 수정한, 이영미가 이미 기재해 놓은 것에는 감정대상물이 5가지로 이미 기재되었던 것 아닙니까.

답 : 결과에만 그렇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문 : 증인이 지금 진술하기로도 5가지의 감정물이 서로 달랐다는 기억이 있어서 고쳤다고 그러는데...

답 : 아니 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당시 이후에 의뢰된 5가지 사항이 있었으나 감정의회사항에는 유서와 수첩, 강기훈 진술서밖에 의뢰내용이나 감정물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정결과란에 1, 2, 3, 4, 5 동일필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맞는 것이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의뢰증거물이 3가지 뿐이고 5가지를 물어본 의뢰사항이 아니라고 고쳐야겠다고 생각하여 이것을 고치게 된 것입니다.

문 : 증인이 타자하였다는 감정서를 증인이 언제 타자한 것인가요.

답 : 제가 감정서를 타자해서 실직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과장님이 결재를 한 다음에 발송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경과된 시간은 두세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문 : 감정서를 타자한지 2, 3시간 후에 고쳤다는 것이지요.

답 :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같은 날이었나요.

답 : 예, 같은 날이었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증인이 정정한 부분을 표시하라고 명하고 문서감정처리부 사본을 제시한 즉, 증인은 이에 표시를 하다.

1992. 4. 9.

법원 사무관 최 인 기
재판장 판사 임 대 화

* 증인 선서서 <생략> (공판기록 3704)

☐자료 다-5-4 (공판기록 3666~3667)

재판장

피고인에게

문 : 1991. 5. 5. 이영미의 집에서 홍성은양 등 4사람이 만났는데, 이영미의 생일을 가장해서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

답 : 잘못된 것입니다.

문 : 그렇다면 당시 만난 이유는 무엇가요.

답 : 당시 같이 있던 학교후배 진수가 생일이 지났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만났는데, 그냥 가벼운 만남이었습니다.

문 : 그러니까 명분을 거기에 두고 만난 것이며, 특별한 목적을 두고 만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그때 일상적인 얘기 외에 특별히 오간 얘기가 있었나요.

답 : 그때 세계 탁구선수권대회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머 다른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문 : 1991. 5. 7. 피고인이 집에 들어간 시간이 몇시였나요.

답 : 제 여자친구를 만나고, 그 다음날이 어버이날이었으므로 꽃도 사고 했으니까, 저녁 10시 좀 안되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문 : 5. 5. 피고인이 '실수를 해서 미안하다'고 했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실수를 했다고 한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던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요.

답 : '실수'라는 것은, 같이 계속 술 마시자고 했던 것을 5. 7. 전화로 성은이가 질책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실수'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술마시자고 한 것이 실수라면 실수입니다.

문 : 5. 7. 밤은 김기설이 자살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사람이 찾으러 다닐 때인데, 당시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인가요.

답 : 예, 전혀 몰랐습니다.

문 : 그 다음날 아침에 피고인은 전민련 사무실로 출근을 했지요.

답 : 예, 출근을 했습니다.

문 : 출근하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었나요.

답 : 집에서 알고 난 뒤 출근했습니다. 집에서 뉴스를 통해 알았습니다.

문 : 그리고 전민련 사무실의 사람들이 찾으러 다녔다는 사실은 언제 알았나요.

답 : 그 며칠뒤, 아마 하루나 이틀뒤에 들었습니다.

문 : 5. 10. 업무일지를 김현수가 찾아내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맞는가요.

답 :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문 : 당시 업무일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답 : 시점이 헛갈리기는 합니다만, 업무일지를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설이가 쓴 필적이 있으면 내보 보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업무일지였는지는 모르고 하여튼 김기설이 쓴 필적이 있으면 찾아보라고 했다는 것인가요.

답 : 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그때 같이 찾은 것인가요, 아니면 피고인은 찾지 않았었나요.

답 : 저는 특별히 찾는 행동은 하지 않았했습니다.

문 : 김현수가 찾아내는 것은 보았나요.

답 : 같이 찾아내서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 :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순간을 보거나 찾고 있는 것을 본 일이 있었나요.

답 : 찾아내는 순간은 보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업무일지' 찾장이 그렇게 많이 찢어져 있는 형태는 아니었다고 기억하며, 임무영이 썼다는 파란색 글씨는 처음 없었던 것 같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억은 어떤가요.

답 : 그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네가 알고 있는대로, 차이가 나는대로, 있는 것이 있으면 다 써라'고 하여, 저는 '잠깐밖에 못봐서 모르겠습니다'고 했더니 '그 기억에 의존해서 써라'고 하여 제가 썼습니다. 그것을 쓰게 된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는 1심에서 제가 한번 진술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문 :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한 것입니다.

답 : 그런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 : 그러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가요
 답 : 예, 사실과 다릅니다.
 문 : 이것이 이동진의 증언에 의하면 '김기설의 책상에서 91. 7. 초에 찾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김현수가 5. 10. 업무일지를 찾을 때 어떻게 해서 이것은 발견하지 못했는지, 그것에 대해 알거나 의견이 있는가요
 답 : 잘 모르겠습니다.
 문 : 피고인이 검찰에 구속 수사중일 때 변호인 접견을 3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맞는가요
 답 : 예, 검찰관 입회하에서 했습니다.
 문 : 한번은 6. 27.이고, 또 한번은 7. 8.일은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데, 나머지 한번은 언제인지 아는가요
 답 :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이것은 이동진의 자술서에 있는 전민련 기구 표인데, 맞는가요
 이때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수사기록 919장³⁸²⁾을 제시한다.
 답 : 예, 맞습니다.
 문 : 피고인이 전민련에 어떠한 동기와 경위로 들 어간 것인지 말해줄 수 있는가요
 답 : 이미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전민련 산하단체인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에 있다가, 파견의 형식으로,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 : 파견이면, 전소속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가
 답 : 그것이 좀 애매한 것인데, 그냥 그쪽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고, 또 제가 원했으므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파견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제가 전민련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 : 그렇다면 그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얘기해줄 수 있는가요
 답 : 파견문제는 당시 전국노운협 사업 2부장님이

셨던, 지금 성북을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신계륜선배가 했었습니다.
 문 : 그러면 지금 전민련 일만 보고, 달리 취직을 했다거나 다른 생계수단이 있다거나 다른 업무를 한 일은 없는가요
 답 : 예, 고민을 해봤는데, 별로 못했습니다. 다른 일 한 일은 없습니다.
 문 : 피고인은 총무국 소속이라고 하였고, 김기설은 사회국 소속인데, 총무국과 사회국은 업무관계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요
 답 : 사회국뿐만 아니라 다른 각 집행부서에서 돈이 필요하면 저에게 청구서를 주는데, 그러한 정도의 업무관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같은 것은 제가 공동관리를 하니까, 그 정도의 사무실 내에서의 관계이지 특별히 업무적으로 밀접한 것은 없습니다.
 문 : 일반회사의 총무과와 각 부서와의 관계와 같은 것인가
 답 : 제가 일반회사에 근무한 일이 없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총무국에서의 일반적인 일입니다.
 변호인 이석태
 증언(91가883)
 문 : 피고인이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받으면서, 김기설은 신나를 뿌리고 분신자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검찰로부터 김기설군이 분신자살하며 사용한 신나를 언제 어디서 구입했는지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 어떤 내용인지 얘기할 수 있는가요
 답 : 수사담당 검사님이신 신상규 검사님께서 한번은 제가 검찰에 가서 꽤 날씨가 지났을 때였는데, '유서 쓸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다가 그것에 대한 반증으로서, '그날 새벽에 신나를 마포에 있는 어디서 구입한 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문 : 그러면 분신 당일 새벽에 신나를 마포 어디에 선가 구입했다고 하였나요

382) 총자료집 I 책 516쪽 참조.
 383) '피고인에게'의 오기.

381) 총자료집 II 책 811쪽 참조.

답 : 예.
 문 : 우리의 상식으로, 새벽이면 대개 문을 닫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나요
 답 : 그 얘기도 했습니다. '다 닫는데, 한군데 일찍 문 여는 데가 있다. 그것도 조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문 : 그러면 당시 그런 검사의 얘기를 듣고, 피고인은 업무일지 건도 있고 그래서 혹시 '이제는 나의 무고함이 밝혀졌구나. 검찰도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답 : 당시 전반적인 분위기가, 신 검사님께서 한자숙어를 풀이해서 저에게 알려준다든지, 풀어진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때 당시에는 저를 대필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과정이었고, 또 신나 구입경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처럼, 제가 자살을 방조했으면 제가 신나도 구입해주고 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저에게는 해당 안되는 다른 사람의 얘기처럼 얘기를 했고, 또 신나 구입경위도 잘 알고 저에게도 얘기해주고 해서 '나한테는 혐의를 두지 않고 있구나'하고 착각을 좀 했습니다.
 문 : 피고인은 이것을 본 일이 있는가요
 이때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증거9-1호³⁸⁴⁾를 제시한다.
 답 : 예, 검찰청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았습니다.
 문 : 그때 그것을 보여주면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얘기를 하고 신문물 했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답 : 이것을 준 것은 저에 대한 필적수사가 처음 시작될 때, 좀 강도 높게 저에 대해 추궁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6. 25.-26.쯤이었으니 초기이지요. 그때 여러가지 필적자료를 주다가 이것을 주면서 '이것 네가 썼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 글씨가 유서와 가장 똑같은 글씨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 끝났다. 빨리 자백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강도 높은 추궁이 있었는데, 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관계, 그리고 이것과 같이 입수되었던 입수물인 회의록에도 이런 필체가 있다.

384) 총자료집 I 책 652쪽 참조.

너는 혁노맹의 조직원이고 그 재건대회에 참가를 했다. 그리고 이것은 네가 너의 조직 하부에게 전달을 할려다가 전달을 안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너 빨리 유서를 대필했다고 자백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혁노맹회의록은 혁노맹사건 당시에는 입수되지 않은 자료인데, 이 부분까지 확대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네 동지들과 주변사람들 피해를 주지 말고 자백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안사나 안기부로 넘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 : 그러면 피고인이 그런 걸 쓴 일이 없으며, 피고인이 쓴 글씨가 아니지요
 답 : 예.
 문 : 그러면 뒤에 혁노맹관계 조사시에, 그것이 과연 피고인이 쓴 것인지 조사받은 일이 있는가요
 답 : 공간쪽에서는 이것의 내용에 관하여 물어보았지, 이것을 내가 썼느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 증거조사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더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 재판장 사실심리 및 증거조사 종료
 검사 신상규
 별지 의견서³⁸⁵⁾와 같이 진술하고, 피고인에 대한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위반죄는 그 증거가 충분하므로 이와 상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항소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시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검사의 구형대로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진술.
 재판장
 피고인 및 변호인들에게 최종의견 진술기회 부여
 변호인 김창국
 별지 변론요지서³⁸⁶⁾와 같이 진술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무죄변론을 한다.

385) 검찰 논고문, 총자료집 II 책 627쪽 참조.
 386) 총자료집 II 책 636쪽 참조.

☐자료 다-5-5 (공판기록 3667~3675)

강기훈 최후진술서

피고인

저는 무죄입니다. 저를 유서대필혐의로 기소한 검찰과 유죄판결을 내렸던 1심 재판부는 천인공노할 역사적 범죄자들입니다.

항소심 최후진술을 준비하면서 위의 한 마디, 두 문장 외엔 달리 표현할 그 무엇이 없음을 몇 번이고 느껴야 했습니다. 절대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대와는 달리 이미 법원의 판결에 의해 범죄자의 굴레를 뒤집어쓴 입장에 있고, 그 절망의 참담함 속에서 도대체 어디에 대고 어떤 설명을 해야될 지 모를 심정을 안고 임한 재판이었기에 그러했고, 너무나 명백한 무죄의 증거들을 가볍게 무시해 버릴 정도로 놀라운 대담성과 몰상식을 보여준 법원의 존재가 이전 전혀 미답지 못하기에 더더욱 할 말이 별로 없다는 느낌을 가졌을³⁸⁷⁾ 것입니다. 항소심 내내 웬지 제가 예정된 수순에 의해 움직이는 어떤 연극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강한 느낌을 받고,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들러리 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설명 못할 의구심도 한몫 하면서 이런 느낌은 증폭되어 갔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저의 주관적 감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사건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은 1심 최후진술과 항소이유서에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몇가지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수차례 걸친 진술기회를 통해서 소위 국가최고수사기관인 검찰의 수사를 빙자한 범죄적 행위,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이 얼마나 허위에 찬 것인가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에도 밝힌 바 있지만 허위감정, 뇌물수수사건의 주인공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전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이 했던 필적감정은 가장 객관적으로서는 전민련 사회부 업무일지의 감정에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김기설 동지가 생전에 남긴 각종의 필적에서 이미 엉터리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387) '가졌던'의 오기.

이 업무일지의 감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유서와 동일한 부분이 있으나에만 주안을 두고 ... 중략합니다 ... 유서와 업무일지의 필체와 동일하다고 감정한 것이지, 모든 필체가 유서와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다.'³⁸⁸⁾ 이 말은, 결국 요약하자면, 모든 필체가 동일하지는 않았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감정대상인 업무일지 3장이 유서필체와 같다고 한 것을 인정해버린 꼴이니, '같은 데, 같지 않다'는 국민학생도 구사하지 않는 말을 공문서에 게재해 버린 셈입니다. 당시에는 국과수의 공신력을 너무나 철석같이 믿은 탓에 이런 문장으로서 가치마저 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되지만, 이전 국가의 공인으로서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엄청난 부정의 장본인으로 천인공노할 범죄자임이 드러난 김씨가 했다는 소위 감정서들은 제3자가 보아도 휴지조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지금도 명백한 사실을 두고 정신 못차리고 있는, 그리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검찰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서 몇몇의 무리들일 뿐, 시쳇말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게 되었습니다. '뇌물은 받았는데, 허위감정은 없었다. 허위감정에 관련된 것은 아니다'는 악마구니에 가까운 지저분할 정도의 유치한 변명은 과거 박종철사건에서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수사기관의 발표나, 부친경찰서 성고문사건 당시에 공안당국이 '운동권은 성을 혁명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따위의 유명한 거짓말들과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불과 몇년이 지나기도 전에 실제적인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 두 가지의 예와 같은 전형이 소위 유서대필사건의 과정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1심 논고와 항소이유서에서 그리고 종전의 2심 논고에서 '피고인은 공산주의자 10대 신조를 맹신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좌경폭력 혁명분자로서 ... 중략합니다 ... 동료의 죽음을 부추기는 행위는 피고인의 사상적 성향과 전력을 보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제멋대로 쓰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눈을 가지고 여기서만 보아도 알 수 있을지,³⁸⁹⁾ 국가 최고수사기관이라는 검찰이

388) 자료집 II책 332쪽 참조.

389) '있듯이'의 오기.

보여준 놀라운 상상력과 독설, 스스로 거짓말을 감추기 위한 악랄함은 갈 데까지 간 광인의 행태 바로 그것입니다.

도대체 그 무엇이 편협하고도 아집에 가득찬 말들을 스스로 신성하다고 주장해 마지 않는 법정에서 스스로 내뱉게 한 것인지는 그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머지않아³⁹⁰⁾ 장래에 공권력의 횡포와 무자비한 인권탄압의 전형으로 기억될 것만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과 법원이 입술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 마지 않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허위감정, 뇌물수수사건으로 의혹의 일단을 스스로 드러내기까지는 불과 3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순투성이 그리고 어떤 부분은 문장으로서의 가치마저 없는 판결을 내린 1심법원의 공신력과 권위가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 유명한 이성과 상식의 회복을 향한 투쟁, 드레퓌스사건에서 드레퓌스의 무고함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려 했던 법원과 군부의 가공할 음모와 몸부림 속에서 오히려 진실의 일단이 드러났듯이, 억지로 갖다 맞춘 유서대필사건의 드라마틱함은 이렇게 시작되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진실이 지하에 묻히면 자라나고 무서운 폭발력을 축적한다'는 당시 에밀 졸라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봅니다. 정녕 검찰과 법원은 언제 터질 지 모를 지뢰의 매설자가 되고자 합니까. 이미 1심과 2심의 전 과정을 통해서 판단의 자의성과 치명적 오류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서를 결정적인 증거로 삼아 또다시 세계 유죄의 칼날을 들이대고야 말 겁니까.

더 이상의 설명과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번 재판에서 반드시 무죄판결이 세계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번째로는 물론 제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개월여의 구금생활동안 누명쓴 자의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온 몸으로 맛보고 있는 제 자신과 가족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안겨줘서는 안됩니다. 이 아픔이 비단 저 혼자만의, 그리고 제 가족만의 아픔이겠습니까. 힘에 의해 강요된 침묵과,

390) '않은'의 오기.

혹을 백이라고 우기는 게 공익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사회, 한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고 이를 역시 '공익에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는 과정은 한 사회의 모든 성원의 아픔, 치유될 수 없는 상흔을 남깁니다. 무고한 자를 벌하는 곳은 더 이상 사람이 발 붙이고 살아갈 만한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당연한 상식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거짓이, 허위가 진실을 누를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력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라면 가장 기본적인 덕목과 가치로 추앙받아 왔습니다.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이 자리에서 확인받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복돋기 위해서라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당연하고도 소박한 진리를 우리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먼 나라의 것으로 생각해버리고 마는 경향이 우리 사회적 의식의 한 부분이 되어 왔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우리의 비극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자가 대접받고 잘 살 수 있다는 소박한 상식이 이 땅의 노동자들과 농민에게 통용되지 않는 것처럼,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한 개인은 희생되어야 할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상식이 그간 평범한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해왔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그를 확인해주었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피해자가 나와서도 안되고, 비이성의 불건강함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는 무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세째로 국가수사기관의 폭력과 인간성 파괴행위, 전횡을 막고 국민의 공복으로 자리매김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법원이 건물의 외관이 상정하듯 공정함과 만인의 공평함을 떠받치는 기관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는 무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고 자신의 무사안일을 위해 오히려 한 개인을 끝없이 매도하고 야수와 같은 유형 무형의 압력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꿈과 희망도 자리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뇌물은 받았는데, 허위감정은 없었다'고 세살박이 어린 애에게도 통하지 않을 거짓말을 늘어놓는 검찰을 그 자리에 그냥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이들에 의해 판단력을 위임하고 최소한의 지능마저 저당잡힌 법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거듭나야 합니다. 순리적이고도 상식적인 문제해결을 할 때 법원은 만인의 권위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법정에서의 마지막 진술을 하고 있는 저는 아까의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항소심 내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은 1심과 같은 판결을 법원이 또 반복하지 않겠느냐 하는 한심스런 어찌면 생각하기조차 괴로운 상념의 반복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한 사회의 보수적 시각을 대변해온 법원이 가치판단이 아닌 사실유무 그 관계에도 정치적 편견을 또다시 드러내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저를 무던히도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손쉽게 이런 우려를 탈피하고 스스로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드렸습니다. 역사의 오욕으로 남을 해묵은 정치재판이 오늘 이 시까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서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자의 절망과 그 땅 끝에서 울리는 음울한 비탄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거대한 공권력의 폭력, 그것은 오늘 저를 치고 있지만,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을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자의 울부짖음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지지 않기 위한 오늘의 조그만 노력은 정의와 평화를 향한 힘있는 한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를 끝까지 변론해주신 유현석, 김창국 변호사님, 그리고 이석태 변호사님, 박연철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무죄를 믿고 진실을 향한 싸움을 아낌없이 벌여나가 주시고 있는 대책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게 구치소로 배달되는 각종의 편지 속에서 저를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 제가 게으름 때문에 답장을 해드리지 못했지만,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재판장
변론종결

1992. 4. 9.

법원 사무관 최 인 기
재판장 판사 임 대 화

☐자료 다-5-6 (공판기록 3712~3742)

서울고등검찰청

1992. 4. 9.

수신: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2부

발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신 상 규

제목: 의견서 제출.

귀원 92노 401호 피고인 강기훈에 대한 자살 방조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별첨 의견서와 같이 검찰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끝.

意 見 書

(自殺幫助等事件)

1992. 4. 9.

서울高等檢察廳

目 次

一. 序 言	— 1
二. 被告人의 無罪主張에 대하여	— 2
1. 遺書가 代筆되었다는 事實에 관하여	— 2
2. 被告人이 遺書를 代筆하였다는 事實에 관하여	— 9
3. 犯行의 日時, 場所, 動機에 관하여	— 18
4. 辯護人이 提出한 書證에 관하여	— 18
三. 量刑不當에 관하여	— 21
四. 求 刑	— 28

一. 序 言

0. 저회 검사 일동은 6차에 걸쳐 특별재판기일과 검증 기일을 지정하면서까지 이 사건의 실제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제1심에서 집중 심리된 사실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심리하여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0.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들이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의 유죄인 사실 및 증거관계에 관하여 가급적 제1심의 논고 및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급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二. 被告人의 無罪主張에 대하여

1. 遺書가 代筆되었다는 事實에 관하여

0. 제1심 공판과정에 나타난 증거인

-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의 증언 중 유서의 필적은 김기설의 필적과 상이하며 전민련이 김기설의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은 찢어진 전 화번호란의 절취선이 잔류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2개의 수첩이 합쳐진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과 동인 작성의 감정회보서 기재내용.
- ② 제1심 증인 홍성은의 증언 중 전민련이 김기설의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의 상태와 사용된 필기구가 자신이 본 원래의 김기설의 수첩과 다르다는 취지의 증언 및 검찰에서의 진술.
- ③ 제1심 증인 이보령의 증언 중 자신이 본 원래의 김기설의 수첩과 전민련이 김기설의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은 필기구가 다르다는 취지의 진술 및 참고인 최수미, 동 민수진의 검찰에서의 같은 취지의 자필 진술서 기재내용.
- ④ 김기설의 가족인 부 김정열, 고종사촌 이재구, 자형 장병호 등의 각 유서 글씨는 김기설의 필적이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 및 검찰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여 김기설 명의의 유서는 그의 자필이 아니

라는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김기설의 필적 및 행적이 담긴 그의 수첩이 조작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으므로(1심 논고문 제4-10정) 이들 증거에 관하여는 제1심 논고를 인용하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Q.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위 김형영과 공동으로 이 사건 유서의 필적을 비교 감정한 감정인 양후열의 증언 및 김기설의 친구인 증인 안혜정의 증언으로 김기설 명의의 유서는 그의 자필이 아니고 대필되었다는 사실 및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김기설의 수첩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Q. 즉 위 양후열은 이 사건 유서와 김기설의 필적을 감정한 감정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두가지 필적은 동일인이 가질 수 있는 필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증언하였을 뿐 아니라 김기설의 것이라고 제출된 수첩은 찢어진 채 수첩에 꽂혀 있는 전화번호 기재부분의 절취선이 잔류부분과 일치하지 않고 겹쳐져 두개 이상의 수첩이 합쳐진 것이며 수첩의 글씨 또한 김기설의 필적과 상이하다고 명백히 증언하고 있고, 위 안혜정은 유서의 필적이 평소 자기가 알고 있는 김기설의 필적이 아니며 수첩에 적혀 있는 자신의 전화번호도 다르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특히 김기설의 것이라고 제출된 수첩에 안혜정의 전화번호 등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91. 4에 김기설이 안혜정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였다는 증언에 비추어볼 때 수첩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위 안혜정의 전화번호가 잘못 옮겨 쓰여지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 수첩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Q. 여기에 말씀드릴 것은 항소심에 이르러 증언한 김기설의 친구 한송흠과 권범재의 증언 내용입니다.

-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한송흠은 아무런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서도 군복무 중 김기설로부터 여러 통의 편지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김기설의 글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유서

는 김기설의 글씨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위 안혜정은 김기설로부터 받은 편지를 검찰에 제출한 장본인으로서 그 편지의 필체와 유서의 필체가 다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하면서 자기는 김기설로부터 10여통의 편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유서 필체와 같은 김기설의 필적은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증언, 즉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이 김기설의 글씨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고 증언한 변호인측 증인 한송흠의 증언과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유서의 필적은 김기설의 필적과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한 검찰측 증인 안혜정의 증언 중 어느 증언이 성실하고 진실한 것으로서 믿을만한 것인가는 스스로 자명한 것이라 하겠습니까.

- 또한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권범재는 변호인측이 제출한 전민련 수첩의 전화번호부분 복사본을 김기설이 죽은 5. 8.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보았다며 김기설의 글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전민련에서 제출한 수첩이 조작된 것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위와 같은 증언은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부 복사본의 여러 사람 옆에 쓰여진 "파주친구"는 증인이 썼고 증인의 이름 옆에 쓰여져 있는 "티사랑"이라는 글씨는 이효경이 썼다라고 증언하는데 반하여 제1심 변호인측 증인 이효경은 위 "파주친구"라는 글씨는 한송흠이 썼고 "티사랑"이라는 글씨는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고 증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변호인측 증인 사이에도 서로 모순되는 믿을 수 없는 내용임이 명백합니다.

Q. 이 사건 유서가 대필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유서의 내용에 관해서입니다.

김기설의 유서 2매 중 아버지 어머니에게 쓴 것으로 되어 있는 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날입니다.

오늘 이 행위를 일감겠다고 생각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지껏 한번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라는 것을 해보지 못했지요 하지만 이제 기설이가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조국의 아들이 됨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효도를 하려 합니다.

모든 문제는 대책위 사무실에 위임하세요. 전민련 선택이형 서준식 인권위원장님에게 위임하세요.

제 목숨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선배님들입니다.

-기설-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그 내용이 아버지날에 자살함으로써 마지막 효도를 하겠다는 내용과 사후 문제를 대책위에 일임하라는 두 가지 내용이 유서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통상인의 상식에 비추어볼 때 부모에게 남긴 것으로 되어 있는 김기설 명의의 위 유서는 자살하려는 자식이 죽기 전에 부모에게 자신의 심경을 적은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첫째로 어느 누가 자신을 놓고 길러준 늙은 부모를 남겨 놓고 부모에 앞서서 자살을 하는 마당에 먼저 죽는 자식의 불효를 용서해달라는 사죄 한마디 없이 그것도 아버지날에 자살을 하면서 자신은 부모의 아들이 아닌 조국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또 죽는 것이 '마지막 효도'라고 자신의 부모님께 말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제1심 공판과정과 항소심에서의 증인 안혜정의 증언에서 나타났듯이 김기설은 마음이 여린 성격의 소유자이며 김기설의 아버지는 농사를 짓다가 현재는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순박한 보통의 한국사람일뿐 재야 운동권과 같은 이념과 주장을 갖고 있는 소위 의식화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김기설이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조국의 아들이 됨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효도를 하려 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인지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것만으로도 이 유서가 죽은 김기설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위 유서에는 "기설이가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조국의 아들이 됨을 선포하면서"라고 쓰여 있고 유서 끝에는 "-기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대체 죽는 자식이 부모에게 유서를 쓰면서 불효자식, 소자 등의 표현을 쓰지는 못할 망정 부모가 아닌 제3자에게 자신을 호칭하듯 "기설이"라고 표현하고 끝에도 아무개 올림 등으로 자신을 지칭하지 않고 "-기설-"이라고 기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기설이가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조국의 아들됨을 "선포"한다는 것은 또 무슨 표현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위 유서의 뒷 부분은 모든 문제를 대책위 사무실의 전민련 선택이형과 서준식 인권위원장에게 위임하라는 내용인 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먼저 자살을 하려는 자식이 부모에게 용서를 비는 내용이나 부모에 대한 사랑, 감사 등에 대하여는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전민련 선택이형 서준식 인권위원장님만을 "제 목숨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선배님들"이라고 부모에게 보내는 유서에 써넣을 수 있겠는지 심히 의심스럽기 짝이 없는 표현입니다.

한 가지 첨언할 것은 유서에 "제 목숨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선배님들"이라고 표현된 서준식 등이 김기설과 서로 만나 함께 일을 한 것은 1991. 3 이후의 일로서 김기설이 죽기까지 불과 한달 남짓 동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견 유서는 김기설 명의로 쓰여져 있을 뿐 결단코 부모를 앞서 목숨을 끊는 자식 스스로가 쓴 글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 被告人 姜基勳이 遺書를 代筆하였다는 事實에 관하여

Q. 1심 공판 과정에 나타난 증거인

①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의 유서의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증언과 감정회보서 기재내용.

②증인 홍성은의 증언 중 5. 7. 밤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김기설의 부 김정렬의 전화번호를 불러주며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말만 3회 되풀이하였고 5

10.에 2회, 5. 12.에 1회 등 3회에 걸쳐 피고인과 만나 검찰 수사에 대비하던 중 특히 5. 10. 봉쥬르카페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만났을 때에는 피고인이 증인의 수첩에 김기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적어 넣어 불쾌하게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증언 및 검찰 진술내용.

③피고인의 모순되고 불합리한 거짓 진술 등에 의하여 김기설 명의의 유서는 강기훈이 작성한 것이 분명해졌으므로(1심 논고문 제13-18정) 이들 증거에 관하여는 1심 검사의 논고를 원용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이 감정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부도덕한 사람이나 그의 감정은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어느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 하여 그가 처리한 모든 업무가 부당하다는 논리와 같은 것으로 불합리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입니다.

김형영은 비록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기소되어 있는 상태지만 항소심 법정증인으로 나와서 당당하게 자기의 감정이 소신에 입각한 정확한 감정이라고 거듭 증언하였습니다. 제1심 공판과정에서 변호인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김형영이 검찰의 압력 내지 유도에 의하여 소신과 다른 감정을 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심지어 검찰이 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김형영이 검찰에 의하여 구속된 사실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형영이 항소심 법정에서 자신의 감정이 소신에 입각한 정확한 감정이라고 거듭 증언한 사실 등은 검찰의 압력 내지 유도 운운하는 변호인들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주장인가를 웅변으로 증명한다 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비록 김형영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나 그동안 한건의 허위 감정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Q.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관련 문서수발부의 일부 기재 누락과 착

오 등이 무슨 큰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들은 이 사건 감정의 실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소한 문제들로서 감정의 공정성과 정확성 여부에는 하등 소장이 없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Q. 이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의 감정 결과에 의하여 피고인 강기훈이 김기설 명의의 유서를 대필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러한 사실은 증인 홍성은의 제1심 및 1회 공판기일전 증언과 검찰 진술내용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피고인이 김기설의 명의의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의 진술은 검찰 이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허위진술이 없어야 함은 물론 시종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적과 태도는 의심스러운 점이 없고 떳떳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묵비하거나 거짓 진술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제1심과 항소심을 거치는 동안 필요할 경우에는 서슴없이 진술을 바꾸고 있습니다.

나아가 검찰이 김기설의 유서가 대필되었다는 의혹을 갖고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것이 91. 5. 9.자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문제화 되었는데 그후 피고인의 행적은 누가 보아도 의심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Q. 먼저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며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우선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업무일지는 본 일도 없다고 강변하다가 참고인 김형민, 동 정윤서 등의 진술로 그것이 의도적인 거짓임이 들롱났을 뿐만 아니라,

- 또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추궁으로 궁지에 몰리자 수첩이 조작된 사실 및 유서가 대필된 사実は 부인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전민련 동료인 임무영이 의심스럽다니 횡설수설하다가 결국

변호인들과 당시 전민련 인권위원장인 서준식의 면담을 요청, 그들과 면담을 한 후 태도를 돌변 또다시 묵비 내지는 수첩이 조작된 사실과 유서가 대필된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피고인이 태도를 돌변한 것은 피고인이 서준식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수첩이 조작된 사실과 유서가 대필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자 이에 대하여 서준식이 왜 묵비권을 포기했느냐? 네가 나를 부른 이유가 뭐냐? 그렇다면 전민련은 해체해야 한다고 은근히 몰아붙이는데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 그리고 김기설이 죽기 전날 홍성은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김기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의 아버지에게 연락해 주라고 하면서 김기설의 아버지 전화번호를 불러주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성은아 성은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말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과 1심 공판과정에서는 홍성은이 전화번호를 불러준 것은 기억하나 불러준 것이 누구의 전화번호인지 또 왜 홍성은이 그 전화번호를 불러주었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어불성설의 진술을 해놓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그때 홍성은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불러주는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가 하면 성은아 미안하다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도 검찰 이래 1심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미안하다는 소리를 3번 한 사실을 인정했다가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듯하자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미안하다는 말을 1번 밖에 하지 않는 것처럼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과 제1심 재판과정에서는 홍성은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91. 5. 17. 피고인의 어머니를 홍성은의 집에 보내어 홍성은의 어머니에게 "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느냐 홍양이 잘못 진술하면 피고인이 곤란해진다"고 말하게 한 사실을 진술해 놓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홍양이 잘못 진술하면 피고인이 곤란해진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것처럼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이 그의 어머니를 홍성은의 집에 보낸 것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홍성은의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다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홍성은의 어

머니는 잘 모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가까운 사이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가까운 사이의 의미에 관하여 피고인 집과 홍성은의 집이 가깝다는 뜻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결국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을 통하여 불리하면 묵비하고, 궁지에 몰리면 거짓말하거나 그전에 한 진술도 번복하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그의 진술은 일고의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유서대필 범행을 어떻게든 은폐해 보려는 수작에 불과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Q. 다음 검찰이 유서대필사건의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91. 5. 9. 언론에 보도된 후 피고인의 의심스러운 행적과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91. 5. 9. 언론에 김기설의 유서가 대필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갖고 김기설의 필적을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자 피고인은 다음날(5. 10.) 홍성은을 만나 그의 수첩에 김기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적어주면서 검찰 수사에 대비, 김기설의 필적 조작을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3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에 대비한 대책을 숙의하였던 점, 홍성은이 검찰에 소환되기 전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전민련 사무실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점(검찰 수사관이 홍성은을 임의동행하러 갔을 때 홍성은이 임의동행에 응하기 직전 강기훈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음), 홍성은이 검찰의 조사를 받기 시작하자 그날부터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강경대군 장례식이 치루어진 5. 18.까지 전민련 사무실과 연세대에 있는 강경대군 대책위 사무실 등지에서 숙식하며 은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홍성은의 집에 보내 홍성은의 진술 여하에 따라 피고인의 입장이 곤란해진다고 언동한 점 등은 피고인이 김기설 명의의 유서를 대필하지 않고는 있기 어려운 행적이며,

- 또한 강경대군 장례일인 5. 18.부터 검찰에 연행된 6. 24.까지 한달여 동안 명동성당에 은신하면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법관의 사전영장집행에 불응한 것도 피고인이 과연

김기철 명의의 유서를 대필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의심스러운 행적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 검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으면서도 과연 피고인이 무고하다면 무엇이 두려워 초기에 묵비권을 행사하였는지? 또한 그후 묵비권을 포기하고 임의로 진술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허위진술을 하였는지? 의심스럽기 그지없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적과 태도는 홍성은의 증언과 함께 피고인이 김기철 명의의 유서를 대필하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정황증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3. 犯行의日時, 場所, 動機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는 1심 검사 논고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겠습니다.(1심 논고문 제18-21정).391)

4. 辯護인들이 提出한 書證에 관하여

0.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1심에서 10여 가지의 필적을 제출하면서 몇 사람의 증인을 내세워 그것들이 모두 분신자살한 김기철의 필적인 것처럼 주장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위 필적들이 유서 필적과 동일한 필적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0. 그러나 1심 검사의 논고와 제1심 판결에 잘 나타나 있듯이 변호인들이 김기철의 필적이라 제출한 위 10여 가지 필적은 그 성상과 보관 제출 경위 등에 문제가 많아 과연 그것이 김기철의 필적인지 강한 의심이 들기 때문에(1심 논고문 제22-35정) 이에 대하여는 당연히 객관적으로 김기철의 필적임에 다툼이 없는 안해정 제출의 편지 등과 비교감정하여 김기철의 필적인지 여부를 가리고 김기철의 필적이라고 인정되는 필적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서와 동일필적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391) 자료집 II책 301쪽 참조.

변호인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믿기 어려운 한두 사람의 증언으로 위 필적들이 모두 김기철의 필적이라고 강변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 필적들이 유서와 동일필적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심지어 육안으로 관찰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을 무엇때문에 감정하려 하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0. 필적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정확하게 이동을 가려낼 수 있다면 또한 의문투성이인 한두 사람의 증언으로 누구의 필적인지 확정할 수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필적감정제도가 무슨 의의를 갖고 있는지 변호인의 주장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변호인들은 육안관찰 육안관찰하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인정하고 있는 김기철의 필적인 안해정 제출의 편지와 유서가 육안으로 관찰할 때 과연 동일한 필적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변호인들이 김기철의 필적인 것처럼 제출한 10여종의 필적이 육안으로 관찰할 때 과연 한 사람의 필적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0. 변호인들은 그들이 김기철의 필적이라 제출한 10여종의 필적에 대하여 감정을 반대하는 형식상의 이유로 국과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 합니다만 그 실질적 이유는 위 필적들이 육안으로 관찰할 때에도 한 사람의 글씨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김기철의 글씨임에 다툼이 없는 안해정 제출의 편지와 너무도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의 변론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0. 따라서 변호인들이 김기철의 필적이라고 제출한 10여종의 필적은 그것이 모두 과연 김기철의 필적인지, 또 유서와 동일한 필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이고 오히려 위 필적들 중 일부는 그 성상이나 보관 제출된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김기철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으므로 이들 필적은 이 사건 공소유지에

하등 장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원석의 증언과 각서에 대하여(추가 의견서 제출).392)

三 量刑不當에 관하여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 판결은 그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이 사건의 정상관계를 논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피고인의 반국가적, 반체제적 성향입니다. 피고인은 1982. 3. 단국대학교에 입학하여 1985. 8. 31. 학사경고 제적을 당한 자로서 단국대학교 재학시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민주정부수립 및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위원회"(약칭:삼민주위)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1984. 11. 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류 10일, 1985.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구류 10일을 각 선고받았으며 1985. 11. 18.에는 서울 강동구 가락동 소재 민정당 중앙정치연구원에 침입, 농성, 방화한 소위 "가락동 민정당 연수원 점거농성사건"을 주도하여 1986. 3. 28. 서울형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7. 7. 8.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등 반체제 학생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후 "이현우"라는 가명으로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약칭:전노운협),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약칭:전민련) 등에 소속되어 재야운동권으로 활동해 오던 중, 1988. 11.에 이르러 "상우"라는 가명으로 이적단체인 "혁명의 불꽃" 그룹에 가입하여 1989. 8. 동 이적단체가 "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약칭:혁노맹)으로 확대 개편된 후까지 "김정훈"이라는 가명으로 그 핵심멤버인

392) 총자료집 II책 687쪽 참조.

노성철 등과 접촉하면서 급진적 과격 변혁노선인 소위 민족민주혁명이론(NDR)에 심취된 좌경혁명분자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활동노선의 골자는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되어 기층 민중이 단결, 무장봉기하여 현 정부를 타도한 후 임시혁명정부를 수립,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0. 피고인이 가입활동해온 "혁명의 불꽃"그룹은 그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그 성격이 적나라하게 나타났듯이 우리나라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하고 노동자 중심의 기층 민중이 무장봉기하여 미제국주의와 파쇼독재권력인 현 정권 및 독점자본을 타도하고 임시혁명정부를 구성, 혁명적 사회변혁을 수행함으로써 소위 민중 주체의 민주공화국을 구성한 다음 북한과 연방제로 통일하여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을 기본강령으로 하고 있으며 혁노맹은 그 목표 실현을 위하여 지하 노동당 건설, 혁명군대 창설, 요인암살 등 테러, 무장수단 비축 등 구체적 전술계획까지 수립한 불법지하이적단체인 것이고, 피고인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도 진술했듯이 그의 낡은 혁명이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제1심과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 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고 전혀 다투지 아니하고 있어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다 하겠습니까.

0. 피고인이 김기철의 유서를 대필해 주어 그의 자살을 방조한 것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과 성향에 비추어볼 때에는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자의 10대 신조를 맹신하고 불법지하이적단체인 "혁명의 불꽃"그룹에 가입하여 민족민주혁명이론(NDR)으로 무장, 그 실천의 장을 엮었던 중 1991. 봄 소위 "강경대군 치사 사건"으로 고조된 재야운동권의 반정부투쟁 분위기와 잇단 분신자살로 야기된 극도의 사회 혼란을 이

용하여 현 정부를 타도한 후 민중 주체의 민중민주 정부의 수립을 획책하면서 민중봉기를 유도, 그 기폭제로 삼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이자 이념적 동지인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해 주어 그의 자살을 부추긴 것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살방조 부분은 목적을 위하여는 동료의 생명까지도 혁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좌경혁명분자로서의 피고인의 비인간적, 반인륜적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상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범죄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그에 대한 양형을 논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0. 피고인은 적법절차에 따라 발부된 법관의 영장집행에 이유 없이 불응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국판 드레퓀스 사건 운운하면서 수사와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사실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동정심을 유발, 자신의 범행을 호도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양형에 참작되어 마땅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피고인은 검찰이 이 사건을 조작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검찰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어떻게 조작하였던 말입니까. 사실을 왜곡하려 하고 증거를 조작한 것은 바로 피고인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입니다.

수첩 절취선의 불일치라는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 증거에 의하여 수첩이 조작된 사실이 밝혀졌고,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참고인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한글도 모르는 일본인에게 한글을 감정시키면서 자모의 숫자와 모양을 오도한 것이 바로 피고인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이 김기설의 필적을 찾기 위하여 전민련측에 김기설의 필적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바로 김기설의 수첩을 제출하지 않고 10여일간 은폐하고 있다가 검찰이 김기설의 유품 중 수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출을 요구하자 김기설의 것이 아닌 수첩을 김기설의 수첩인 것처럼 내놓은 것도 바로 피고인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검찰이 이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강변하면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을 오도하여 자신이 억울한 것처럼 동정을 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0.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을 한국판 드레퓀스 사건 운운합니다. 이 사건이 한국판 드레퓀스 사건이라면 유서대필의 진범이 따로 있고 피고인은 그 진범을 알고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검찰이 진범을 숨기고 있다는 말인지? 도무도 근거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이 피고인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라고 사료됩니다.

0. 덧붙여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이 무고하다는 주장을 편지로 써서 추기경께 전달하고 도움을 청하였는바 지금까지 공판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피고인은 철저한 공산주의의 신봉자인데 그러한 피고인이 언제부터 종교적 신앙을 갖고 종교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분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게 되었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는 점입니다.

4. 끝으로 피고인의 부인과 목비 그리고 참고인들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때문에 국민적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소위 『분신의 배후세력』에 대하여 더 이상 소상히 밝힐 수 없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바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김기설 분신사건의 배후관계 수사에 착수하여 김기설의 유서가 대필되었다는 수사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1991년 봄 2-3일 간

격으로 10여건이나 발생하여 사회를 극도로 혼란시켰던 분신·투신자살 사건이 김귀정양 사건, 한권원 씨 사건 등의 사회불안요소들이 계속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점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발행한 일련의 분신자살 사건에 배후가 있지 않나 하는 국민적 의혹이 단순한 의혹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사회에 다시는 소위 『죽음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에 의하여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피고인을 논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四. 求 刑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는 그 증거가 충분하여 이와 상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항소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시고, 피고인의 정상에 비추어 원심 검사의 구형대로 피고인을 징역 7년 자격정지 3년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5-7 (공판기록 3743~3822)

변론요지서

사 건 92노 401호 자살방조 등
피고인 강 기 훈(姜 基 勳)

1992. 4. 9.

- 목 차 -

- 제1. 이 사건의 시대적 배경 4
- 제2. 김기철군의 분신자살 7
 - 1. 김기철군의 성장배경 7
 - 2. 김기철군의 분신결의-그 최초의 발설 7
 - 3. 분신결의 발설 후 김군의 행적 9
 - 4. 유서가 작성된 시간 9
 - 5. 피고인은 김군의 분신결의를 알았는가 11
- 제3. 김군의 여자친구 홍성은의 진술 12
 - 1. 압수물 7-2 '메모' 12
 - 2. 홍성은의 수첩에 적힌 김군의 전화번호 16
 - 3. 5. 7. 밤의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22
 - 4. 압수물 11-1 '전민련수첩' 24
 - 5. 1991. 4. 27.- 5. 8 08:00 사이 김군과의 만남, 전화통화 26
 - 6. 홍성은의 착각의 원인 28
- 제4. 김형영의 감정서 32
 - 1. 필적감정의 비과학성 32
 - 2. 필적감정의 일반원리 33
 - 3. 줄속감정, 심층감정 35

- 4. 감정과정의 불공정성-의뢰인과의 유착 38
- 5. 감정내용의 모순점 41
 - 가. 감정결론의 변경 41
 - 나. 업무일지에 대한 감정 42
 - 다. 김기철군의 수첩에 대한 감정 43
 - 라. 미성년시절 필적의 비교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정 44
 - 마. 소위 '회소성'을 의면한 감정 46
- 6. 이름뿐인 공동심의 49
- 7. 인간 김형영, 감정인 김형영 51
- 제5. 압수물 11-1 전민련 수첩은 과연 조작되었는가 59
 - 1. 위 수첩이 검찰에 제출되기까지 59
 - 2. 변호인 제출 증제20의 1, 2 수첩사본 61
 - 3. 이지혜의 증언 62
 - 4. 위 수첩에 대한 감정과정의 의혹 64
- 제6. 무죄의 증거들 65
 - 1. 머릿말 65
 - 2. 일본인 '오오니시'의 감정서 65
 - 3. 유서와 필적과 너무나 흡사한 김기철군의 필적들 66
 - 가. 증제 1호 방명록(성남 터사랑청년학우회) 66
 - 나. 증제 3호 방명록(전교조 원주지회) 67
 - 다. 증제 5호 메모(승의여전학생회 간부 제출) 67
 - 라. 증제 6호 출장비 청구서 68
 - 마. 증제 8호 노트(동우전문대 관련 녹취물) 69
 - 바. 증제 9호 대봉투(표지의 글씨) 69
 - 사. 증제10호 방명록(수원 민청련) 69
 - 아. 증제11호 책표지(김군의 낙서) 70
 - 자. 증제13-1, 14-1 각 명함(김군의 서명) 70
 - 차. 증제23-1 각서(한원석 제출) 70
 - 카. 정자체로 쓴 필적:증제2호, 7호, 12호 70
- 4. 유서의 필적과는 확실히 다른 피고인의 필적 71
 - 가. 증제15호의 1-10 각 우편봉합엽서 71

- 나. 증제16호의 1, 2 각 카드 71
- 다. 증제17호 보고서 72
- 라. 증제18호 책(이영미에게 선물한 '장미의 이름') 72
- 마. 증제25호 편지(추기경에게 보낸 편지) 72
- 5. 한송흙의 증언 73
- 6. 기타 정황증거 73
- 제7. 변호인이 검찰의 필적감정신청에 반대한 이유 76
- 제8. 맺음말 78

제1. 이 사건의 시대적 배경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래서 기네스북에나 올라야 할 이 「유서대필재판」도 이제 사실심의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에, 우리가 김기철군의 당시 심경을 정확하게 헤아릴 길은 없지만, 나름대로 이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한 그에게, 피고인은 다른 친지 동료들과는 달리 만류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응, 너 생각 잘했다, 장례식 같은 것은 걱정 말어, 유서도 내가 멋지게 한 통 써 줄게' 라고 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줄거리입니다.

극히 비합리적인 이와같은 시나리오가 어떻게 사법부의 심판대에까지 오르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 이 사건의 실제적인 진실발견을 위해서도 우리는 약 1년전 당시의 주변상황을 더듬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1년 4월 26일에 터진 명지대생 강경대군 치사사건이 기록체가 되어 백골단 해체 등을 요구하는 데모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대학교수들의 잇단 시국선언과 시민들의 동조 움직임 속에 4월 29일 전남대생 박승희양, 5월 1일 대구 안동대생 김영준군, 5월 3일 경원

대생 천세용군으로 이어진 분신은 6공 최대의 위기사건에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5공 말기 박종철군 사건의 악몽을 떠올리며 시국안정을 위해 전전공공하던 정부는 5월 9일로 예정된 대학생.재야의 '민자당 해체와 공안통치종식을 위한 범국민결의대회'의 추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때 그 하루전인 5월 8일 김기철군의 분신자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기철군의 분신은 위기사건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분신에 배후가 있다'는 모 대학총장의 발언이 그 실마리를 제공하였고 이에 힘입은 당국은 재빨리 '분신배후 수사'를 들고 나왔으며 그 악역을 검찰이 떠맡았습니다.

'분신의 배후'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검찰이 그 배후수사에 착수하였다는 언론보도에 접한 많은 국민들은 마치 어떤 강력한 조직이 있어서 분신 대상자를 선정하고 분신 일자까지 지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격으로, 전민련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를 두드리며 자료를 입력하고 문서수발 등을 하여온 평범한 한 청년을 '유서대필'이라는 누명을 씌워 이 범정을 세웠을 뿐입니다. 김기철과 강기훈, 이들은 4개월 남짓 같은 전민련에 근무한 동료이면서도 경력, 출신이 판이한 데다가 업무도 외근·내근으로 서로 달라 자주 접촉할 기회도 없었으며, 두 사람이 '인간적인 관계'를 가졌다면 오직 강기훈이 대학후배 홍성은양을 김기철에게 소개시켜준 사실뿐입니다.(참고자료 중 1991년 5월 22일자 중앙일보 참조).³⁹³⁾

김기철군 분신 직후의 연대에 있던 대책회의의 분위기를 언론보도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중 1991년 5월 9일자 한국일보 참조).³⁹⁴⁾

「그렇게 호소했는데...」 대책회의 침묵, 「영안실 학생들도 허탈... 구호 노래없어」라는 제목으로 김군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허탈에 빠진 동료·친지들의

393) 총자료집 III책 599쪽 참조.
394) 총자료집 III책 541쪽 참조.

침통한 분위기를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비상한 추리력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유서대필'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 용의자로 강기훈을 지목하였습니다. 우리는 검찰의 참뜻이 어디에 있었고, 강기훈을 희생양으로 삼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김기설군 이후에도 5월 10일 광주 윤용하씨, 5월 18일 광주 보성고 3년생 김철수군, 5월 22일 광주 정상순씨 등의 분신이 있었지만, 검찰의 작품이 온 나라의 관심을 '유서대필' 사건에 쏠리게 함으로써 당시 긴장이 고조되던 불안시국을 진정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 사실만은 알고 있습니다.

또 상당기간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작품에 동조 내지는 반신반의 하였던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상식을 초월한 검찰의 작품이 한 때나마 적지 않은 사람들의 동조를 얻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검찰의 시나리오가 완벽했기 때문일까요. 검찰이 흘리는 정보를 여과없이 보도한 언론의 힘일까요. 아니면 국과수의 공신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소위 '재야운동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편향된 시각과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드레퓔스(Dreyfus)가 유대인이라는 사실때문에 대부분의 프랑스 국민들이 오랫동안 그의 유죄를 믿고 있었듯이, 김기설과 강기훈이 '재야운동권'에 몸담고 있었고, '재야운동권' 인사들은 비상식적인 일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편견이 우리의 진실을 보는 눈을 흐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보다 크게 뜨고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사건의 전말을 '건전한 상식의 눈'으로 하나 하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제2. 김기설군의 본신사실

1. 김기설군의 성장배경

김기설군은 1965년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에서 태어나 그곳에 있는 광탄중학교를 1981년 2월에 졸업하고, 광탄상업고등학교(현 광탄종합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가 1학년 1학기 때 증퇴한 후 서울에 올라와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를 다녔는데 1983년 4월에 수도공고마저 자퇴하고 그해 8월 15일 대학입학검정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은 하지 못하고 1985년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88년 6월에 제대한 후 1988년 10월경부터 1990년 11월까지 사이에 선용섬유회사와 (주)다인터네셔널에 다닌 듯하며(중계2호 이력서 참조),³⁹⁶ 1988년 5월부터 1990년 11월까지 성남 민청련의 회원으로서 노동운동 등에 관여하다가 1990년 12월말경 전민련으로 옮겨 사회부장직을 맡아 보았습니다(전민련에서는 간부를 제외한 실무자를 모두 부장이라 불렀음).

김기설군의 집안은 원래 가난한 시골 농가였던 것으로 보이고 아버지 김경열(56세)은 현재는 성수동에 거주하면서 면목동에 있는 봉제공장의 공원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김군의 생모는 김군이 5-6세 때 사망하여 계모 밑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김기설군은 자신의 학력을 한양대 철학과 3년 증퇴하고 하여 전민련의 동료들을 물론 여자친구 홍성은도 그를 대학증퇴자로 알고 있었으며, 고향친구 한송흙의 진술에 따르면 김군은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 하였다 합니다.

2. 김기설군의 분신결의--그 최초의 발설

김기설군은 전민련에 들어간 후 약 1개월간은 총무부에서 문서수발 등을 하며 업무를 익히다가 사회부로 옮겨 원진레이온 사건 조사와 뒤이어 발생한 속초 동우전문대 사태에 대한 조사때문에 전민련 사무실에는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고, 강경대군 사건이 터져

395) 총자료집 II책 792쪽 참조.

전민련이 범국민대책위에 가입함에 따라 김군도 4월 27일경부터 범대위가 있던 연세대에 파견되었습니다.

당시 전민련의 실무자 10명 가운데 피고인과 김형민·박선욱 등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범대위에 파견되었고, 파견 근무자들은 그곳에서 밤을 새우거나 출퇴근을 하였기 때문에 전민련 사무실에 들리는 일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은 1991년 4월 27일 이후 기설군 분신때까지 연세대 범대위에 가본 적이 없고, 5월 4일 22:00경 전민련 사무실에 잠시 들렀던 기설군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기설군이 언제 어떤 계기로 분신할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신결의의 뜻을 처음으로 털어놓은 것은 1991년 5월 5일 23:00경 종로5가에 있는 '백제장여관'에서 이지혜·송국영과 술 마시던 때임은 명백합니다. 김기설이 이지혜·송국영에게 "여러분한테 처음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분신결의를 발설하였던 것입니다.

5월 4일 22:00경 전민련 사무실에 들린 김기설이 "서울역앞 테모대에 전민련 깃발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전민련기를 들고 뛰쳐나갈 때나, 5월 5일 10:00경 방송통신대 '소리새벽' 회원들을 만나 각자 자기소개를 하고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매일(5월 8일 제외) 한 사람씩 개별면담을 하기로 그 일시·장소를 약속할 때에도 분신의 기미가 전혀 없던 기설군이 위 개별면담을 약속한 바로 그날 밤에 갑자기 분신을 생각해 낸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막연하게 그려오던 분신결의를 그날 밤 비로소 확고하게 굳히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5월 5일밤 이지혜·송국영에게 처음으로 분신하겠다는 얘기를 발설하고 그 다음날 오전 이지혜로부터 어제밤 얘기가 정말이나라는 질문을 받고 정말이라고 답변한 점과 그 전후사정으로 미루어 기설군이 분신결의를 확고하게 가지게 된 것은 5월 5일밤 이후라는 사실입니다.

3. 분신결의 발설 후 김군의 행적

1991년 5월 6일 12:00경 이지혜와 함께 백제장여관을 나온 김기설은 버스로 광화문에서 내려 식사를 하고 가든호텔 부근 카페에 들렀다가 15:00경 이지혜와

헤어져 연세대 범대위 사무실로 갔으며, 16:00경 분신자살한 천세용군 관련자료를 가지고 범대위를 나와 천군의 주검이 안치된 경원대 영안실을 거쳐 18:00경 성남 '황토현' 서점에서 성남 민청련 회원 이효경을 만났으며 다시 '까프앙'에서 이효경·김병희·연희 등을 만나 '도이취호프'에서 밤 12시경까지 술을 마신 다음 김병희의 집에 가 잤습니다.

다음날 즉, 5월 7일 08:30경 증대생인 위 김병희와 함께 집을 나와 10:00경 흑석동에서 김병희와 헤어져 89번 버스를 타고 신촌으로 갔으며, 14:30경 신촌 민직청 사무실에서 홍만희 등을 만났고, 19:30경부터 22:30경까지 신촌에 복지다방·카페 등에서 홍성은과 함께 있었으며, 23:00경부터 다음날(5월 8일) 05:30경까지는 기설군의 자취방으로 찾아온 임근제·이보은과 함께 동네 포장마차집→명륜동→대학로에 함께 다녔고, 06:30경 홍성은에게 전화를 걸어 '이대 쪽에 있다. 열심히 살아라'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이 마지막 확인된 사실입니다.

4. 유서가 작성된 시간

김기설이 1991년 5월 6일 15:00경 이지혜와 함께 가든호텔 뒤 '장미빛인생'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 전민련 봉투속에서 노트를 꺼내어 끄적끄적하면서 "유서에 무어라 쓰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다는 사실(중인 이지혜의 진술)³⁹⁶과 5월 7일 22:30경 홍성은과 헤어지면서 "유서를 써야 하는 등 신변정리를 위해 집에 가 봐야 한다고 말하며 나의 손길을 뿌리치고 집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라는 위 홍성은의 진술(제1심 공판기록 제485쪽 상단)³⁹⁷ 및 5월 7일 23:00경 기설군의 자취방에 갔을 때 "편지지같은 종이 뒷면에 약 3줄 정도로 '역사의 이정표가 되고자 함은 아니고'라는 등의 말이 씌어져 있었는데 명륜동에서 기설에게 주어 찢도록 하여 기설이가 찢어버렸다"는 취지의 임근제의 진술(수사기록 제81쪽)³⁹⁸과 같은 취지의 당시 증인 이보은의 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396) 총자료집 II책 401쪽 참조.

397) 총자료집 II책 176쪽 참조.

398) 총자료집 I책 183쪽 참조.

유서가 작성된 시간은 5월 8일 05:30 이후라고 보아야 하고, 좀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대학로에서 임근재 등을 따돌리고 신촌으로 가 홍성은에게 마지막 전화를 한 06:30 이후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서를 대신 써준다는 하더라도 5월 8일 새벽 6시반경부터 약 1시간 30분 내에 기철군이 신촌에서 성동구 자양동에 있는 피고인 집까지 다녀오거나 피고인이 그 새벽 시간에 유서를 가지고 신촌까지 뛰어가거나 하였어야 하고, 아니면 새벽 5시반 이후 기철군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신촌으로 빨리 와달라고 부탁하여 신촌 어디에선가 두 사람이 만났어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피고인은 기철군의 유서를 대신 쓰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럴만한 시간적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5월 7일 23:00경 피고인이 집에 있었다는 사실은 홍성은의 전화로 확인되었고, 그 시간 이후 다음날 05:30경까지의 기철군의 행방도 임근재·이보은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은 5월 7일 22:30경 귀가하여 5월 8일 09:30경 출근시까지 집을 나간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5. 피고인은 김기철군의 분신결의를 알고 있었는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철군이 분신결의를 처음으로 발설할 것은 5월 5일밤 11시 무렵 백제장여관이고, 피고인이 4월 27일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철군을 본 것은 그 전날 밤이며 그후 분신때까지 서로 만난 일도 전화통화조차 한 사실도 없어서 피고인으로서 기철군의 분신결의를 사전에 알지도 또 알 수도 없었습니다. 5월 5일밤 '반달집'에서 막걸리마실 때 피고인이 홍성은에게 '기철이 잘 있느냐'라고 기철군의 안부를 물었고, 같은 날 백제예식장 근처 술집에서는 '기철이 좋은 사람이니 잘 사귀어보라'고 하였다는 홍양의 진술(수사기록 제439쪽)³⁹⁹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검찰은, 5월 7일밤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말을 연발하였다는 홍성은의 진술을 '자살결

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우길런지 모르나, '미안하다'는 얘기는 5월 5일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귀가하려는 홍성은을 붙들고 땅바닥에 주저앉는 등 주정을 부린 데 대한 사과의 말이었습니다(변호인이 지난 3월 하순경 어렵사리 만난 홍성은양은 통화내용에 관하여 '첫 얘기가 5월 6일에 왜 출근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이었는데 피고인은 전날 술에 너무 취한 때문이라면서 5월 5일밤의 여러가지 얘기 끝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다고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철군의 자살결의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 자살방조의 점은 나머지 사실을 살필 필요없이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제3. 김군의 여자친구 홍성은의 진술

1. 압수물 7-2, '메모'

가. "그때 나의 마음은 폐배와 좌절로 어둠과 연기로 자욱하여 그녀의 사려 깊은 마음이 나에게 초 두 봉지를 선물하였다..."로 시작되는 압수물 7-2, '메모'⁴⁰⁰는 홍성은이 1991년 2월 18일 10:00경 슈베르트 카페에서 김군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다가 1991년 5월 13일 검찰에 제출한 것입니다.

김형영은 위 메모와 김군의 유서는 동일인의 필적이라고 감정하였으며, 검찰은 피고인이 위 메모를 썼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기록 어디에도 위 메모를 피고인이 썼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김군이 홍성은에게 메모를 준 경위, 홍성은이 이를 가지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한 경위, 메모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메모는 김군 자신이 쓴 것이 입증될 뿐입니다.

나. 먼저 홍성은이 위 메모를 검찰에 제출한 경위를 보면, 동인은 1991년 5월 13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특별한 생각없이 동인이 김

400) 총자료집 I 책 105쪽 참조.

군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메모 등 김군의 유품을 가지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인이 두번째로 소환되어 검찰에서 쓴 1991년 5월 15일자 자술서(수사기록 392면 내지 400면)에 의하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자술서 399면 아래에서부터 자술서 끝 부분까지).⁴⁰¹

"5월 13일 집으로 형사가 찾아왔다. ... 전민련 사무실로 전화를 했다. ... 딸투로 보아 박선옥씨 같았다.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같이 가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물으니 그러지 말고 누군가 같이 가야 한다, 사람들이 없으니 연대로 전화해 보고 연락해 주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연대로 전화하여 전민련 관계자를 찾으니 없다고 하며 모두 명지대로 갔다고 해 일단 전화를 끊고 다시 전민련 사무실로 전화를 했다. 박선옥씨를 찾으니 참고인 진술이니 가도 괜찮다, 48시간 이내에 끝날 것이다. 김기철씨 편지를 찾고 있는데 쥐도 되느냐? 주어도 괜찮다 하고 전화를 끊고 형사와 같이 검찰로 왔다."

위 진술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홍성은이 위 메모와 김군의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전민련 수첩을 검찰에 제출하게 된 경위는, 1차적으로 검찰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전민련 실무자인 박선옥의 자문을 받아 제출한 것입니다.

위 메모 등을 검찰에 제출할 당시 홍성은은 막연히 김군의 분신 직후 일부 언론에 보도 되었던 배후 의혹에 관하여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로만 짐작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뒤에 유서대필혐의의 명예를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동인에 대한 검찰의 1991년 5월 14일자 진술조서에 피고인과 관련된 질문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 피고인 집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그 이틀뒤인 1991년 5월 16일 이루어졌다는 점 및 피고인의 필적과 유서필적이 동일하다고 감정함으로써 검찰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감정회보서가 검찰에 도달된 때는 적어도 1991년 5월 17일 22:00 이후인 점

401) 총자료집 I 책 161쪽 참조.

(수사기록 409면)⁴⁰² 등을 고려할 때 분명한 것입니다.

요컨대 홍성은이 위 메모를 검찰에 제출할 때는 그것이 바로 김기철이 쓴 것이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간 것 뿐입니다. 동인은 위 메모에 대하여 검사가 "(김기철군이) 무엇이라고 하면서 주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자기가 낙서한 것인데 잘 된 것 같다, 읽어보라면서 주어 받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 바(수사기록 256면),⁴⁰³ 당시 상황에 비추어 위 답변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짐짓 꾸민 것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 다음 위 메모의 내용을 보면, "새해 이제 27"이라는 부분을 비롯하여 내용전체가 피고인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김기철군의 신상에 부합한다는 점은 이미 1심 변론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위 메모는 한낱에 쓰여진 것이 아니며, 그 대상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메모 앞 부분에 쓰인 "그녀의 사려 깊은 내용"에서의 '그녀'와, 뒷면 "엇저녁 소주 2잔에 나도 너도 없는 상태로 자네는 이러한 얘기를 했네"의 '자네'는 그 문맥이나 상대에 대한 호칭에 비추어 동일인이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또 앞부분의 "차가운 거리 ... 거리를 바빠 움직이는 저들을 본다. ... 이 시간 당신은 자고 있으리라"에서 연상되는 때는 자정이 넘지 않은 상태의 늦은 밤인데, 뒷면의 "깨어난 아침 이토록 떨치고 일어나기가 어려움"에서는 새벽에 쓴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합니다. 한편 "새해 이제 27"이라는 부분의 표현은 위 메모의 일부가 1990년 연말 무렵에 쓰여진 것을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군이 홍성은을 처음 알게 된 때는 1991년 1월 20일이므로, "새해 이제 27"이라는 표현은 위 메모가 홍성은을 만나기 이전에 쓰여지기 시작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위 메모는 그 상대방 여성이 홍성은이 아님은 물론이고, 동인과의 교제와 관련하여 쓰여진 것도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위 메모는 김군이 홍성은

402) 총자료집 I 책 165쪽 참조.

403) 총자료집 I 책 102쪽 참조.

399) 자료집 I 책 183쪽 참조.

과 만나기 이전부터 그때 그때 몇가지 상념을 감상적으로 적어 놓았다가 우연히 1991년 2월 18일 홍성은과 만난 자리에서 동인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김군은 당시 위 메모가 홍성을을 위하여 쓴 것이 아님을 홍성은 자신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음이 분명합니다. 말하자면 위 메모내용이 홍성은과 관계된 것이나 의 여부와 김군이 쓴 것이나 의 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위 메모내용에 언급되어 있는 "초 두 봉지"를 홍성이 김군에게 준 일이 없는 이상 위 메모는 김군이 쓴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논리로 홍성을을 추궁하여 의식의 혼란을 일으키게 하였고, 결국에는 그렇다면 피고인이 쓴 것이 틀림없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터무니 없는 논리적 비약으로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위 메모중 "잊혀져 소주 2잔에 나도 너도 없는 상태로 자네는 이러한 얘기를 했네"라는 부분은 김군이 친구 안혜정에게 보낸 편지(압수물 13-2)404) 내용중 "옛날의 부담없는 소주 한잔에 세상일 우리 일을 스스럼 없이 논하던 그때가 다만 그리워질 뿐이라네. ... 자네에게 얼마나 진실한, 부담없는, 책중의 내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진실하지 못했던 옛날의 나를 후회하고 있다네"라는 부분과 그 말투에 있어서나 담겨진 정서가 대단히 흡사하여 위 메모가 김군이 쓴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 홍성의의 수첩에 적힌 김군의 전화번호

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성은은 김기철군의 편지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제출해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받고 전민련 실무자인 박선옥의 조언에 따라 자신의 수첩(압수물 7-1)405)과 위 압수물 7-2(메모)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되돌아보면, 김군이 분신자살한 지 닷새째 되는 1991년 5월 13일 홍성이 김군이 남긴 메모와 함께 자신의 수첩(압수물 7-1)을 검찰에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수첩의 일부분에 김기철군이 생전에 약도를 그려

주고 전화번호를 기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홍성은은 피고인에 대한 유서대필 혐의내용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에 소환되어, 압수물 7-1의 수첩을 제출하면서 동 수첩에 김기철이 직접 쓰고 그린 "북지다방" 약도(수첩의 3월 19일부터 21일 일정 메모란 사이에 기재. 비록 몇 자 안되는 글이지만, 이 북지다방 약도글씨는 '홍익서점'의 '홍'자에서 보듯이 유서에서 나타나는 '홍'자의 독특한 표기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글씨의 윤곽이 유서필체와 너무나 흡사하다. 김형영의 증언에 의하면 이름 석자도 감정이 가능하다 하고, 압수물 4-3406)의 "국민연합 김기철님 드림"이란 글씨도 유서필체과의 이동여부를 검찰에서 감정의뢰 했으면서, 왜 적어도 15자 이상이 똑똑히 쓰여져 있는 이 북지다방 약도글씨와 유서필체과는 감정의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언뜻 보기에 유서필체와 동일한 글씨여서 아예 처음부터 감정에서 빠진 것이 아닌가. 검찰에 묻고 싶다)와 "김기철 743.9127.8 f742.8289"라고 김기철이 쓴 기재부분(수첩뒤 모눈종이 부분에 기재)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동인은 자신이 경험한 바의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인이 검찰에서 두번째 소환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된 1991년 5월 17일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김기철 743.9127.8 f742.8289'를 1991년 5월 10일 피고인이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은은 "5월 10일 오후 3시 반쯤 위 봉쥬르카페에서 대화를 나눌 때 제 수첩에(피고인이) 자기의 글씨로 써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후, "당시 저는 김기철의 유서가 자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었고 그래서 저의 수첩 위에 이미 죽은 김기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주는 강기훈의 속 뜻을 알 수가 없었으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수사기록 432면).407) 한편 5월 13일 검찰에 수첩을 제출하면서 김기철군의 필적이라고 진술한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제가 기훈이 형의 글씨라고 말하였다가는 기훈이 형을 위태롭게 할

405) 총자료집 I책 107쪽 참조.

406) 총자료집 I책 78쪽 참조.

407) 총자료집 I책 181쪽 참조.

404) 총자료집 I책 232쪽 참조.

까 걱정이 되고 기훈이 형이나 그 애인인 저의 친구 영미와의 정을 생각하여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자료들을 보니 유서의 필적이 기훈이 형이 쓴 것이 틀림없고 더이상 제가 감추어도 소용이 없겠기에 사실대로 제 수첩에 김기철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쓴 사람이 강기훈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408)라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홍성은은 1991년 5월 17일 검찰 조사에서 종전의 진술을 변경한 듯이 되어 있으나, 1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전화번호를 김기철이 썼는지 피고인이 썼는지 기억이 없으나, 1991년 5월 10일 봉쥬르 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쓰지 않은 것은 틀림없다409)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진 김기철군의 전화번호 기재에 관하여는 홍성의의 진술이 의견상 맞닿고 있는 듯이 보이는 바, 1심 재판부는 위 진술중 1991년 5월 17일 작성된 홍성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상의 내용, 즉 1991년 5월 10일 피고인이 써주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며, 법정에서 선서하고 한 증언보다 장시간의 위법한 강압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에 우월한 증명력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경험칙에도 반하고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나. 여기서 위 김기철군의 전화번호가 김군 자신이 쓴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객관적인 논거를 몇가지 제시하기로 합니다.

첫째, 홍성이 위 전화번호가 쓰여 있는 자신의 수첩을 검찰에 제출한 동기를 살펴볼 때, 위 전화번호는 분명히 김군이 쓴 것이 입증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성은이 김군의 전화번호가 쓰여 있는 수첩을 제출하게 된 경위는 검찰의 요구 및 전민련 실무자인 박선옥의 조언에 따라 한 것입니다. 당시 동인은 피고인에 대한 유서대필혐의 여부에 관하여는 짐작도 하지 못한 채 소박한 생각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김기철 필적관계 자료를 제출한 것 뿐입니다.

따라서 동인이 1991년 5월 13일 검찰에 동인의 수첩을 제출할 당시 피고인과 관련하여 동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나 또는 불리하나 여부의 판단을 할 상황에 도대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동인이 당시 '동인의 수첩에 기재된 김기철군의 전화번호는 김군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직접 쓴 것'이라고 한 진술은 사실 그대로를 말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기철의 전화번호 기재와 관련된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은 전체적으로 1991년 5월 14일의 진술이 사실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둘째, 홍성에에 대한 5월 17일의 검찰 진술조서 내용중 피고인이 김기철의 전화번호를 썼다는 홍성의의 진술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내용입니다. 5월 17일자 진술조서를 보면, 홍성은은 김기철의 전화번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5월 10일 수첩에 써주었다고 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왜 그것을 거기에 썼는지 물렸으며, 피고인이 동인에게 검찰조사시 김기철군이 쓴 것처럼 부탁한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왜 썼는지 이유도 모르고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5월 13일 검찰에 소환되어 자발적으로 압수물 7-2, 메모와 김기철군이 그려준 북지다방 약도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이 김기철군의 전화번호를 쓴 사실을 감추고 반대로 김군이 썼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당시 검사가 피고인에 관한 내용을 전혀 묻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고, 필적감정 결과도 아직 회보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물며 아무것도 모르는 홍성이 모든 상황을 번개같이 순간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쓴 것을 김기철군이 쓴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너무나 이치에 부합되지 아니합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홍성은은 5월 17일 "그러면 왜 1차 조사시 부탁도 받지 않았는데 부탁을 받은 것처럼 김기철의 글씨라고 거짓주장을 계속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부탁받은 사실은 없었으나 1차 조사를 받을 때 그때서야 강기훈이가 죽은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 수첩에 적은 뜻을 알아채려고 김기철의 글씨라고 말하였으며, 그 이유는 앞서 말한

408) 총자료집 I책 181쪽 참조.

409) 총자료집 II책 171쪽 참조.

대로 강기훈이가 유서를 대신 쓴 것이 탄로나서 위태롭게 되지 않도록 거짓진술을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수사기록 434면).⁴¹⁰⁾ 즉 5월 13일에 이은 5월 14일 1차 조사시 이미 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하였다는 사실 및 이를 감추기 위하여 홍성은의 수첩에 김군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습은 뜻을 알아채려고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월 17일 같은 자리에서 작성된 동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진술에 상반되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수사기록 432면).⁴¹¹⁾

문 : 그 당시 진술인은 김기철의 유서가 자필이 아니고 바로 강기훈의 글씨였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받게 될 경우 마치 김기철이가 생전에 진술인의 수첩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놓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려는 뜻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는가요

답 : 당시 저는 김기철의 유서가 그 자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었고 그래서 수첩 위에 이미 죽은 김기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주는 강기훈의 습 뜻을 알 수 없었으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5월 17일 한날에 진술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5월 14일 1차 조사시 이미 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고, 뒤에서는 5월 17일 2차 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유서대필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내용의 모순은 김군이 쓴 전화번호를 억지로 피고인이 쓴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기 때문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셋째, "김기철 743.91278 f742.8289"는 비록 몇자 안되는 글씨이기에는 하나 김군이 썼다고 판단되는 필법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전화번호의 국번호 다음에 "-"가 아니라 "."으로 연결해서 쓰는 김군의 습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전민련이 제출한 압수물 11-1의 김기철의 수첩에도 전화번호가 모두 거의 같은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습

410) 총자료집 I 책 181쪽 참조.

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첩(압수물 9-25)에는 이와 달리 전화번호가 거의 100퍼센트 "-"로 연결해 쓰여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 김기철의 전화번호 기재중 아라비아 숫자인 "8"의 모양이 언뜻 보기에도 특이합니다. "8"자를 쓰는 순서는 "5"로 되어 있어 흔히 보는 예와 같으나, 끝부분이 "8"에서 보는 것처럼 수평 또는 오른쪽 아래로 처져 있습니다. 이러한 "8"자의 끝부분 처리 습성은 압수물 11-1의 전화번호 기재 부분⁴¹²⁾에 쓰여 있는 대부분의 "8"자에서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피고인의 수첩(압수물 9-25)⁴¹³⁾에서 보는 "8"자는 "8"의 예처럼 끝부분이 부드럽게 오른쪽 위로 연결되어 기재 습성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번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김형영 등이 쓴 '아라비아 숫자의 운필형태와 개인별 특성에 대한 연구'의 321면⁴¹⁴⁾ 도표를 보면, 피고인이 "8"자 표기는 100중 66명이 쓰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 두가지 필법상의 중요한 특징도 "김기철 743.91278 f742.8289"는 김군 본인이 쓴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넷째, 홍성은이 5월 17일 김기철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이 쓴 것처럼 진술하게 된 계기는 검사가 제시한 필적자료가 모두 유서와 동일한 필적으로 보이도록 심리적으로 강요됨으로써, 결국 피고인이 유서를 쓴 것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사기록 433면⁴¹⁵⁾에 의하면, 당시 검사는 김기철의 유서, 업무일지, 피고인의 필적을 홍성은에게 제시하였던바, 홍성은은 "예, 모두 같은 글씨로 보이며 저의 수첩에 쓰여 있는 필적과 같아 보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원심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검사로부터 제시받은 필적 중 압수물 9-1(수신 김정훈, 발신 김명훈의 서신)⁴¹⁶⁾이 유서필적과 흡사하게 보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한편 김기철군의 주민등록증 분실신

411) 총자료집 I 책 181쪽 참조.

412) 총자료집 I 책 774쪽 참조.

413) 총자료집 I 책 693쪽 참조.

414) 총자료집 III 책 121쪽 참조.

415) 총자료집 I 책 181쪽 참조.

416) 총자료집 I 책 652쪽 참조.

고서(압수물 2-1)⁴¹⁷⁾ 및 김군의 가족이 제출한 책 속 표지 글씨(압수물 3-1)⁴¹⁸⁾와 유서와는 "다른 사람의 글씨로 보입니다"라고 5월 17일 검찰 조사시 진술하였습니다(수사기록 433면). 여기서 검사가 당시 필적감정에 관하여 아무리 지식도 없는 홍성은에게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필적자료를 제시하며 착각을 유도한 것이 과연 적당한 것이었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의 진술에서 명백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홍성은은 유서의 글씨, 강기훈의 필적 글씨, 홍성은의 수첩에 쓴 김군의 전화번호 글씨가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 및 유서의 글씨와 김군의 주민등록분실신고서 등의 글씨가 다르다는 사실을 결국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의식의 혼돈속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991년 5월 17일 작성된 홍성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홍성은이 당시 어떤 과정을 거쳐 정상적인 기억력과 판단력을 상실해 갔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불행한 기록입니다.

3. 5월 7일밤의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가. 1991년 5월 7일 유서를 쓰러 자취방에 간다는 김기철군과 헤어져 아현전철역에서 전철을 타고 건국대 민중병원 앞에서 내린 홍성은은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홍성은이 피고인의 집에 전화를 건 까닭은 김군이 자기에게 일이 생기면 자기집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가르쳐주라고 특별히 부탁한 때문이었습니다. 홍성은은 그때까지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었으며, 전민련 사무실 외에 피고인의 집으로 직접 전화를 건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5월 7일밤 김기철군이 홍성은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를 가리켜 주지 않았거나 전화를 걸도록 부탁하지 않았더라면, 당시 상황에 비추어 홍성은이 늦은 밤에 피고인 집에 전화를 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김군이 유서를 쓰러 간다면서 아현 전철역에서 홍성은과 헤어진 사실 및 홍성은에게 자기집 전

417) 총자료집 I 책 44쪽 참조.

화번호를 가르쳐 주라고 피고인 집에의 전화를 부탁한 사실은 1심 변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 결정적으로 피고인이 무고하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유서를 대필하였다면, 그 시각은 김군이 홍성은과 헤어진 이후인 5월 7일 밤 자정무렵부터 임근재 등과 같이 있던 시간을 제외하고, 5월 8일 분신 직전까지의 새벽 무렵 사이의 시간일 터인데, 이처럼 곧 만나 유서를 대신 쓰게 하고 장례를 포함하여 모든 사후문제를 맡길 사람에게 미리 앞서서 홍성은으로 하여금 자기집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도록 전화 부탁을 하였을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나. 검찰은 5월 7일밤 홍성은이 위와 같은 김군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자마자 피고인이 까닭 없이 "미안하다"라는 말을 거꾸 3번하였는데, 이것은 피고인이 유서를 대신 써주는 등 김군의 자살을 권유하고 방조하는데 대한 도의적 죄책감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사건 공소장처럼 피고인이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고무하였더라면, 이러한 행위는 우리의 상식에 비추어 정상적인 도덕적 판단기준을 훨씬 넘어선 살인의 준비행위라고 할 것이고, 또 설사 분신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상 마지막 순간까지 과연 그러한 일이 일어날 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 전후과정의 은폐를 위해서라도 그 범죄의 모습이 결코 드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고인이 한 '미안하다'라는 말을 도의적 죄책감의 표현이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은 삼척동자라도 믿기 어려운 추리입니다.

이렇게 볼 때, 5월 7일밤 피고인이 홍성은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한 뜻은 김기철군의 분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이 자명합니다. 우리가 가장 상식적으로 추론하는 바는 당시 홍성은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동기는 김군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으나, 통화내용중에 자연스럽게 바로 이틀전에 이영미 등과 함께 만나 건국대 부근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셨던 일을 서로 얘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홍성은은 아마도 피고인이

418) 총자료집 I 책 74쪽 참조.

그날 밤 집에 잘 들어 갔으나, 다음날인 5월 6일 전민련 사무실에는 왜 안나왔느냐는 등의 안부를 물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5월 5일 밤 땅바닥에 주저앉는 등 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홍성은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조른 행동을 사과하는 뜻에서 "미안하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4. 압수물 11-1, '전민련 수첩'

홍성은은 5월 7일밤 김기철군으로부터 김군의 전민련 수첩을 받았습니다. 홍양은 김군이 분신자살한 5월 8일 연대에 와서 점심시간 무렵에 전민련 실무자인 원순용에게 위 수첩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수첩의 전화번호 기재 부분은 당일 김군의 연락관계로 2부 복사되어 생전에 김군과 가깝게 지냈던 이효경과 최경환이 각각 1부씩 가지고 김군의 연락처를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후 김기철의 수첩은 연대내외의 범국민대회의 총무국에서 보관되다가 강경대군 장례식이 끝나자 종이상자 속에 봉해진 채로 전민련 사무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검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유서대필혐의자로 지목되자, 수첩의 소재를 확인하여 찾아 5월 20일 홍성은으로부터 받은 그대로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홍성은은 이 수첩에 관하여 수첩의 전체적 형상, 사용된 필기구의 종류, 색깔, 내용물 면수, 떨어져 나간 부분의 절취선 형상 등이 동인의 기억과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 및 1심 판결은 이 진술을 김기철의 수첩이 조작되었다는 주요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성은이 위 수첩을 본 것은 극히 일순간의 일로써, 특별히 수첩의 형상이나 내용, 사용된 필기구의 종류나 색깔 등에 관하여 기억하겠다고 마음먹은 일도 없었습니다(공판기록 501면).⁴¹⁹⁾ 동인의 검찰진술에 의하더라도 김군과 헤어질 때 핸드백 속에 넣어 가지고 와 집에서 "잠깐 훑어보았"을 뿐입니다(수사기록 398면).⁴²⁰⁾ 그리고 홍양이 최초로 수첩에 관한 기억을 되새겨낸 시점은 동인이 수첩을 원순용에게 건네준 5월 8일로부터 18일이 지난 5월 26일이었습니

419) 총자료집 II책 170쪽 참조.

다(수사기록 566면 이하).⁴²¹⁾

따라서 김군의 분신자살 의도를 듣고 몹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그가 준 수첩을 잠시 살펴보았을 뿐인 홍양이 수첩의 여러가지 형상이나 사용된 필기구의 종류와 색깔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설록홀즈'와 같은 비상한 관찰력과 기억력을 가지고도 쉽지 않을 터인 데도 이 대목에 관한 홍성은의 진술기재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은 채증법칙위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합니다.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 8호(노트)⁴²²⁾에 대한 홍성은의 증언을 살펴보면, 홍양의 기억력이 결코 평균 이상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집스럽게 이성적인 판단을 회피하려는 잘못된 성향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증제 8호의 형상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동인은 김기철이 쓰다만 노트를 받아 그 앞쪽 여백에 속초 동우전문대 사건과 관련한 녹음테이프 부분을 듣고 옮겨 썼던 것입니다(1장은 붙어 있고, 1장은 떨어져 있는데 잔류부분에 홍성은의 글씨가 남아 있다). 그런데 뒤에 1장이 본체와 분리되어 떨어져 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적어도 증제 8호의 노트에 관한 한, 홍성은이 위 노트 본체에 붙어 있는 지면에 녹음테이프 내용을 듣고 옮겨 썼음이 명백한 데도, 홍양은 고집스럽게 김군이 노트를 찢어 주었으며 거기에 녹음테이프 내용을 옮겨 썼다고 1심 법정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눈에도 자명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홍성은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홍양의 기억력이 평균 이하로 좋지 않거나(왜냐하면 잠깐 훑어본 김기철의 수첩의 경우와는 달리 상당시간 증제 8호의 노트에 직접 스스로 썼기 때문이다), 아니면 터무니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입증된다고 하겠습니까(동인이 이처럼 증제 8호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므로, 1심에서는 더이상 증제 8호에 관한 신문내용의 진전이 없었다).

5. 1991년 4월 27일에서 5월 8일 06:00 사이 김군과

420) 총자료집 I책 161쪽 참조.
421) 총자료집 I책 282쪽 참조.
422) 총자료집 II책 811쪽 참조.

의 만남, 전화통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1년 4월 26일 강경대군 치사 사건이 발생한 이래 김기철군이 반정부 투쟁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분신자살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고 김군의 분신자살 결행을 용이하게 도와 주겠다는 의도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사이에 김군 명의의 유서 2매를 써주고 자살을 방조하였다고 것입니다. 만일 공소사실대로 김군이 1991년 4월 26일 이후 분신자살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후부터 5월 8일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만나 분신자살 계획을 세우고 유서를 대필하게 하였다면, 상식적으로 위 기간동안 인관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김군의 여자친구인 홍성은에게 어느 정도 김군의 분신자살 의도가 노출되거나 감지되었을 것입니다. 홍성은이 김군을 처음 만난 것은 1991년 1월 10일이었는 바, 그후부터 매주 1-2회 가량 만나 교제하였습니다. 1991년 4월 27일 이후부터 김군 분신전까지 김군과 홍성은이 만난 회수 및 대화내용 등을 약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 4월말 02:00 - 12:00경 김군이 음주상태에서 일이 힘들다고 전화하여 건대 민중병원앞에서 만나 걸어다님.
- 나. 5월 2일 19:30경 서강대 부근 카페에서 만나 일상적인 대화 나눔.
- 다. 5월 4일 12:30경 연대 학생회관 3층에서 만나 함께 식사함.
- 라. 5월 6일 13:00경 김군이 "당분간 못볼 것 같다"는 내용으로 홍성은 집에 전화,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함.
- 마. 5월 7일 19:30 - 22:30경 김군이 자살의도 비침. 만류하였으나 듣지 아니한 상태에서 김군의 수첩받아 22:30 헤어짐. 김군 유서 쓰러 자취방에 간다고 하였음.
- 바. 5월 8일 06:30경 김군이 홍성은 집에 전화하여 "이대쪽에 있다, 열심히 살아라"는 등의 마지막 전화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군과 가장 가까웠던 여자친구 홍성은이 김군의 분신자살 의도를 알게 된 것은 불과 김군이 분신하기 약 12시간 가량 전이었습니다. 만일 이 사건 공소사실대로 김군이 1991년 4월 26일 이후 분신자살 결심을 하였고, 피고인이 4월 27일 이후 5월 8일 사이에 김군의 유서를 대필해 주는 등 자살결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면, 이처럼 분신 직전까지, 일찍이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까지 비추었던 김군이 홍성은에게 전혀 아무런 정황도 얘기하지 않거나, 홍성은이 분신의도를 조금도 감지하지 못하였을 리 없을 것입니다.

홍양은 1심 법정에서 5월 7일 전에는 기철군이 분신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일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공판기록 476쪽 참조).⁴²³⁾

6. 홍성은의 착각의 연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성은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김군의 유서를 대필한 것으로 착각하게 한 것은 검찰이 각종 필적자료를 들이대며 홍성은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될 정도로 혼돈시키고 교란시켰기 때문입니다. 5월 17일자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동인은 특히 검찰이 제시하는 압수물 5-1(업무일지)⁴²⁴⁾와 압수물 9-1(수신 김정훈, 발신 김명훈의 서신)⁴²⁵⁾을 보고 유서와 동일필적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공판기록 474쪽 참조).⁴²⁶⁾ 또 외관상 동일한 사람이 쓴 것이라고 쉽게 판별하기 어려운 압수물 2-1(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⁴²⁷⁾ 및 3-1(책 속표지 필적)⁴²⁸⁾이 유서와 다른 필적이라고 오인하였습니다. 홍성은의 이와 같은 착각과 오인은 위 필적자료 상호간의 연관성을 고려해 볼 때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오류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홍성은의 경우 특히 혼동할 수밖에 없는 극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첫째, 홍성은은 5월 13일과 5월 14일에 있

423) 총자료집 II책 172쪽 참조.
424) 총자료집 I책 81쪽 참조.
425) 총자료집 I책 652쪽 참조.
426) 총자료집 II책 171쪽 참조.
427) 총자료집 I책 44쪽 참조.
428) 총자료집 I책 74쪽 참조.

있던 검찰 1차 조사때 검찰의 조사방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주위의 조언에 따라 또는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김군과의 교제경위, 피고인 및 이영미 등을 알게 된 경위, 김기철군의 수첩진 등을 검찰에 일부 말하지 않고 있다, 1991년 5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계속된 검찰 2차 조사에서 일부 말하지 않은 사실이 노출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한 추궁을 받아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홍성은에 대한 2차 조사가 5월 17일에 있는 듯이 원심 법정에서 진술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392면⁴²⁹) 이하의 자술서 작성일자에 의하여 분명한 바와 같이 5월 15일 오후 검찰에 출두하여 5월 18일까지 계속 조사받았다. 왜 일부 사실을 감추었느냐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점차 검찰의 의도대로 진술내용이 왜곡되게 되었습니다.

둘째, 5월 15일 이후 집중적으로 계속된 조사와 추궁과정은 동인의 심신을 극도로 피곤하게 함으로써 극단적인 판단력 저하를 야기하였습니다.

셋째, 이렇게 심리적으로 허약하고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홍양은 당연히 검사가 제시한 필적자료의 동일, 상이여부에 이견을 제시할 입장에 있지 아니하였던 까닭에 착각과 오인이 생겼습니다.

넷째로, 이런 착각과 오인을 바탕으로 하여 사건의 전개과정을 역지로 꿰맞추다 보니 예컨대 홍양이 가져온 압수물 7-2 '메모' ⁴³⁰가 사실은 김기철군이 쓴 것인 테도 피고인이 쓴 것으로 둔갑되었고, 홍성은의 수첩에 적힌 김기철군의 전화번호 역시 김군 본인이 쓴 것임이 분명한데도 제1차 검찰진술 때와는 다르게 마치 피고인이 쓴 것처럼 진술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섯째, 홍성은이 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하였다고 착각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검찰이 피고인이 쓴 것이라며 제시한 압수물 9-1(수신 김정훈, 발신 김명훈의 서신. 김명훈이라는 가명의 사람이 김정훈이라는 가명의 피고인에게 보낸 것임)이 유서와 너무나 흡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압수물 9-1을 홍성은에게 보여준 까닭은 물론 검찰 또한 피고인이 위서신을 썼으며, 유서글씨와 가장 흡사한 글씨라고 잘못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이러한 오판은 다

움과 같은 신문기사가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결과 강씨가 '김명훈', '이현우' 등의 가명을 사용해 왔으며, '김명훈'이란 가명이 적힌 메모지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메모지는 강씨가 자신의 가명을 '김명훈'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눈종이에 쓴 운동권의 공문형식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메모지의 필적이 85년 작성된 강씨 자술서의 필적과 육안으로도 동일한 필적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으며 아직까지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필적감정을 의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1991년 5월 22일자 국민일보 등)⁴³¹

검찰도 이렇게 터무니없이 필적을 혼동하는데, 홍성은이 착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을 요약컨대 홍성은의 착각과 오인은 근본적으로 검찰의 강압수사, 기망수사에 연유한 것입니다. 홍성은이 참고인의 지위에 불과한 테도 1991년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한주일 내내 5월 14일 밤 하루만 집에 가서 잠을 잤을 뿐, 계속해서 아무런 법률적 조력이나 자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계속 조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본권의 침해로서, 위헌적인 수사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양이 필적감정 전문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적자료를 홍양에게 제시하며 상이여부에 대한 판단을 강요한 것은 이 사건 수사가 본질적으로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 바탕을 둔 적법절차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업무일지는 3인이 쓴 것인데도 마치 1인이 쓴 문서인 것처럼 제시되었으며, 압수물 9-1(수신 김정훈, 발신 김명훈 서신)은 피고인이 쓴 것이 아닌 문서인데도 마치 피고인이 쓴 것처럼 유서와 동일필적으로 홍성은에게 제시되어 홍양으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피고인이 김군의 유서를 대필한 파렴치범으로 혼돈을 일으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430) 총자료집 I 책 105쪽 참조.
431) 총자료집 III책 596쪽 참조.

429) 총자료집 I 책 159쪽 참조.

제4. 김형영의 감정서

1. 필적감정의 비과학성

필적감정은 현미경 등의 기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최근까지 수행되어온 감정방법은 궁극적으로 감정인의 눈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인영감정의 경우에는 비교되는 두 인영을 충분히 확대하여 서로 겹쳐봄으로써 비교적 손쉽게 판별할 수 있지만, 필적의 경우는 동일인이 쓴 경우라 하더라도 글자의 모양이 똑같은 경우란 없기 때문에, 그 필적의 상이여부를 100퍼센트 맞게 감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과학적이라고 할 때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경험되는 사실이 실험에 의하여 재생되고, 동일한 조건과 상태하에서는 같은 사건이 원칙적으로 반복된다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면 수소와 산소가 동일비율로 결합하면 언제나 물이 된다는가, 태양의 일출시간과 일몰시간을 천체 물리학적 법칙에 의하여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필적감정은 동일인이 쓴 글이라 해도 언제나 필법상의 특징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러한 특징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감정인의 눈을 통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다는 점, 동일인이 쓴 경우라 해도 때와 장소, 사용된 필기구, 글을 쓸 때의 심리상태 등에 의하여 전혀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일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 및 감정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서 상반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등 본질적으로 과학적인 감정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적의 이동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되는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관계로 필적감정에 관한 업무도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필적감정의 비과학성, 감정인의 자질과 능력에서 오는 편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웃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가능한 한 필적감정에 객관적이고 과학에 준하는 요소를 도입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최근 일본과학경찰연구소 문서연구실에서 컴퓨터를 이

용한 필적감정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활발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이러한 컴퓨터 처리 방법이 개발되면, 필적감정의 신뢰성이 훨씬 증가되고 감정인의 자질 및 신뢰도와 관련된 논란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2. 필적감정의 일반 원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화학과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정창용이 1969년 11. 저술한 '문서감식의 연구'⁴³²라는 저서에 의하면, 필적감정에서 고려되는 개개문자에서의 특징을 (1)문자의 크기 (2)서체 (3)묵색의 정도 (4)문자의 굵기 (5)문자의 형태 (6)문자의 경사 (7)문자의 진동 (8)필체(筆漚)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 문서전체로서의 특징으로서는 (1)행 (2)문자의 배열 (3)행의 방향 (4)오자, 탈자의 유무 (5)문자의 말소, 삼입 (6)필세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필적이란 모방과 연습에 의하여 어느 정도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상태 또는 연령 등에 따라서도 동일인의 필적이 전혀 다르게 바뀔 수 있음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위 책에서 필적은 물리학적 입장에서 볼 때는 '점과 선'이 합쳐서 성립되는 것으로 이 구성은 개인성의 차이에 의하여 천태만상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필적감정은 바로 이 개인성인 교유의 특징을 발견하여 필적의 이동을 식별하는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적이 지문과 같이 고유성 문제에 있어 만인 부동, 종생불변으로 될 수는 없으며 필적에서 보이는 고유성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조건 상태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므로, 필적감정을 함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을 유의사항으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 개개인의 필적이 언제나 같은 형태와 모양으로 현출된다고만 생각하여 변화성을 소홀히 하면 오류를 야기하기 쉽다.

둘째, 이 필적이 대략 누구의 필적이라고 하는 예상적 태도를 삼가야 한다.

셋째,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432) 총자료집 III책 3쪽 참조.

저자는 이상의 유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보편적인 필적감정 방법으로서 통계적 방법과 기하학적 방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계적 방법은, 비교되는 두 필적의 특징에서 동일 특징비율이 어느 정도 인가에 따라 필적의 이동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일본 경시청의 예를 들어 저자는 동일특징 비율의 계산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고려되는 특징을 (1)필세, 필압 (2)배자형태 (3)필순 (4)자획구성의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동비율은 '동일특징수/대조특징 총수 x 100'의 산식에 의하여 구해집니다. 여기서 계산된 이동비율이 70% 이상인 경우는 동일필적으로 감정하고, 동일특징수가 45% 이하인 경우는 상이필적, 동일특징수가 45%부터 60%의 범위 내인 경우는 이동불명, 동일특징수가 60%부터 70%의 범위 내인 경우는 위 각 필법상의 특징을 참고로 하여 이동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동비율을 검출하는데 필요한 특징의 최소량은 아직 명백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기하학적 방법으로서 비교, 대조되는 두 필적에서 각 문자의 가운데에 선을 긋고 이에 대한 필적의 각도를 측정하여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에서 위 책에 소개된 방법은 필적감정이 본질적으로 과학성을 결여하고 있으나, 그러한 한계내에서 비교적 보편적이고, 객관성을 견지하고 있는 방법으로 연구되어,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필적감정은 근본적으로 과학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예컨대 두 개의 필적에서 'b'에 관한 필법상의 동일특징 비율이 70% 이상으로 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두 개의 필적이 반드시 동일인의 필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특징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는 동일필적이라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감정을 담당한 김형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의 감정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인 양후열도 특히 위 통계적 방법에 따라 국과수에서 필적감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사건 감정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행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 졸속감정, 심증감정

가. 이상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필적감정은 정말 엄정 중립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신중하고 주의깊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문제된 필적과 관련한 객관적인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직 필적감정 결과만에 의하여 사건의 진말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으로 돌아와 과연 이 사건 감정을 도맡아 한 김형영이 어떻게 감정을 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한마디로 김형영은 이 사건 감정을 함에 있어서 굳이 필적감정의 비과학성을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소개된 최소한의 객관적 방법도 따르지 않았습니 다. 그는 통상 감정 1건을 하는데 일주일 가량이 소요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감정은 하룻만에 감정결과를 회보하기도 하고, 감정의뢰 내용이 공문에 의하여 명기되어 있는 데도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임의로 의뢰내용을 바꾸어 회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는 데도 마구 감정의뢰의 접수를 생략하고 경우에 따라서 감정의뢰가 없는 데도 며칠전에 알아서 미리 감정에 착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김형영의 이 사건 감정은 졸속감정, 심증감정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나. 전술한 바와 같이 김형영과 양후열은 앞서 살펴본 통계적 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감정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증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김형영과 양후열은 동일특징 비율이 70% 이상이면 동일필적, 45% 이하이면 상이필적으로 감정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동일특징 비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적 방법이 사용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필적감정의 비과학성을 최대한도로 극복하기 위하여 오랜 경험을 통하여 차선책으로 연구 개발된 것입니다. 이런 방법에 의하여 비교적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형영

이 이 법정에서 공언한 바와 같이, 그가 한 이 사건 감정이 실제로 위와 같은 통계적 방법에 따라 하였고, 그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일본, 미국의 보편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감정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마땅히 구체적인 이동비율의 수치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명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감정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감정관계 서류 어디에도 그가 이와 같이 실제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변호인이 이점에 관하여 추궁하자 김형영은 1심에서 '당시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남겨둔 자료는 없다고 변명'하였다가, 2심 법정에서 이르러서는 급기야 '감정을 하는 과정에 저절로 마음속에서 70% 이상 또는 45% 이하로 이동비율이 떠올랐다'는 등 그 누구도 믿지 않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동비율을 계산한 바는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마음속에 이동비율이 신기루처럼 떠올랐거나, 이동비율을 구체적으로 계산한 바가 없다는 김형영의 증언은 "나는 이 사건 감정을 엉터리로 하였다"는 고백입니다(사실 이렇게 허위감정을 하였으므로 유서와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판정한 것이다).

둘째, 김형영은 위 정창용의 저서에 언급되어 있는 기하학적 방법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감정서에 첨부된 사진자료에는 막연하게 글자 몇 개가 같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정밀하게 관찰된 각도, 비교자료는 없습니다.

셋째, 김형영이 한 이 사건 감정은 자신이 쓴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에도 어긋나게 졸속으로 되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한글의 운필형태 분류와 회소성에 관한 연구(433)'에 의하면, 한글은 문자의 형태가 단조롭고 쓰기가 쉽기 때문에 기재되어 있는 문자의 형태를 보면, 많은 사람에게서 공통적인 유사성이 상당부분 현출되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동 논문에서는 대상자 100명에게 문장을 받아 쓰게 하여 그중 'ㄹ, ㅁ, ㅂ, ㅇ'과 '나, 원정, 위하여'의 필적을 조사한 결과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위 결과에 의하면 '나, 원정, 위하여'의 단어를 쓰는데

433) 총자료집 III책 115쪽 참조.

있어서 상당한 비율의 유사성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논문에서는 "일부의 유사성만으로 판별한다는 것은 심히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필적감정이란 차분한 가운데 세심하게 많은 시간을 활용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형영 자신도 위 논문에서 필적감정이 일부의 유사성이 아닌 여러 특징을 종합하여 세심하고 충분한 시간동안 검토하여야 비교적 객관적인 감정을 할 수 있다고 쓰고 있으면서 이 사건에서는 감정서에 첨부된 사진자료에서 입증되는 바와 같이 김형영은 극히 일부의 유사성만으로 필적의 이동여부를 결정하였고, 감정시간도 극단적으로 단시간 내에 검찰의 요구에 따라 그 의도에 맞게 회보하였습니다.

이처럼 적당히 비슷한 글자를 몇 개 골라 두 필적이 같다고 하는 감정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김형영이 한 이 사건 감정의 실체입니다.

4. 감정과정의 불공정성 - 의뢰인과의 유착

앞서 정창용의 저서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필적감정은 그 감정의 비과학성 및 주관성이 개입되기 쉬운 성질때문에 특히 어느 경우보다도 감정인은 중립적이고 독립된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여 감정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하여 1심 법정에서 김형영은 "증인은 이건 필적감정을 행함에 있어서 검찰측으로부터 감정 목적물인 필적자료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압수경위 및 배경 등을 들은 바가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고, 또 "증인은 이건 각 필적감정서를 작성할 때까지 검찰측을 비롯한 누구의 조언이나 설명을 들은 바 없이 오직 증인에게 제시된 필적자료만에 의하여 증인의 경험과 양심에 따라 필적감정을 행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역시 "예"라고 답변함으로써, 마치 동인이 이 사건 감정과 관련하여 엄정중립의 입장에서 감정을 한 것처럼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형영의 이러한 증언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동인은 동

434) 총자료집 II책 120쪽 참조.

인의 다른 증언에 의해서 입증되는 바와 같이, 검사로부터 사전에 문제된 필적이 피고인 또는 김기설군의 필적임을 듣고 감정에 임하였으며, 업무일지의 경우에는 감정의뢰사항과 달리 여러 사람이 썼을지 모른다는 말을 검사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엉터리 감정을 하였고, 수첩 절취선의 불일치에 대한 감정의뢰가 있었던 것은 1991년 5월 24일이었는데 그 이전부터 검찰의 의도에 따라 절취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미리 감정을 하는 등 일일이 예를 들자면 한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이 사건 감정의뢰의 접수관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와 같이, 김형영과 검찰은 일정한 감정건의 경우 그 대외적 결과가 이 사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접수일자를 생략한 채 임의로 처리하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무분장규정에 의하면 문서수발업무는 서무과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신자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인 모든 대외적 공문은 반드시 서무과의 접수를 거쳐야 합니다. 접수를 마친 후 공문은 연구소장의 결재를 거쳐 해당과로 보내져 공문내용에 맞추어 업무가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찰은 예컨대 피고인의 진술서나 옥중편지, 김기설의 수첩 등 이 사건 유서와의 동일필적 여부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건에 있어서 만일의 경우 검찰의 의도대로 감정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렇게 하였는지는 몰라도 공식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접수가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멋대로의 접수생략이 만일 검찰 의도대로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그런 때에는 아예 처음부터 감정이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교육지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합니다. 김형영은 이 점에 관하여 그의 재량으로 접수를 생략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무분장규정에는 접수업무는 그 사유여부를 불문하고 서무과 전속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게 별도의 접수관계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가 재량에 의하여 접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임이 분명합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양후열은 이 범정에 증인으로 출

석하여 '이와 같이 어떤 감정의뢰서는 접수인이 찍혀 있는데 반하여 다른 의뢰서의 경우는 접수인이 찍혀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나'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처음에는 '우편으로 들어 온 경우는 접수인이 찍히고 인편으로 들어 온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가, '이 사건 감정의뢰는 모두 인편으로 들어 왔는데 그중 일부가 감정의뢰사항이 중복된 관계로 김형영의 재량에 의하여 접수가 생략되었다'고 황설수설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형영은 이 사건 감정의뢰서는 처음부터 문서분석실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서무과를 거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분석실과 서무과의 거리가 십리나 떨어진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접수 절차도 지극히 간단한 것인 이상 중복을 피하여 접수를 생략하였다는 김형영의 증언은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5월 21일자 감정의뢰의 경우는 처음으로 김군의 수첩과 피고인의 필적과의 이동여부를 의뢰한 것인데 접수가 생략되어 있어 의혹이 있고, 5월 24일 의뢰된 수첩 절취선의 불일치 여부 문제는 공식적인 의뢰가 없었는데도 이미 감정을 하고 있다고 김형영 스스로 증언하고 있음에 비추어 업무상의 중복과 접수생략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처럼 접수에 관한 권한이 없는 김형영이 재량에 의하여 접수를 생략하였다고 우기고 있고, 또 업무중복과 접수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데도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 접수를 생략하였다는 김형영의 주장은 금년초 김형영이 문서감정과 관련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이 사건 수사 담당부에 원조를 청하고 검찰간부가 경찰에 호통을 쳤다는 신문보도와 관련지어볼 때 이 사건 감정을 둘러싼 김형영과 검찰과의 유착관계에서 나아가 모종의 흑막이 개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합니다.

5. 감정내용의 모순점

가. 감정결론의 변경

김형영은 이 사건 유서와 김기설군의 가족이 제출한 책 속표지 및 김군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와의

이동여부에 관하여, 처음 5월 15일자 감정서에서는 유서가 속필체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책 속표지 글씨 등은 정자체로 되어 있고, 양자는 사용된 필기구가 다르므로 이동여부를 논할 수 없다⁴³⁵⁾고 하였다가 뒤에 가서 5월 25일 감정결론을 변경⁴³⁶⁾하였습니다. 김형영은 이 점에 관하여 추가자료가 나왔다고 하나, 이 추가자료들은 앞서의 이동여부 논단불능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결코 아닙니다. 김형영이 작성한 5월 25일자 감정서에 기재된 추가자료는 김군의 이력서, 김군의 친구 안혜정이 검찰에 제출한 카드 및 편지 등인 바, 위 감정서의 감정조건에도 필기구와 필체로 인한 대조자료의 부적합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고, 증인 양후열도 위 추가자료들은 유서와 사용된 필기구가 다르고 정자체로 되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자료에 의하여 처음의 감정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추가된 자료자체가 그 필체나 사용된 필기구의 점에 있어서 유서와의 이동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자료들이나 이상 이들 자료가 보태졌다고 해서 유서와의 이동여부 논단불능으로 결론지은 처음의 감정결과가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형영은 아무런 논리적·객관적 근거도 없이 위 두 자료가 추가되었다는 오직 그 이유만으로 5월 15일의 감정조건을 변경하여 위 추가자료를 포함한 모든 김군의 필적이 유서와 다르다고 감정결과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조건에 불합리한 변경은 그가 한 이 사건 감정이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 업무일지에 대한 감정

전민련이 제출한 업무일지(입수물 5-1)⁴³⁷⁾는 맨 앞장은 전민련 실무자인 이동진, 둘째장의 다섯째 칸 파란글씨부분은 동료 실무자인 임무영, 둘째장의 나머지 부분과 셋째장은 김기설군이 쓴 것입니다. 전민련의 업무일지 작성자가 누구이든 이렇게 3사람이 쓴 사실은 김형영과 양후열의 증언에 의하여도 분명한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유서와 업무일지의 이동여부를 감정한 1991년 5월 15일자 감정

서에는 유서 2매와 업무일지 3매가 동일필적이라고 결론지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똑같이 맨 앞장과 둘째장의 다섯째 칸 파란글씨가 나머지 부분과 서로 다르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맨 앞장은 논의로 하더라도 둘째장의 다섯째 칸이 불과 몇자 안되고 언뜻보기에 나머지 글씨와 극히 유사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감정에 실제로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증인 양후열마저 앵무새처럼 "유서와 다른 필적"이라고 증언하는 것은, 유서와 업무일지에 관한 1991년 5월 15일자 감정서에 관하여 뒤라고 주석을 달고 변명을 하던간에 업무일지는 3인이 작성하였고, 따라서 유서와 업무일지가 동일필적으로 감정된 1991년 5월 15일자 감정서는, 업무일지에 김기설의 필적이 가장 많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엉터리라는 사실을 웅변하는 것입니다.

김형영의 꾀변을 믿어 유서와 같은 필적만 판단함으로써 업무일지와 동일필적이라고 감정하였다면, 업무일지는 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김형영은 역설적으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여 준 은인이라 하겠습니까.

다. 김기설군의 수첩에 대한 감정

검찰에서 전민련이 제출한 김군의 수첩에 대하여 유서필적과의 이동여부를 감정의뢰한 것은 1991년 5월 21일이었습니다(서울지검 강력 23110-012752)⁴³⁸⁾ 이 감정의뢰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접수가 생략되었으며, 감정회보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김군의 수첩글씨와 유서필적과의 이동여부는 다른 감정 의뢰사건 속에 뒤섞여져 1991년 5월 29일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감정결과가 서울지검에 발송되었습니다. 이 사건 감정이 빠르면 1일, 늦어도 대개 3-4일 이내에 완결되었음에 비추어, 감정의뢰 사항도 분명하고 감정대상도 단순한데도 감정의뢰 접수나 회보가 모두 생략된 채 다른 감정회보 속에 포함되어 발송된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과 궁금증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경위는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만, 수첩

436) 총자료집 I 책 177쪽 부터 참조.

437) 총자료집 I 책 81쪽 참조.

438) 총자료집 I 책 207쪽 참조.

435) 총자료집 I 책 117쪽부터 참조.

글씨와 유서필적의 이동여부에 관하여 이를 같은 필적이라고 할 것이나, 다른 필적이라고 할 것이나에 관하여 상당히 고심하면서, 그 결론을 유보한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수첩 절취선의 불일치 등과 같은 수첩조작 논리가 없었더라면, 그 무렵 연일 피고인을 유서대필 진범으로 단정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검찰의 태도에 비추어, 과연 유서와 김군의 수첩글씨가 같은 필적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을 것이나에 대하여 우리는 의심을 갖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에서 작성하는 문서감정 처리부(변호인 측 증거자료 중제 26의 2)(439)의 1991년 5월 29일자 감정결과 칸에는 "유서와 수첩은 상이한 필적"이라고 똑똑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결과는 동일자의 김형영의 감정서 기재내용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서분석실에 작성된 감정결과란에 수첩과 유서가 상이한 필적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당초에 양자가 상이한 필적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가 수첩조작 논리가 동원되자 감정서 기재상에는 양자가 동일 필적으로 감정소견을 변경하였으나, 문서감정 처리부에는 이를 간과하고 당초의 결론대로 그대로 기재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라. 미성년 시절 필적의 비고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정

압수물 3-1440은 김기철군의 가족이 제출한 것입니다. 김군 아버지 및 이 글씨를 검찰에 가지고 온 김군의 셋째 매형 장병호의 진술에 의하면 김군이 압수물 3-1의 책속 표지의 글씨를 쓴 때는 1981년경으로서 김군이 중학교를 막 졸업한 무렵입니다. 따라서 이 때는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글씨를 모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등 글씨가 아직 고정되기 전입니다(참고자료 김형영의 「미성년자 필적에 관한 연구」 참조.441)

한편 이 사건 유서는 1991년 4월 27일부터 5월 8일 사이에 쓰여졌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바, 압수물 3-1의 글씨를 쓴 때로부터 10여년의 시간이 경과한 때입니다. 따라서 양자의 글씨가 쓰여진 시간적 간격 및 특히 압수물 3-1의 글씨가 중학교 졸업 무렵에 쓰

여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양자는 원칙적으로 필적의 이동여부를 판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요컨대 이러한 작성시기를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자에 동일특징이 있으므로 동일필적이라고 하든가, 동일특징이 없으므로 상이한 필적이라는 식으로 단순히 동일특징 여부만을 가려 이동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지극히 정당한 추론입니다.

검찰은 처음 김형영이 유서와 위 글씨와의 이동여부에 관하여 이동여부 논란불능이라고 했을 때, 필적감정에 있어서는 같으나 다르니만 판단하므로, 이동여부 논란불능이란 결국 양자가 상이한 필적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검찰은 앞의 6개 필체를 유서필적과 대조한 결과, 선물카드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는 서로 동일하나 이들 2개와 유서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하고 속필, 필기구 등에 따른 변화 여부를 알 수 없어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나타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경우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은 감정관행상 '서로 다르다'로 해석되는 것이며 따라서 유서는 김씨의 자필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1991년 5월 23일자 조선일보 보도 등 참조.442) 그러나 그후 검찰의 이러한 주장이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 밝혀지자, 때 맞추어 김형영은 감정소견을 변경하여 양자가 상이한 필적이라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발송하였던 것입니다.

2심 법정에서 김형영은 이처럼 원칙적으로 감정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할 정도로 양자의 작성시기가 현격히 다르므로 이들에 필적감정은 무리가 아니냐는 변호인의 지적에 대하여 "그 필적은 모두 일관성이 있었습니다"라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 소위 '회소성'을 외면한 감정

김형영이 1심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필적감정이 과학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수사방법의 하나로 행해지는 이유는 각 개인의 글씨에는 개인마다 특이한 '회소성'이 발견된다는 경

440) 총자료집 I책 74쪽 참조.
441) 총자료집 III책 125쪽 참조.
442) 총자료집 III책 606쪽 참조.

험적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적감정은 각 필적에서 '회소성'이 있는 필법상의 특징을 가려냄과 동시에 이것이 대조되는 필적자료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는가를 통계적으로 찾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동일필적 또는 일정비율 이하이면 상이필적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김형영 등이 쓴 「한글의 운필형태 분류와 회소성에 대한 연구」 246면에 보고되어 있는 'ㄹ, ㄱ, ㅁ, ㅂ, ㅇ'의 종류별 형태대조표를 예로 들 때, 각 문자의 왼쪽에 있는 글자들이 회소성 없는 필적들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회소성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왼쪽에 있는 필적들(33.3%의 'ㄹ' 필적, 25%의 'ㄱ' 필적, 40.9%의 'ㅁ' 필적, 39.5%의 'ㅇ' 필적)은 1차적으로 필적감정시 고려의 대상이 되는 특징점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모양의 받침들이 비슷한 빈도로 자주 나타난다고 하여 동일필적으로 단정지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위 논문의 골자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김형영으로서는 이 사건 감정을 함에 있어 마땅히 이러한 회소성 있는 필법상의 특징을 찾아내어 이에 관한 정밀한 이동비율을 계산한 후 필적의 동일여부를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감정서에는 이처럼 성실하게 감정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고작 김형영이 임의로 몇 글자 선택하여 비슷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표시한 사진 몇 장이 참고 자료로 첨부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김기철의 유서 2매에서 손쉽게 가려낼 수 있는 필법상의 회소성 있는 특징은 'ㅎ'의 표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천히 쓰거나 빠르게 쓰거나 'ㅎ'을 쓸 경우 위 꼭지 부분이 오른쪽 아래로, 즉 'ㄱ'으로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유서 2매를 보면 이렇게 쓴 표기법과 위 꼭지 부분을 왼쪽 아래로 쓴 'ㅎ'의 표기법이 혼용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김형영도 1심 법정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러한 'ㅎ'에 관한 표기법의 혼용은 특이한 것으로서, 유서를 쓴 바로 그 사람이 유서와 똑같은 속필체로 글씨를 쓰면 유사한 비율로 'ㅎ'의 표기법이 나타날 것으로 추론됩니다.

앞서의 김형영등이 쓴 「한글의 운필형태 분류와 회

소성에 대한 연구」에서 시도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100명에게 'ㅎ'을 쓰게 하여 그 종류별 형태 대조표를 만들면 아마도 매우 적은 수의 비율로 나타나 가장 오른쪽에 위치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유서 2매에서 가장 회소성이 있는 필법상의 특징으로 보이는 'ㅎ'의 표기법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서와 비슷하게 빠르게 쓴 글씨를 대조해 보면 비교적 정확하게 필적의 이동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에 압수된 피고인의 모든 필적 특히 김형영이 속필체로 판정한 피고인의 필적에서는 단 한 번도 이처럼 'ㅎ'의 표기가 유서에서 보는 것처럼 'ㅎ'으로 쓰여진 글자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필적감정에 관한 문외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김형영은 이와 같은 유서필적에 있어서 'ㅎ' 표기법의 회소성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근거없이 변형된 필적이라고 단정짓고 있다).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김기철의 각종 필적자료에는 빠르게 쓰던 천천히 쓰던 그 빈도수는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ㅎ'에 관한 독특한 필법상의 회소성 있는 특징이 발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서에서 또 특이하게 눈에 띄는 점은 김기철의 서명부분입니다. 유서 2매 모두 김기철의 서명은 '-김기철-'로 되어 있어 이름 좌우에 '-'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서명방식도 좀처럼 보기 힘든 것으로서, '회소성' 있는 표기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이렇게 이름을 '-'로 둘러싸는 예는 거의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필적을 보면 검찰에 압수된 것이건, 변호인이 제출한 것이건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만을 쓰지 이름을 '-'로 둘러싸거나 특별히 장식적인 기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압수물 3-1, 책 속표지 글씨를 보면 "누님 우리 혜정이 잘키워 주세요" 다음에 "-삼촌 기철-"이라고 서명되어 있습니다. '삼촌 기철'이라는 이름을 둘러싸고 있는 '-'는 비록 위 글씨가 중학교를 졸업한 무렵에 쓴 것이라고는 해도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른 나이시절부터 독특한 표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져 새삼 놀라움을 감

439) 총자료집 II책 515쪽 참조.

출 수 없게 합니다. 이러한 서명과 관련한 '최소성' 있는 특징은 전교조 원주지회 방명록상의 서명(번호 인축 증거서류 중제 3호)443) 속초 동우전문대 정연석 학생분신 기자회견 자료집의 표기(번호인축 증거서류 중제 9호)444) 등에서도 발견됩니다.

이와 같은 서명에 관한 최소성 있는 특징도 이 사건 유서는 김군이 쓴 것이며, 피고인은 결백하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6. 이름뿐인 공동심의

김형영과 문서분석실 감정인 양후열은 2심법정에서 이 사건 감정은 김형영이 주임감정인으로 지정되긴 하였으나, 나머지 감정인들 모두가 공동으로 심의한 결과 아무런 의견이 없이 김형영이 감정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회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형영과 양후열은 이구동성으로 이 사건 감정을 공동심의함에 있어 김형영과 나머지 문서분석실 감정인 모두는 완전히 동일한 감정방법을 사용하여 동일한 감정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정에 소요된 시간에 관하여는 김형영은 자신이 먼저 감정을 한후 다른 사람들이 이를 토대로 감정하였기 때문에 자신에 비해 시간이 짧게 걸렸을 거라고 증언하는 반면, 양후열은 감정에 소요된 시간마저도 비슷하게 소요되었다고 엇갈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공동심의가 의미있는 것이 되기 위하여는 각자 중립적인 입장에서 독립된 감정을 별도로 시행한 후 이를 서로 비교검토해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필적감정이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볼 때, 공동심의의 방법이 이처럼 각자 독립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 것은 이론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김형영과 양후열은 김형영이 1차 감정한 결과와 자료를 토대로 하여 나머지 감정인들이 검토했다는 것이므로, 우선 이 점에 있어서 이들이 주장하는 공동심의는 감정의 객관성과 신뢰를 높여주는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양후열은 동인을 비롯하여 나머지 감정인

모두가 김형영과 똑같은 감정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동인은 정창용이 쓴 『문서감식의 연구』에 소개되어 있는 감정방법에 따라 김형영 등이 이동비율을 계산하여 필적의 이동 여부를 감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김형영이나 동인 등이 이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감정을 하지 않았음은 이 사건 감정서 원본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감정관계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고, 김형영 스스로도 구체적인 이동비율은 계산한 바는 없으며,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동일특징 비율이 70% 이상으로 떠올랐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감정에 소요된 시간에 관하여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김형영과 양후열의 증언은 서로 모순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동심의란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공동심의를 했다는 취지의 두 사람의 증언은 모두 거짓말이지만, 김형영과 나머지 감정인들 모두가 같은 시간을 써서 이 사건 감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양후열의 증언은 더욱더 사실이 아닙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분석실에서 1991년에 마련한 「문서분석실 인원조정 및 직제 개정안」(번호인축 증거서류 중제 27의 25호)에 의하면, 1990년도에 김형영 등 감정인 4인이 공동으로 심의할 경우 매일 각자가 12건씩 처리해야 했었다는 결과가 되고, 공동심의가 아니라 1인 단독으로 감정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매일 각자가 3건씩 처리해야 했었다는 통계자료입니다.

김형영은 1심 법정에서 감정 1건당 평균 1주일 가량이 소요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요시간에 관한 김형영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할 때, 매일 1인이 단독으로 3건 가량 처리한다는 것도 사실상 거의 초인적인 업무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인데, 하물며 매일 12건씩 공동심의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12건이면 하루 업무시간을 8시간 이라고 할 때, 1건당 감정처리시간이 1시간이 채 못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문서분석실 인원조정 및 직제 개정안」은 이처럼 공동심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1인이 매일 3건씩 처리하는 것 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의 범위를

443) 총자료집 II책 793쪽 참조.

444) 총자료집 II책 822쪽 참조.

훨씬 뛰어 넘고 있다는 뜻에서 개정안이 마련된 것일

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감정에 다른 업무도 똑같이 수행하면서 공동심의를 하였다거나, 공동심의 과정에서 똑같은 감정방법을 사용하였다거나, 4인의 감정 소요시간이 동일하였다는 증언은 모두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김형영과 양후열은 이처럼 논리적으로 곧 드러날 거짓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닮은 꼴이 많습니다. 아울러 각자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한 감정과 심의를 하였다면, 최소한 앞서 지적한 업무일지 관계나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책 속표지 글씨 등에 관한 감정소견의 변경에 관하여 한 사람이라도 이견이 있었을 법한데, 4인 모두 한점의 의혹도 없이 의견이 일치하였다고 증언하는 부분도 이 사건 감정에서 했다고 하는 공동심의의 실체가 어떠한지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과수 문서분석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문서의 감정요의를 받으면 주임감정원을 선정해 감정토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서면합의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이날 소환돼 조사받은 국과수 직원들은 '각 감정인이 배당받은 감정건이 많아 실제로 다른 감정인이 맡은 사건에 대한 합의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고 검찰관계자는 밝혔다."고 보도한 1992년 2월 18일자 한겨레신문 기사 등 참조)445)

7. 인간 김형영, 감정인 김형영

가. (1)문화방송 소속 홍순관 기자의 장기간에 걸친 집념어린 노력과 용기,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각 언론의 집중된 보도에 의하여 빙산의 일각이긴 하나 김형영을 중심으로 한 감정비리의 마카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무고한 피고인을 유서대필범으로 누명을 씌우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김형영은 1,035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았다는 죄로 구속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철저히 하여 허위감정 의혹을 밝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정화하라는 빗발치는 여론을 애써 외면하고, 수사를 개시한 지 수일만에 서둘러

수사를 종결한 후 뇌물은 받았으나 허위감정은 없었다고 오히려 김형영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졸속으로 이루어진 수사내용 중에도 김형영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동인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에 의하면 김형영은 대전의 건설업자인 이세용, 사설감정인 이인환 등과 여러 차례 만나 감정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음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인은 홍순관 기자의 첫 보도에 이어 다음날 모든 언론이 일제히 동인에 대한 뇌물수수 및 허위감정 의혹을 보도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지금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이 한 감정과 관련하여 그 누구로부터도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세용은 당시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공언하였습니다(1992. 2. 12. 조선일보 등 참조446) 검찰에 출두한 이세용도 "나는 결백하며 김형영씨를 알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김형영은 곧바로 취소하였지만 홍순관 기자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조차 하였습니다.

그가 이처럼 국민과 언론을 우롱하고 거짓말을 일삼는데 대해 무엇을 믿고 그런 것인가 짐작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자백한 내용을 보면 감정인이기에 앞서 인간으로서 그 도덕성이 거의 파멸된 성격의 소유자임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바, 이처럼 파렴치한 사람이 그동안 국민 개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분석실장으로 20년 이상 근무해 오면서 매년 1,000여건 가까운 감정을 해 왔다는 사실을 접하고 모골이 송연함을 느낍니다. 김형영이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 거의 무제한적으로 문서감정의 최종 결정권자로 행세해 온 사실은 오래전부터 도덕적 기반의 상실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지탄과 의구심을 받은 공권력의 현주소가 어디에 와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2)김형영이 자백한 바에 의하면, 동인은 1989년 5월경 서울 홍은동에서 이세용을 만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형영은 이세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사설감정인 이익주의 감정서를 보여주자 "이런 영

445) 총자료집 III책 428쪽 참조.

446) 총자료집 III책 373쪽 참조.

터리같은 놈이 어디 있느냐, 다음에 문제가 되더라도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중제27의 26).⁴⁴⁷⁾ 또 같은 해 8월경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이세용을 만난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이세용이 동인에게 불리하게 판정된 사실감정인 이승운이 작성한 다른 건의 필적감정서를 보여주자 역시 "이것은 엉터리 감정서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하였습니다(중제27의 26).⁴⁴⁸⁾

앞서 김형영 자신이 쓴 논문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필적감정은 선입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의깊게 하여야 합니다. 김형영이나 양후열은 동인들이 이제까지 한 감정은 실제현미경 등 과학적인 장비를 사용하여 하였으며, 감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원본에 의하여 감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세용을 만난 자리에서 김형영이 본 것은 아마도 조명관계도 양호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 감정인 두 사람이 별건으로 작성한 감정서 내용만 잠깐 보았을 것입니다. 김형영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분석실장으로 근무하는 공인의 입장에서, 아니 단순히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더 나아가 약간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처럼 자신도 잘 아는 사실감정인들이 작성한 감정서에 관하여 욕설까지 해가며 '엉터리'라고 단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신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경력이나 연배에 있어서 모두 선배일 뿐만 아니라, 감정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한 사실감정인들이 작성한 감정서에 관하여 한마디로 엉터리다, 아니다 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세용에게 두 번에 걸쳐 별건으로 작성된 사실감정인의 감정서에 관하여 척보자 마자 '엉터리'라고 단정하며, '잘해주겠다'고 한 뜻은 이세용에게 "돈을 달라, 그러면 실제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너에게 유리하게 감정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한마디로 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김형영은 이세용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받았으며, 그뒤 이세용의 의도대로 유리하게 감정되었

고, 결국 이세용은 관계된 재판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김형영은 문서의 변조여부가 쟁점이 된 형사사건에서 반대 당사자인 강태호와 양승호 쌍방으로부터 서로 다른 시기에 뇌물을 받았습니(중제27의 26). 1차적으로 김형영이 먼저 돈을 받은 강태호에게 유리하게 감정결과가 나오자 양승호는 강태호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모르는 채 김형영에게 법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실조사가 갈 텐데 잘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뇌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강태호로부터 돈을 받아 강태호에게 유리한 감정결과가 나와 있어 그에 관련된 사실조사가 결과적으로 앞서의 감정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되자(양승호의 진술에 의하면, 이에 대하여 신찬석이 김형영에게 따졌는 바 김형영이 검찰직원에 대한 교육도중 질문이 들어와 대답하는 과정에서 공표된 사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사과했다고 한다. 중제27의 22 참조),⁴⁴⁹⁾ 양승호는 다시 법원에 김형영의 감정능력을 시험하는 재감정을 신청한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틀림없이 잘 봐달라는 취지로 2회에 걸쳐 280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었습니다(중제27의 36).⁴⁵⁰⁾

이 재감정은 김형영이 검사에게 자백한 바에 의하면, 앞서 동인이 한 감정결과와 신빙성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서 김형영을 상대로 모종의 실험을 하여 동인이 과연 필적감정인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재감정 결과 김형영이 감정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앞서 강태호에게 유리하게 한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 양승호가 유리하게 되고, 반대로 재감정 결과 김형영의 감정능력이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명되면 강태호에게 유리하게 한 감정결과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재감정과 관련하여 김형영이 양승호로부터 돈을 받은 목적은 물론 양승호에게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김형영이 양승호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심 자신의 감정능력을 불신받아 가면서까지, 결

448) 총자료집 III책 315쪽 참조.

449) 총자료집 III책 291쪽 참조.

450) 총자료집 III책 343쪽 참조.

447) 총자료집 III책 438쪽 참조.

과적으로 문서분석실장의 자리를 내놓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양승호에게 유리하게 재감정을 하려고 하는 결코 마음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양승호의 부탁을 들어주는 척하고 돈을 받긴 하였으나, 그가 검사에게 진술한 재감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승호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상과 같이 강태호와 양승호간의 사건에서 김형영이 뇌물을 받은 과정은 김형영이 과연 어떤 인간형의 사람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감정인으로서의 자질 이전에, 이미 정상적인 윤리적 감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나. 김형영은 1980년 허위감정죄로 구속기소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중제28의 3, 4호)에 찍힌 오인영, 오석근, 오성근의 인영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각 동일한 인영으로 허위감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근무중이던 동료 감정인 이인환의 재감정결과 김형영의 감정결과와 동일하다고 판정되어 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형영과 이인환이 한 감정은 모두 허위감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두장의 매도증서에 찍힌 인영을 복사 카메라로 확대 촬영하여 현상한 필름(변호인측 증거서류 중제28의 5호)과 이 필름으로 인화한 사진(같은 중제28의 6호)을 대조하여 보면, 누구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위 필름 위에 A로 표시된 부분이 한 장의 매도증서에 찍힌 오인영 등 3인의 인상을 촬영한 것이고, B로 표시된 부분이 다른 장의 매도증서에 찍힌 오인영 등 3인의 인상을 촬영한 것입니다. 변호인측 중제28호의 6호는 위 필름을 그대로 인화한 사진이므로, 이 사진에서 A로 표시된 인영사진 부분은 필름에서 A로 표시된 부분에 해당하고, 이 사진에서 B로 표시된 인영사진 부분은 필름에서 B로 표시된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제 필름에서 A로 표시된 부분과 사진에서 A로 표시된 부분을 겹쳐 보면, 오인영 등 세쌍의 인영이 서로 꼭 들어맞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필름에서 B로

표시된 부분과 사진에서 B로 표시된 부분을 겹쳐 보면 역시 오인영 등 세쌍의 인영이 꼭 들어 맞습니다. 필름의 인영을 그대로 인화한 것이므로 꼭 들어 맞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김형영이 감정한대로 두 매도증서에 찍힌 오인영, 오석근, 오성근의 인영이 동일한 것이라면, 필름의 B부분 인영과 사진 A의 부분 인영이 겹쳐서 보았을 때 서로 꼭 들어 맞아야 합니다(필름의 A부분 인영과 사진 B의 부분 인영을 겹쳐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연 그렇습니까. 겹쳐 보았을 때 필름 A와 사진 A의 경우 또는 필름 B와 사진 B의 경우처럼 세쌍의 인영이 서로 꼭 들어 맞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세쌍의 인영은 맞지 않습니다! 필름 B에 있는 세쌍의 인영이 하나같이 사진 A에 있는 세쌍의 인영보다 테두리가 더 넓고, 글씨도 맞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도 확연하여 누구라도 쉽게 알아 볼 정도입니다.

사진 A만을 볼 때는 오인영, 오석근, 오성근의 이름이 또렷이 보이는데, 여기에 필름 B를 겹쳐 놓으면 서로의 인영이 맞지 아니하여 마치 안개가 끼인듯 오인영, 오석근, 오성근의 이름이 사라지고 잘 알아 볼 수 없습니다.

사진 B의 부분과 필름 A의 부분으로 바꾸어 반복해서 겹쳐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 방법이라고 함은 바로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실험자에 관계없이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명료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과학인 것입니다. 김형영의 허위감정, 그에게 면죄부를 가져다 준 이인환의 허위감정, 사이버 과학, 속임수는 이처럼 단순명쾌한 과학적 방법 앞에 여지없이 그 거짓된 정체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김형영 자신은 1980년의 허위감정 사건에서 자신이 스스로의 양심에 반하여 허위감정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양심에 따라 했더라면 그는 누구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그 결과야 어떻게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논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25년 가까이 문서감정에 있어서 그 누구도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호인이 이처럼 분명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였을 때 어떠하였습니까. 변호인이 무슨 내용의 질문을 하려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마구 허둥대며 비열하게 증언을 거부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이인환의 짜고한 허위감정에 의하여 진실이 가려진 채로 법원이 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해서 그가 한 허위감정의 거짓됨이 진실된 내용으로 바뀌어집니까. 녹는 양철위에 누런 색깔을 입힌다고 해서 금이 됩니까. 그는 우리 사회의 썩어 문드러지고 황폐한 그늘에서만 자라고, 밝은 곳에서 보다는 어둡고 축축한 곳에서 숨쉴 수 있는 기생충, 그대로 두면 마침내 우리 모두의 양심을 파멸시키고 생명까지 앗아갈 악성 종양의 상징입니다. 그는 드레퓌스사건에서, 사실은 자기가 반역의 문서를 적국에 건네준 장본인이면서도, 목숨을 걸고 이 사실을 국민에게 고발한 용감한 군인 뻬카르를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에스페라지와 같은 인물입니다.

김형영이 한 이 사건 감정을 믿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수치요, 우리의 순결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제5. 압수물 11-1, 김기설군의 수첩은 과연 조작되었는가.

1. 위 수첩이 검찰에 제출되기까지

김기설군은 1991년 5월 7일 여자친구인 홍성은에게 그가 평소에 사용하던 수첩을 건네주었습니다. 홍성은은 김군이 분신 자살한 5월 8일 오후 위 수첩을 전민련 실무자인 원순용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당시 김군의 분신소식을 듣고 연대로 달려온, 생전에 김군과 가깝게 지냈던 최경환, 한송흙은 위 수첩의 전화번호 기재 부분의 복사본을 이용하여 연락처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고인의 친지들에게 김군의 분신 소식을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위 수첩은 김군의 다른 물품들과 함께 서류봉투 속에 넣어져 전민련 실무자인 최재인의 손을 거쳐, 5월 9일부터 5월 13일 오전 무렵까지 연대내 범국민대책회의 총무국에서 총무국 실무자들에 의하여 당시 서

류함으로 사용하고 있던 종이상자속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후 위 수첩은 5월 13일 오후 종이상자 속에 봉해진 채로 명지대로 옮겨졌다가 5월 15일 다시 연대로 옮겨진 후, 계속 봉해진 상태로 5월 18일 전민련 사무실로 옮겨졌습니다.

5월 18일 피고인에 대한 유서대필혐의가 검찰에 의하여 언론에 보도되자, 전민련측은 김기설의 가장 중요한 필적자료로서 위 수첩을 생각해 내었고, 5월 19일 이를 찾아 검찰에 그대로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검찰은 김군의 수첩이 검찰에 제출되자 마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첩에 변조된 흔적이 있다는 등의 발표를 하였으며, 급기야는 김형영의 감정결과를 이용하여 수첩의 절취선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첩의 절취선에 관한 김형영의 감정결과가 허위인 사실은 이미 1심 변론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김형영의 동료 감정인인 양후열은 2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인 역시 현미경 등을 사용하여 조사해 본바 수첩 절취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얻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인 스스로 자인하는 바와 같이, 동인은 김군 수첩의 본래 형태도 모르고, 김군 수첩과 같은 해에 만들어진, 떨어지거나 앞뒤 면수가 뒤바뀌거나 파손된 부분이 없이 완전하게 제본된 전민련 수첩과 김군의 수첩을 대조해 본 일도 없습니다. 그는 김군의 수첩이 통상의 다른 전민련 수첩과 제본 방식이 동일하다고 가정해도, 떨어지고 남은 수첩의 잔류 부분 매수가 전체적으로 최소한 7매 이상, 전화번호 기재부분만 적어도 4매 이상인데도 현미경으로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보았다는 것인지 "잔류부분은 3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군 수첩의 전화번 호기재 부분을 포함하여 떨어지기 이전의 총매수가 과연 몇 매인지, 떨어진 부분과 완전하게 남아 있는 부분과의 앞뒤 순서, 떨어진 부분 자체의 순서, 제본되기 이전의 수첩 1매의 가로길기와 세로길기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제본의 정도 등 언뜻 상식적으로 이견 수첩의 절취선 불일치 여부에 관하여 꼭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아는 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첩의 절취선 여부에 관한 양후열의 증언은 오히려 이에 대한 감정이 처음부터 합리성

을 상실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됩니다.

한편 사용된 필기구에 관하여, 홍성은은 자기의 기억으로는 수첩이 검은색 볼펜 또는 수성펜으로 쓰여졌는데, 압수물 11-1은 연필, 청색필기구, 녹색하이테크, 분홍색 형광펜 등으로 쓰여 있는 바, 이런 이유로 김군의 본래 수첩인지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군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김군 자신의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만일 수첩이 조작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김군의 수첩내용을 다른 수첩에 그대로 옮겨 썼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가능한 한 원본에 맞게 쓰려고 했을 것입니다. 검은색 볼펜이나 수성펜은 누구나 소지하고 있고, 흔히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용이하게 구할 수 있는 필기구를 마다하고 굳이 청색, 녹색, 분홍색을 써서 수첩을 옮겨 기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압수물 11-1에서 보이는 김군 자신의 일정 메모가 흔히 사용되지 않는 다채로운 색깔의 필기구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홍성은의 기억이 잘못되었다는 점에서 나아가 압수물 11-1은 김군의 본래 수첩에 틀림없다는 점을 뚜렷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2. 변호인측 증거서류 중 제 20의 1, 2호, 수첩사본

중제 20의 1, 2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기설군이 분신한 당일 김군의 수첩 전화번호 기재부분 일부를 복사한 것입니다. 성남지역에서 민주화운동을 같이 하면서 김군과 가깝게 지냈던 이효경과 최경환은 위 복사본을 1부씩 가지고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과 김군과의 관계 및 연락상황을 확인해 나갔습니다. 이효경은 특히 영안실에서 김군과 중학교 동창으로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한송흙 및 성남에서 김군과 민주화운동을 같이 한 권범재와 서로 위 복사본을 보며, 김군의 수첩에 기재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였습니다. 권범재는 이 확인과정에서 위 복사본의 사람들 이름 옆에 예컨대 대유(대유공전의 약자), 파주 친구 등으로 직접 쓴 사실을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습니다. 동인은 검찰이 그의 증언의 신빙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기습적으로 제시한 변호인측 증거서류 중제 7

호(상황일지)에 대하여, 당시 법정에서 처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그러나 놀라우리만치 거의 정확하게 그 속에 쓰여있는 김군의 글씨를 가려내었습니다. 위 두 복사본, 이효경, 최경환, 한송흙, 권범재의 증언은 압수물 11-1이 홍성은이 김군으로부터 5월 7일 밤에 받은 김군의 수첩, 바로 그것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3. 이지혜의 증언

이지혜가 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1992년 3월 26일 오후 그 누구도 몰랐던 김군의 수첩에 관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5월 5일 김군의 분신도도를 처음 듣고 충격과 당황함에 어쩔 줄 모르며 5월 6일까지 김군과 같이 있다가 5월 7일밤 연대내의 범국민대책회의에 김군의 분신도도를 알린 이지혜의 증언이 있던 날, 변호인은 동인이 김군의 수첩을 본 일이 있다는 증언에 따라 즉시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압수물 11-1을 동인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압수물 11-1을 뒤적이던 이지혜는 마침내 압수물 11-1이 김군의 것임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당시의 변호인의 질문내용과 동인의 답변내용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문 : 증인은 5월 5일 그러니까 그 전날 씨클룸에서 김기설군이 수첩에 적는 걸 보았다면서요?

답 : 예.

문 : 걸은 어떻게습니까! 전체 모양이. 이것은 나중에 떨어졌지만은. 이 수첩, '조국은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 이런 수첩, 모르겠어요?

답 :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문 : 확실히 이 수첩이 맞습니까?

답 : 맞습니다.

문 : (수첩의 5월 6일에서 12일 사이의 일정란을 증인에게 보여주면서) 이 부분이 씨클룸에서 기재한 부분입니까?

답 : '국영'이라고 썼다가 지우고, 국영이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11일날로 옮겨졌거든요.

문 : '국영'이라고 썼다가 이렇게 지운 것 맞습니까?

답 : 예. 국영이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용희'하고 바꿨습니다.

문 : 5월 앞부분에 5월 6일부터 12일까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문졌습니다. 7일날, 이 수첩을 보면 7일날 송국영과 약속했다가, 그래서 '국영'이라고 7일날 이 란에는 국영이 이름을 적었는데, 송국영이가 7일날은 시간이 없다고 해서 7일날란에 '국영'이란 이름을 펜으로 지우고 11일날로 약속을 해서 11일날에 국영이 이름을 적어 넣었다?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그리고 7일날은 용희를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이렇게 적었다는 것이지요.

답 : 예. 바꾸어서 적었습니다.

압수물 11-1의 수첩에서 5월 7일(화)의 일정란 여백에 네모난 모양으로 빗금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경위로 거기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지 이지혜의 그날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기까지는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은 드러나고 만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확인하는 눈부신 순간이었습니다.

4. 위 수첩에 대한 감정과정의 의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군의 수첩글씨와 유서필적과의 이동여부에 대한 감정의뢰가 최초로 있었던 때는 1991년 5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의뢰에 대한 접수는 생략된 채, 감정회보도 없다가 5월 29일에 이르러 뒤늦게 다른 감정의뢰 내용과 함께 몽둥그러, 수첩의 글씨와 유서의 글씨와는 동일필적이라는 취지로 회보하고 있습니다.

접수절차가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데 김형영이 임의로 생략한 점, 5월 21일자 의뢰에 대한 감정회보가 없는 점, 다른 감정의 경우에는 늦어도 3-4일 내에는 감정결과를 통보하였으면서도, 5월 29에야 회보를 한 점,

수첩절취선에 관하여 5월 24일 감정의뢰 하였는데 의뢰를 받기 전인, 즉 수첩의 글씨에 대하여 감정의뢰한 5월 21일부터 필적감정의뢰는 접수도 생략된 상태에서 수첩의 절취선 일치 여부에 대한 감정을 하였다고 하는 김형영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김형영은 김군의 수첩글씨는 바로 유서글씨와 동일한 필적이므로, 수첩이 조작되었다는 부분을 감정결과로 공표할 때까지는 수첩글씨와 유서필적과의 이동여부를 유보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김형영이 수첩 절취선 불일치에 관한 감정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유서와 수첩글씨는 상이필적 또는 적당히 이유를 달아 이동여부는 단불능으로 처리했을지 모릅니다.

제6. 무죄의 증거들

1. 머리말

피고인은 김기설군의 자살 결의를 알지도 못하였고 유서를 써줄 시간적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점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찰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김형영의 감정서와 간접 증거인 홍성은의 일부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유서를 김기설 본인이 썼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앞서 이 사건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이 김군의 분신자살 결의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유서를 써준 일시·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검찰이 무능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일본인 '오오니시'의 감정서

일본인 오오니시는 수십년동안 일본 동경제판소의 지정된 감정인으로서 전문적인 필적감정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입니다.

변호인이 1심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에서 보듯이, 동인은 필적감정 업무에 대한 공로로 일본 경찰총감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바 있으며, 성실하게 감정업

무를 수행해 온 사람입니다.

오오니시의 감정서(변호인이 제출 증제19-1, 2)451)를 보면, 앞서 『문서감식의 연구』에 소개된 보편적인 방법 거의 그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설득력 있게 감정결과에 이르게 된 논리적 추론과정을 정밀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김형영이 작성한 감정서와 비교해 볼 때 우리 나라는 언제 이처럼 성실하게 수행된 감정서를 접하게 될 지 안타까운 느낌마저 듭니다.

그는 일본에서 하여온 다른 감정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필적감정방법을 사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비록 그가 한글을 잘 몰라 통계적인 접근을 함에 있어 일부 글자수의 계산 등에 있어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감정서에 나타난 추론과정은 똑같은 대상에 대하여 작성된 김형영의 이견 감정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것입니다. 오오니시는 그의 감정서와 별도로, 증언과정에서 김형영이 이 사건 감정서에 첨부한 사진에서 동일특징 부분으로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상세히 지적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더라도 김형영이 한 이 사건 감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 유서의 필체와 너무나 흡사한 김기설군의 필적들

가. 증제 1호, 방명록(성남터사랑 청년학우회)452)

1989. 10. 3 김기설군은 성남터사랑 청년회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방명록에 "자주·민주·통일의 기치를 들고 솟아라 터사랑 청년 학우회여. 민주해방의 함성으로"라는 축하의 말을 쓴 후 "(성남 민청련 교선부장 한정덕)"이라고 서명하였습니다. 이 글씨에서 보는 'ㅎ'의 표기법은 유서에서 보이는 'ㅎ'의 표기법과 같으며, 전체적으로 필체의 빠르기가 유서필체와 또박 또박 쓴 이력서 필체와의 중간쯤으로 보이는 바, 틀림 없는 김군의 글씨입니다(김시중, 김병희, 전현철의 진술 참조).

나. 증제 3호, 방명록(전교조 원주지회)453)

451) 자료집 I 책 575쪽 참조.

증제 3호 방명록은 1991. 3. 2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주지회 사무실 개소식에서 참석한 사람들이 서명한 것입니다.

당시 김군은 원주민주시민회의 사무국장인 홍중희의 권유로 개소식에 참석하여 방명록에 "이땅의 자주·민주·통일의 최선봉이 되시길 기원합니다"라는 축하의 글을 쓴 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사회국 부장 김기설"이라고 서명하였습니다. 독특한 'ㅎ'의 표기법을 포함하여 이 글씨는 누가 보기에든 유서필적과 동일한 글씨입니다. 김형영에게 뇌물을 준 이인환도 한겨레신문 및 시사저널사와의 인터뷰에서 위 방명록 글씨가 유서필적과 가장 흡사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홍중희, 박찬수, 락대순의 진술 참조).

다. 증제 5호, 메모(승의여전 학생회 간부 제출)454)

증제 5호는 속초 동우전문대 사건과 관련하여 모금 활동을 하고 있던 승의여전 학생회 간부들에게 김군이 1991. 4. 18. 전민련 사무실에서 모금이 용이한 집회일정 등을 써준 메모입니다. 이 메모의 필적 역시 어느 글씨의 특징이 어떻다는 등의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서필적과 너무나 흡사한 글씨입니다(이보평, 최수미, 민수진, 서준식의 진술 참조).

라. 증제 6호, 청구서455)

증제 6호는 김군이 전민련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1991. 3. 30. 총무국 실무자인 박선옥에게 출장비 25,000원을 청구하면서 작성한 것으로서, 박선옥의 지출확인 싸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글씨 또한 누가 보더라도 유서의 필적과 매우 흡사한 글씨입니다(중인 이동진의 진술 참조).

마. 증제 8호, 노트456)

증제 8호는 피고인이 1991. 6. 24. 자진출두한 후 7. 초순경 우연히 김군의 유품 중에서 발견한 것으로서, 생전에 김군이 쓰던 노트입니다. 노트 2면에 김군 고

452) 총자료집 II책 791쪽 참조.

453) 총자료집 II책 793쪽 참조.

454) 총자료집 II책 798쪽 참조.

455) 총자료집 II책 799쪽 참조.

456) 총자료집 II책 811쪽 참조.

유의 싸인이 있으며, 앞쪽에는 홍성인이 녹음테이프 내용을 듣고 쓴 부분이 있는데 일부는 노트에 붙은 채로, 일부는 떨어져서 있고, 노트 뒷쪽에는 김군 자신이 속초 동우전문대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을 메모형식으로 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발견했을 당시 전민련 인권위원장인 서준식이 수정 등의 가필을 한 김기설의 글씨 일부가 떨어진 채로 끼워 있었습니다.

이 노트가 김기설이 생전에 사용하던 것임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홍성인이 노트 앞쪽의 글씨가 자기가 쓴 것임을 확인함으로써 분명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서준식은 노트속에 떨어진 채로 있는 부분에 동인이 수정한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피고인이 자진 출두한 직후 구속되어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글씨 및 김군의 글씨를 확인하였으며, 당시 동인이 김군에게 속초 동우전문대사건과 관련된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풀어 쓰게 한 경위 및 김군이 쓴 위에 동인이 다시 수정을 하게 된 경위 등을 1심 법정에서 생생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증제 8호증 증 "전체육 학생의 비민주적인 ..."이라고 시작되는 부분, "-김용갑 학생 의문사"라고 시작되는 부분, "4) 학내폭력, 학내비리 ..."로 시작되는 부분 및 서준식이 수정한 부분 등은 누구라도 쉽게 김군이 쓴 것으로 가려낼 수 있는 글씨들입니다.

바. 증제 9호, 대봉투⁴⁵⁷⁾

증제 9호, 대봉투는 김기설이 속초 동우전문대 사건과 관련하여 전민련에서 1991. 4. 6경 기자회견을 한후 관련 자료로 보관하였던 봉투입니다. 당시 김군은 서준식의 지시로 이 봉투에 관련자료를 넣어 보관하면서 "-속초 동우전문대 정연석 학생 분신 기자회견 자료집-"이라고 서준식이 보는 앞에서 직접 썼습니다.

이 글씨가 유서필적과 동일하게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증인 서준식의 진술 참조).

사. 증제 10호, 방명록(수원 민청련)⁴⁵⁸⁾

1990. 1. 13. 수원에 소재하는 아주대학교 강당에서

457) 총자료집 II책 822쪽 참조.

수원민주화운동연합 창립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김기설군은 성남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의 회원으로서 위 창립대회에 참석하여 방명록에 서명하였습니다. 증제 10호는 당시의 방명록으로서, 여기에 쓴 "동티오는 해방할 부어잡고 어께걸고 함께 가자 너 수원 민청련 이어!! 창립을 축하드립니다(성남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회원일동)"라는 김군의 글씨는 유서필적에서 보는 'ㅎ'표기의 특징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강호남, 김희택의 진술 참조).

아. 증제 11호, 책표지⁴⁵⁹⁾

증제 11호는 "한국사회와 자본론 강의"라는 책을 쓴 중이위에 그때그때 김기설군이 나서 또는 메모를 기재한 것으로서 유서필적과 동일한 것입니다. 동 메모중 "원석 wink 10:30 약속", "원석 전화(수요일)"라고 기재된 부분은 특히 김군이 돈을 꾸 한원석과의 약속을 기재한 것으로서, 김군 수첩(입수물 11-1)의 일정메모란중 4 25란⁴⁶⁰⁾의 아래부분에 "원석 삼백"이라고 기재된 부분 및 증제 23-1호(각서)⁴⁶¹⁾와 함께 모두 김군이 직접 쓴 것임을 보여주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들입니다(김병희의 진술 참조).

자. 증제 13-1, 14-1, 각 명함⁴⁶²⁾

증제 13-1과 14-1은 김군이 생전에 직접 써서 성남에서 알고 지내던 박동희 등에게 준 명함으로써, 글자수는 얼마 되지 않으나 유서에서 나타난 희소성 있는 김군 글씨의 특징을 용이하게 식별하게 해주고 있습니다(박동희, 고상만의 진술 참조).

차. 증제 23-1호, 각서(한원석 제출)

증제 23-1호, 각서는 1991. 2. 13. 김기설이 돈을 꾸어 쓴 바 있는 한원석에게 2. 18까지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동인이 보는 앞에서 써준 것입니다.

서준식은 한원석으로부터 1991. 6 초순경 명동성당에서 이 각서를 제시받고 그중 일부를 대신 갚아주

458) 총자료집 II책 823쪽 참조.
459) 총자료집 II책 824쪽 참조.
460) 총자료집 I책 728쪽 참조.
461) 총자료집 II책 860쪽 참조.
462) 총자료집 II책 817쪽 참조.

까지 했으나, 이 각서가 김군의 명예에 관계된 것으로 생각하여 동인이 구속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할 때 까지 공개하지 않다가 1991. 11. 중순경에 이르러 1심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이 각서는 증제 8호의 김군 노트 2면에 있는 독특한 싸인까지 쓰여져 있는 것으로서, 언뜻보기에 유서필적과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흡사한 글씨입니다(증인 한원석, 서준식의 진술 참조).

카. 정자체로 쓴 필적: 증제 2호, 7호, 12호

증제 2호(이력서)⁴⁶³⁾ 7호(상황일지)⁴⁶⁴⁾ 12호(파일표지)⁴⁶⁵⁾의 김군 글씨들은 또박또박 쓴 것들입니다. 이 글씨들의 필적은 언뜻보기에 검찰이 제출한 김기설의 소위 정자체 필적들과 매우 닮아 있고, 유서필적과 과연 같은 사람이 쓴 것인지 쉽사리 판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증제 7호의 상황일지에 있는 김군의 글씨, 증제 11호(책표지)의 한쪽편에 쓰여져 있는 "(토요일 퇴근후(시청앞) 오후 7시 수련)" 등의 글씨, 그리고 증제 1호(방명록), 증제 10호(방명록)⁴⁶⁶⁾의 글씨들을 주의깊게 살펴 보면 비록 정자체로 또박또박 썼더라도 이 글씨들은 모두 김군이 쓴 것들이며, 유서필적과 동일한 것들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김병희, 정일부, 이동진의 진술 참조).

4. 유서필적과는 확실히 다른 피고인의 필적

가. 증제 15호의 1-10, 각 우편봉합엽서⁴⁶⁷⁾

이 엽서들은 피고인이 1986년부터 1987년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교도소의 검열을 받고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이 글씨들은 예컨대 글씨가 전체적으로 오른쪽 아래로 기울어져 있고, 글자 하나하나가 유서글씨와는 달리 다소 가늘게 보이는 등 일일이 상이한 점을 열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서의 필적과는 판이하게 다른 필적입니다. 교도소의 검열인과 우체국의 소인이 선명하게 찍힌 이 엽서의 글씨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463) 총자료집 II책 792쪽 참조.

나. 증제 16호의 1, 2, 각 카드⁴⁶⁸⁾

이 카드들 또한 피고인이 마산 교도소에서 동생들에게 보낸 것들입니다. 이 카드의 글씨들 또한 앞서의 엽서들 글씨와 똑같은 필적입니다. 이 글씨들 역시 유서의 글씨와는 너무나 다른 필적입니다.

다. 증제 17호, 보고서⁴⁶⁹⁾

이 보고서는 피고인이 1988. 3. 16. 민중의당 성동지구 선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작성한 것입니다. 한겨레신문사는 이 보고서 원본을 입수하여 사실감정인 이인환에게 의뢰하여 유서필적과의 이동여부에 관하여 필적감정을 의뢰한 후 변호인단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글씨의 모양으로 보아 속필체로 쓰여진 것인데, 전체적인 글씨의 방향, 'ㅎ'의 표기법 등에 관하여 필적감정의 문의한이라고 하더라도 유서필적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라. 증제 18호, 책(장미의 이름)⁴⁷⁰⁾

이 책은 1990. 7.경 피고인이 장래를 약속한 이영미에게 생일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 책 뒷표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분은 피고인이 쓴 것인 바, 이 글씨 모양이나 담겨져 있는 정서는 유서의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마. 증제 25호, 편지(추기경에게 보낸 편지)⁴⁷¹⁾

증제 25호는 피고인이 명동성당에 있을 당시인 1991. 5. 29. 당시 자신의 심경을 적어 추기경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이 편지를 읽고 추기경은 그때부터 피고인의 결백을 믿게 되었으며, 추기경이 위 편지를 읽을 당시 동석하였던 경감실 신부 또한 피고인의 무고함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464) 총자료집 II책 800쪽 참조.
465) 총자료집 II책 826쪽 참조.
466) 총자료집 II책 823쪽 참조.
467) 총자료집 II책 832쪽 참조.
468) 총자료집 II책 850쪽 참조.
469) 총자료집 II책 854쪽 참조.
470) 총자료집 II책 855쪽 참조.
471) 총자료집 I책 340쪽 참조.

이 무렵부터 특히 천주교측은 피고인의 인권옹호 차원에서 피고인이 자진출두할 때까지 수사기관의 강제 연행을 제한하며, 물신양면으로 피고인의 결백을 밝히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이 편지의 글씨와 내용, 추기경에의 전달과정 및 그 후일담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양심의 소리를 그대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5. 한송흙의 증언

생전에 김기철이 가장 가깝게 지냈던 남자친구는 한송흙이었습니다. 동인은 누구보다도 김군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우정어린 서신교환이 있었습니다. 한송흙은 김군의 분신 자살 소식을 TV에서 보면서 동시에 방영된 이 사건 유서를 보고 김군이 쓴 유서임을 곧 알았으며, 영안실에서 김군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김군의 여자친구인 홍성은에게 이 사건 유서가 김군이 쓴 유서에 틀림없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한송흙의 확인에 대하여 당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송흙은 2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와 같은 전후사정을 상세하게 증언하였습니다.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안혜정도 한송흙이 증언한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 유서가 김군이 쓴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한송흙의 증언은 이 사건 검찰의 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6. 기타 정황증거

가. 이상에서 지금까지 이 법정에 현출된 모든 증거를 세심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도대체 김군이 어떤 동기에서 피고인에게 유서를 대신 써달라고 하였는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김군이 피고인보다 글씨를 잘 못써서입니까. 상식적으로 그럴 수 없거니와, 검찰이 제출한 필적증거나 변호인이 제출한 필적증거는 명백히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군의 문장력이 피고인보다 못하여서 그렇습니까.

문장력 때문에 유서를 대신 써준다는 발상 자체가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 동 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이 법정에서 현출된 증거자료 어디에도 피고인의 문장력이 김군의 그것보다 낫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압수물 13-2(안혜정에게 보낸 편지),⁴⁷²⁾ 변호인측 증거자료 증제 4의 1, 2호(대유공전 원고),⁴⁷³⁾ 증제 24호(기자회견 자료집)⁴⁷⁴⁾를 보면 김군의 문장력이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그렇다면 공소장에 기재된 바대로 김군이 분신 이후의 일이 염려되어 피고인에게 장례 일체를 맡기면서 결사하여 유서도 대신 쓰게 한 것입니까.

김군은 분신 이후의 뒷처리에 관해서 피고인에게 결코 이를 위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1991. 5. 5. 처음 이지혜 등에게 분신의도를 비친 사실, 이지혜와 함께 사진을 찍은 사실, 주민등록증을 이지혜에게 준 사실, 그 자리에서 수첩도 함께 주려다가 5. 7. 밤 홍성은에게 준 사실, 이지혜와 홍성은에게 수첩에 기재된 사람들의 연락처를 동그라미 등으로 표시해주며 사람마다 차등을 두어 연락관계를 부탁한 사실, 자기에게 일이 생기면 자기집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없다면 홍성은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가리켜 주도록 부탁한 사실 등을 보면 이 사건 유서는 김군 본인이 쓴 것임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군의 행동은 분신 이후의 뒷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긴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김군의 행적은 분신결의는 하였으나 아직 주변정리가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사후준비를 해 나갔던 정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김군은 다른 사람에게 유서를 대신 쓰게 하지 않았 습니다. 더더욱 김군의 분신 전까지 김군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유서를 쓰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서를 남에게 대신 써달라고 부탁하고, 또 유서를 대신 써준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는

472) 총자료집 I 책 232쪽 참조.
473) 총자료집 II 책 794쪽 참조.
474) 필적 제출자료에 누락되어 있음.

일입니다.

제7. 변호인이 검찰의 필적감정신청에 반대한 이유

1. 검찰은 제1심에서 그리고 당심에서도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김기철의 필적들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면서 감정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감정의 방법에 있어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기철군의 필적 15종이 한 사람의 필적인지의 여부를 먼저 감정하고 그 다음으로 기철군의 필적임이 명백한 그의 가족이 제출한 압제13-1, 2(기철이 군복무 중 고향 여자친구 안혜정에게 보낸 카드 및 편지)와 위 15종의 필적이 동일한 필적인지의 여부를 감정한 다음 기철군의 필적으로 밝혀진 것들과 유서의 동일필적 여부를 감정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검찰은, 위 15종의 필적이 육안으로 보아도 동일인의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 변호인이 어렵게 수집하여 제출한 기철군의 필적들에 대한 감정은 검찰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변호인측에서 먼저 감정신청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 위 필적들이 유서와 동일필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공식적인 감정결과를 받아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측이 기철군의 필적이라고 제출한 것들을 검찰은 한번도 그대로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유서와 동일필적이면 조작되었다, 변조되었다 하면서 '유서대필'이라는 본래의 시나리오에 맞추어 수사를 진행하여 왔고, 국과수 문서분석실은,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만은, 검찰의 하수인역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며 지금은 그것이 보다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3. 따라서 국과수에 다시 감정을 의뢰하는 일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던져주는 격이고, 국과수 외에는 공

식적인 감정기관이 없다고 하여 사설감정인에게 의뢰할 수도 없을 것이며(그 이유는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외국기관에 의뢰한다는 것도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굳이 감정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너무나 명백한 객관적 사실들만으로 그 판단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호인은 감정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또 이를 반대한 것입니다.

4. 더구나 이 사건의 핵심은 유서를 피고인이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를 가리는 것이므로 감정을 하더라도 피고인의 필적임이 명백한 옥중편지(증제 15-1 내지 10, 16-1 내지 2)나 피고인이 추기경에게 보낸 편지(증제 25호)가 유서와 동일필적인지의 여부를 감정하면 족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필적감정의 정도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와같은 정도를 외면하고 위 15종의 필적이 동일인의 것인지 의심스럽다느니, 정자체여서 일견하여 흘림체인 유서와는 다르게 보이는 안혜정에게 보낸 편지와 감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주장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굳이 필적감정을 하여야만 진실이 밝혀질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제8. 맺음말

지난해 8. 28. 제1심 첫 공판이 시작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총 16회의 공판과 두 차례의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변호인들은 갈수록 쌓이는 분노를 달래느라고 무척이나 애를 먹었습니다.

진실이 거기에 가려짐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믿어주지 않는 재판부에 분노하였으며 '확신은 없지만 유죄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을 밝힌다는, 진실은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고야 만다는 신념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수집한 자료들을 '믿을 수 없다'며 변호인을 의심하는가

하면 '이 따위...'의 망언까지 서슴치 않던 검찰관의 오만함과 방자함에 대하여는 심한 분노와 더불어 엄중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 차례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는 것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1992. 4. 9.

변호인단을 대표하여

- 변호사 유 현 석
- 변호사 김 창 국
- 변호사 박 연 철
- 변호사 이 석 태

서울고등법원 제2 형사부 귀 중

☐자료 다5-8 (공판기록 3705~3711)

서울고등검찰청

1992. 4. 9.

수 신 :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2부
 발 신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신 상 규
 제 목 : 참고자료 제출

귀원 92노 401호 피고인 강기훈에 대한 자살 방조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 원광전 화국장 작성의 전화가입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끝.

* 사실조회 회보서 <생략> (공판기록 3706)

* 전화가입원부 사본 <생략> (공판기록 3707~3711)

☐자료 다5-9 (공판기록 별책)

참 고 자 료 제 출

사 건 92나 401 자살방조 등
피고인 강 기 훈

1992. 4. 9.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 창 국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좌 하

- 자료목록 -

1. 문서감식의 연구, 정창용, 69. 11. 20, 제1편 필적감정 부분만 복사(475)
- 2-1. 논 문, 김형영의, 1985, 「한글의 운필형태분류와 회소성에 대한 연구」, 476)
- 2-2. 논 문, 김형영의, 1987, 「아라비아숫자의 운필형태와 개인별특성에 대한 연구」, 477)

475) 총자료집 III책 3쪽 이하 참조.

2-3. 논 문, 김형영의, 1990, 「미성년자 필적에 관한 연구」, 478)

3. 예규집, 국과수, 89. 8, 국과수의 훈령·예규집.

4. 논 문, 吉田 의, 83. 8, 「화상처리를 이용한 필자식별에 관한 기초적 연구」.

5. 판 결, 이진성, 92. 2. 11.,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배척 무죄 선고한 제1심 판결.

6. 판 결, 대법원, 91. 11. 12., 증거법의 원칙에 관한 판례.

7-1. 감정서, 이익주, 89. 4. 6., 이세용이 김형영에게 청탁한 건(중제27의 3 감정서, 중제27의 18 공소장 각 참조)과 같은 문서를 이익주에 의뢰하였으나 불리한 결론이 나온 감정서.

7-2. 증인조서, 대전지법, 90. 5. 28., 위 감정에 대한 이익주의 증언.

7-3. 증인조서, 형사지법, 92. 2. 27., 이세용 경리직원 양순화의 '이세용이 조병길 글씨를 흉내내어 써달라 시켜 써주었다'는 취지의 증언.

8. 책 자, 공대위, 92. 2.,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함세웅 신부)가 만든 책자(479)

9. 편 지, 吉村교수, 91. 9. 16., 컴퓨터를 이용한 필적 감정방법을 개발한 名古屋大 요시무라교수에게 재일동포 김은택이 이진 유서 등에 관한 감정의뢰를 한데 대한 회답 편지.

10. 신문기사, 91. 5. 8~92. 2. 17. 사이 각 일간신문 기사 발췌(45매)480)

☐자료 다5-10 (공판기록 별책)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사무분장규정

(제정 1979. 6. 1. 소훈령 제 1호)

개정 1980. 4. 1. 소훈령 제 3호

1982. 1.19. 소훈령 제28호

476) 총자료집 III책 115쪽 참조.

477) 총자료집 III책 121쪽 참조.

478) 총자료집 III책 125쪽 참조.

479) 총자료집 III책 501쪽 참조.

480) 총자료집 III책 537쪽 참조.

- 1982. 4. 1. 소훈령 제29호
- 1982. 5.11. 소훈령 제34호
- 1984. 6.15. 소훈령 제41호
- 1985. 4.15. 소훈령 제42호
- 1987. 5.23. 소훈령 제43호
- 제정 1987. 12.19. 내무부훈령 제920호
- 개정 1989. 8. 7. 내무부훈령 제981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각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관련업무의 처리) ① 2 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임무는 그 임무의 성질상 비중이 따라 처리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과중 직책상 먼저 규정된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 4 조 (공무원 배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각과에 대한 공무원의 배치 인원은 「별표」와 같다.

제 5 조 (서무과) 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업무
 - 가. 관인관수 및 보안업무
 - 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다. 기획·심사분서·문서수발·통제 등에 관한 사항
 - 라.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마. 감정연구업무의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과내 서무 및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 10 조 (이화학3과) 이화학3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물리 분석업무
 - 가. 공기후, 금속파괴 및 말소 각인의 감정에 관한 사항

나. 지질, 섬유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다. 기계 및 구조물에 관한 사항

라. 전기화재에 관련된 증거물의 감정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관련 물리학적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바.

2. 특수 물리분석 업무

가. 페인트, 고무, 안료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나. 타일, 유리 및 광물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다. 부정유류 및 윤활유류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라. 인화물질 연소잔유물 및 탄화물의 감정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관련 물리학적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문서분석 업무

가. 필적의 감정에 관한 사항

나. 인영의 감정에 관한 사항

다. 인쇄물의 감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변조, 말소문서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성문분석 업무

가. 음성의 분석에 관한 업무

나. 기기음 및 주변음의 분석에 관한 업무

다. 기타 음향음성학적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 11 조 (이화학4과)

1. 마약분석 업무

....

2. 생약분석 업무

....

3. 특물분석 업무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료 다5-11 (공판기록 편제)

[9] 1992년 3월 5일 (木曜日)

法 律 新 聞

제 2104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법 제정 부칙령

(제 144호, 1992년 3월 5일 공포)

제 1 조 (목적) 이 부칙령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례) 이 부칙령의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부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관련업무의 처리) ① 2 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임무는 그 임무의 성질상 비중이 따라 처리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과중 직책상 먼저 규정된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 4 조 (공무원 배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각과에 대한 공무원의 배치 인원은 「별표」와 같다.

제 5 조 (서무과) 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업무

가. 관인관수 및 보안업무

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다. 기획·심사분서·문서수발·통제 등에 관한 사항

라.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마. 감정연구업무의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바. 기타 과내 서무 및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 10 조 (이화학3과) 이화학3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물리 분석업무

가. 공기후, 금속파괴 및 말소 각인의 감정에 관한 사항

나. 지질, 섬유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다. 기계 및 구조물에 관한 사항

라. 전기화재에 관련된 증거물의 감정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관련 물리학적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바.

2. 특수 물리분석 업무

가. 페인트, 고무, 안료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나. 타일, 유리 및 광물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다. 부정유류 및 윤활유류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라. 인화물질 연소잔유물 및 탄화물의 감정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관련 물리학적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문서분석 업무

가. 필적의 감정에 관한 사항

나. 인영의 감정에 관한 사항

다. 인쇄물의 감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변조, 말소문서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성문분석 업무

가. 음성의 분석에 관한 업무

나. 기기음 및 주변음의 분석에 관한 업무

다. 기타 음향음성학적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 11 조 (이화학4과)

1. 마약분석 업무

....

2. 생약분석 업무

....

3. 특물분석 업무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법 제정 부칙령

(제 144호, 1992년 3월 5일 공포)

제 1 조 (목적) 이 부칙령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례) 이 부칙령의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부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관련업무의 처리) ① 2 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임무는 그 임무의 성질상 비중이 따라 처리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과중 직책상 먼저 규정된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 4 조 (공무원 배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각과에 대한 공무원의 배치 인원은 「별표」와 같다.

제 5 조 (서무과) 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업무

가. 관인관수 및 보안업무

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다. 기획·심사분서·문서수발·통제 등에 관한 사항

라.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마. 감정연구업무의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바. 기타 과내 서무 및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 10 조 (이화학3과) 이화학3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물리 분석업무

가. 공기후, 금속파괴 및 말소 각인의 감정에 관한 사항

나. 지질, 섬유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다. 기계 및 구조물에 관한 사항

라. 전기화재에 관련된 증거물의 감정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관련 물리학적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바.

2. 특수 물리분석 업무

가. 페인트, 고무, 안료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나. 타일, 유리 및 광물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다. 부정유류 및 윤활유류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라. 인화물질 연소잔유물 및 탄화물의 감정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관련 물리학적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문서분석 업무

가. 필적의 감정에 관한 사항

나. 인영의 감정에 관한 사항

다. 인쇄물의 감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변조, 말소문서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성문분석 업무

가. 음성의 분석에 관한 업무

나. 기기음 및 주변음의 분석에 관한 업무

다. 기타 음향음성학적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 11 조 (이화학4과)

1. 마약분석 업무

....

2. 생약분석 업무

....

3. 특물분석 업무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료 다-5-12 (공판기록 별책)

(158) 제 911 호

법원공보

1992년 1월 1일(수요일)

호로 제정된 수질환경보전법 부칙 제15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적용) 제66조 제1호, 제16조의2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 즉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제15조의2 제1항 참조)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0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66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당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구미 축산협동조합의 전무로서 조합업무를 통괄하고 일상 업무에 관하여는 위 조합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1988. 8. 6. 에 이르러 환경관계업무가 점차 중요성을 띠게 되자 그때 환경기사 2급자격증을 가지고서 인공수정사로 일하고 있던 공소의 김안규를 그날부터 생축업무와 생산비조사업무 및 도축장 폐수처리 업무까지 겸하여 하도록 했으나 그가 그 일을 맡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힘이 드니 다른 직원 한 사람을 보충해달라고 요청하여 도축장 상주관리이던 장철환으로 하여금 위 폐수처리업무를 도우도록 조치를 해주었던 사실, 위 도축장 오염방지시설은 1차로 악품을 집어 넣어 화학적 처리를 하고 난 다음 2차로 생물학적 처리를 하여 정상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 김안규는 처음에는 제대로 일을 잘 처리하였으나 19. 89. 4. 경부터 경북 선산군 옥성지구에 있는 한우개량 단지에 지도원으로 자주 출장을 나가게 되면서 폐수처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같이 일하던 위 도축장 상주관리인 장철환에게 업무인계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업무지시도 잘 아니하여 방치해 버렸을 뿐 아니라, 그 해 8. 에는 여름휴가를 가면서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방치해 버리고 그런 사실을 직근 상판에게는 물론이고 피고인에게도 알리지 아니한 채 그냥 두어버린 탓으로 위 조합에서 충분히 폐수처리악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품을 제대로 오염방지시설에 집어 넣지 아니하여 그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런

사실에 의하면 위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행위자는 위 김안규이고 피고인은 다만 위 조합의 일상업무를 통괄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공소사실과 같이 위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행위자가 위 김안규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의 선고를 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합업무를 통괄하는 자로서 위 김안규의 이 사건 도축장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관리상황을 철저히 감독하지 아니한 지휘감독상의 과실은 인정될지언정 고의로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구 환경보전법 제70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재성
대법관 이회창
대법관 배만운

80. 가. 刑事裁判에 있어서 有罪의 인정은 法官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證明力을 가진 엄격한 證據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證據가 없다면 兇手에게 有罪의 의의가 간다 하더라도 被告의 利益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열차 기관사는 운전개시 전 차장으로부터 차장실의 공기압력계 점검결과 등을 무전으로 수신하는 등으로 열차의 제동장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業務上 注意義務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다 하여 業務上 過失을 인정한 사례.

(1991. 11. 12. 제1부 판결 91도1278 업무상과실기차추락 업무상과실치사)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08조

1992년 1월 1일(수요일)

법원공보

제 911 호 (159)

나. 형법 제187조, 제189조 제2항, 제268조

참조조문

가. 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도1579판결(공1989, 368)
1991. 3. 22. 선고, 91도235판결(공1991, 1312)
1991. 8. 13. 선고, 91도1385판결(공1991, 2385)

피고인 금상운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방예원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 11. 29. 선고, 90노1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피고인 금상운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의가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금상운이 공기호오스의 수리작업 후 3번 화차 전위부의 앵글코크를 개방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인 금상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제증명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이현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이현문은 이 사건 사고열차의 기관사로서 1989. 7. 27. 16 : 40경 위 열차가 기관차 2량, 화차 21량, 차장차 1량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동장치점검 등 차량검수를 마쳤으나 그 후 같은 날 17 : 00경 구내원에게 부탁하여 화차 2량을 분리해방케 하여 제조성된 열차에 대하여는 제동장치 등 차량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 뒤 같은 날 19 : 48경 위 열차를 운전, 출발함에 있어서 차장으로부터 차장차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압력계의 점검결과를 무전으로 수신하는 등으로 위 열차의 제동장치 이상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기관차에 승차하여 위 열차를 발차시킨 후 차장으로 하여금 뒤늦게 진행중인

열차에 승차케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관사는 운전개시 전 먼저 제동기능을 확인하여야 하고 특히 장시간 정차 후 운전시는 운전개시 전 제동기 기능검사를 하여야 하며, 차장은 열차출발 전에 반드시 조성상태와 제동판관통 송기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열차의 출발 전 제동판의 소정압력과 차장변의 기능 및 기관사와의 무선전화시험을 하여야 하는 철도청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이현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열차의 기관사로서 운전개시 전 차장으로부터 차장실의 공기압력계 점검결과 등을 무전으로 수신하는 등으로 위 열차의 제동장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열차에 있어서 기관사의 직무분담, 역할을 오인하였거나 기관사의 과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이재성
대법관 김석수

81. 水産業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그 제2호의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란 어선의 척수, 규모, 설비와 어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라고 풀이되는바, 水産資源保護令 제25조 제1항이 어업면허장, 어업허가장, 어업감찰 또는 접수증을 어업종사 기간 중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선에 비치하고 어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대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위반될 경우에 위 영 제31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은 어구 또는 어선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그 밖에 水産業法상 이를 처벌할 委任根據가 없으므로 위 영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호는 母法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刑罰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罪刑法定主義의 原則에 위배되고 委任立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다.

☐자료 다-5-13 (공판기록 별책)

감 정 서

1 의뢰인

대전직할시 중구 태평동 4번지 삼우아파트 22동 65호 이 세 용

2 감정물

- 가. 각서(공중) 1통(복사)
- 나. 합의각서(복사) 1통
- 다. 확약서(복사) 1통
- 라. 공중서(복사) 3통
- 마. 진술조서 말미(복사) 2통.
- 바. 진술조서 말미(복사 2통)

3 감정사항

합의각서, 확약서, 공중서 및 진술조서 말미에 기재된 "조병길" 서명 3자 필적과 각서(공중)에 기재된 동 서명 3자 필적과의 동일 여부.

4 시험

합의각서, 확약서, 공중서, 진술조서말미에 각 기재된 "조병길" 서명 3자 필적과 각서(공중)에 기재된 동 서명 3자 필적과를 입체현미경, 확대경 및 확대사진에 의거 세밀히 비교 검사한 결과 각자의 자획구성의 형태, 자획의 위치, 필순, 필압, 잠재된 특징, 잠존습벽, 자음 및 모음자 등이 전반적으로 상사(相似)한 점은 있으나 필압 상태가 차이가 있고 일부 자획이 상이하고 균일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주저주저한 흔적이 현 출되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각서(공중)에 기재된 동 서명 3자 필적은 모방필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음 (참조사진 제 1, 2, 3, 4 및 5)

5 감정

상기 시험 결과, 합의각서, 확약서, 공중서 및 진술조서 말미에 각 기재된 "조병길" 서명 3자 필적과 각서(공중)에 기재된 필적과는 전반적으로 상사(相似)한 점은 있으나 필압

상태 및 일부 자획인 상이(相異)하고 균일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주저주저한 흔적이 발견되는 점을 고찰하여 볼 때 각서(공중)에 기재된 동 서명 3자 필적은 모방체인 것으로 사료됨. 끝.

☐자료 다-5-14 (공판기록 별책)

대 전 지 방 법 원
증인신문조서
(제1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89고단 877, 1314, 2134(병합) 사문서위조등
증 인 이익주
생 년 월 일 1938. 11. 17.
주민등록번호
직 업 사설감정사(필적감정)
주 거 서울

판사는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변호인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사설감정인으로서 서울 종로구 청진동 27의 1에서 신성필적인영감정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과 경력을 말하여보시오.
답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10여년정도(1967에서 1977년까지) 문서감정을 하였다가 77년도부터 사설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 : 증인은 전국 각급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많은 문서감정을 하여왔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감정인 지정을 받고 1986. 6. 16가 피고인과 이세용이 작

성하여 인증한 각서의 인증촉탁서를 감정한 일이 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증인은 그 감정에서 인증촉탁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부분은 피고인의 서명과 상사(相似)한 점이 있으나 필압상태 및 일부자획이 상이하고 균일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주저주저한 흔적이 발견되어 모방체인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을 하였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그 인증촉탁서는 몇사람의 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감정도 하였는가요?
답 : 아니요, 몇사람의 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감정하지 않았습니다.

문 : 증인이 그 감정을 한 후 고소인 이세용은 타인을 시켜 위 인증촉탁서의 감정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서명부분이 진정하다는 감정을 하여달라는 청탁을 받았나요?
답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퇴직한 이인환이 인증촉탁서와 그 밖의 문서 5가지 합해서 6가지를 가지고 와서 감정을 의뢰하면서 의뢰인으로 이세용으로 해달라면서 이인환이 서명필적이 같지 않느냐고 의견제시를 하였습니까.
문 : 그러나 증인은 다시 감정은 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서명부분은 모방체로 보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감정결과를 내놓았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이 인증촉탁서에 주저주저한 흔적이 보이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답 : "조병길"에서 "조"자의 "ㄷ"을 쓰면서 첫획후 반부분과 달리 끝에 와서 글씨가 굵어지고, 마지막획 점표시가 멈춘 것같이 보이는 등 주저흔이 보입니다. 다음 "고"의 "ㄱ"부분과 "병"자의 "ㅂ"의 마지막 제4획이 주저흔이 보이며 "병"자의 받침 "ㅇ"에도 주저흔이 보입니다. 또 다음 "길"자의 "ㄱ"마무리 부분과 "르"에도 주저흔이 보입니다.

문 : 피고인의 서명부분중 필압상태와 자획이 상이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답 : "조"자중 "ㄷ"의 첫획부분 끝에 중간 부위에

서 가는데 왔다가 굵어진 부위가 있으며 자획이 균일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길"자중 "ㄱ"부분이 그렇습니다. 주저흔이 있으면 필압상태와 자획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문 : 증인이 지적한 부분은 필적감정이라면 누구라도 동일한 판별을 할 수 있을 정도인가요?
답 : 당시의 감정사항은 성명란의 "조병길"3자가 옮긴 것인지, 직접 기재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판별여부에 대하여는 ??? 단정할 수 없고 감정인에 따라 견해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김형영의 작성 감정서를 제시하고
문 : 이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서명은 모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떨림흔적이거나 주저 흔적이 관찰되지 아니하며 자연스럽게 기재된 필적으로 사료된다고 하는데, 증인의 의견은 어떤가요?
답 : 증인 나름대로 주저흔이 있어 증인의 소견을 피력한 것이고 또 다른 의견이 양립될 수 있습니다.

문 : 증인은 현미경 등에 의하여 지적하는 주저흔적 부분을 법관에게 설명할 수 있나요?
답 : 예, 할 수 있습니다.

문 : 필적감정을 함에 있어 비교대상이 되는 필적이 없이 감정을 할 수 있나요?
답 : 감정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문 : 증인은 현미경 등에 의하여 지적하는 주저흔적 부분을 법관에게 설명할 수 있나요?
답 : 예, 할 수 있습니다.

문 : 필적감정을 함에 있어 비교대상이 되는 필적이 없이 감정을 할 수 있나요?
답 : 감정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문 : 증인은 현미경 등에 의하여 지적하는 주저흔적 부분을 법관에게 설명할 수 있나요?
답 : 예, 할 수 있습니다.

문 : 증인은 현미경 등에 의하여 지적하는 주저흔적 부분을 법관에게 설명할 수 있나요?
답 : 예, 할 수 있습니다.

문 : 증인은 현미경 등에 의하여 지적하는 주저흔적 부분을 법관에게 설명할 수 있나요?
답 : 예, 할 수 있습니다.

문 : 증인은 현미경 등에 의하여 지적하는 주저흔적 부분을 법관에게 설명할 수 있나요?
답 : 예, 할 수 있습니다.

문 : 증인은 현미경 등에 의하여 지적하는 주저흔적 부분을 법관에게 설명할 수 있나요?
답 : 예, 할 수 있습니다.

문 : 증인은 현미경 등에 의하여 지적하는 주저흔적 부분을 법관에게 설명할 수 있나요?
답 : 예, 할 수 있습니다.

문 : 증인은 현미경 등에 의하여 지적하는 주저흔적 부분을 법관에게 설명할 수 있나요?
답 : 예, 할 수 있습니다.

문 : 증인은 현미경 등에 의하여 지적하는 주저흔적 부분을 법관에게 설명할 수 있나요?
답 : 예, 할 수 있습니다.

인적 의견으로는 다른 사람이 모방하지 않았나 느낌이 갑니다. 자연스럽게 써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문 : 서명이 피고인 자신의 자필서명인지에 대하여도 감정사항이었습니까?

답 : 피고인의 자필서명여부는 감정사항이 아니었고 다만 부수적으로 증인의 소견을 별도로 밝힌 것입니다.

문 : 이 사건 고소인 이세용으로부터 타인은 시켜서 인종축타서의 5점, 76점의 ??은 가져와서 감정을 부탁하였나요?

답 : 증인은 고소인 이세용이나 그와 이인환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모르고 ??만 이인환이 서류 등을 가져와서 의뢰인을 이세용으로 하여달라고 ???입니다.

문 : 이인환이 감정을 해주고 또 다른데 부탁을 하니 증인에게 가져간 ?? 아닌가요?

답 : 그 사항에 대하여는 모르겠습니다.

문 : 이세용으로부터 감정을 부탁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답 : 예, 없습니다.

문 : 이인환으로부터 필적이 "갈지 않느냐"라는 전화가 왔다고 했는데 그 물음에 대한 해석을 증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 당시 증인은 자기 (이인환)생각에 비추어 증인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변호인

증인에게

문 : 이인환이도 감정을 하고 있습니까?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서울 시내 감정은 몇사람이나 되나요?

답 : 8군데 정도 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출신인 증인과 이인환, 그 시경감식계에 있다나온 사람, 치안본부감식계에 있다나온 사람등 사람과 이송운동전문 기관근무경력이 인장새기면서 감정을 하는 사람 넷 합하여 3명정도 됩니다.

문 : 이인환이 증인이 감정은 하나까 다른감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서로 ???것 아닌가요?

답 : 병원에서 축적으로 한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판사

증인에게

문 : 주저혼은 어떻게 하여 생기나요?

답 : 주저혼은 본인의 심리불안에서 생길 수도 있고 타인이 모방하여 쓸때도 주저혼이 생깁니다.

문 : 위 양자는 구별이 가능합니까?

답 : 예, 가능합니다.

문 : 당시 감정결과는 어떻습니까?

답 : 증인의 소견으로는 본인의 심리불안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필압상태가 굵고 가는 것으로 보아 타인이 모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 : 양자의 구별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답 : 본인의 심리불안상태인 경우는 글 전체에 이상이 생기나 타인이 모방할 때에는 글 특정부위가 이상이 생깁니다.

1991. 5. 28

법원주사 유 원 서
판 사 김 형 진

* 증인선서서 (생략)

서울형사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제8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91고단 7353 변호사법위반

증 인 양 순 화

생 년 월 일 1964 10. 21.

주민등록번호

직 업 무 직

주 거

판사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 하는 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

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변호인 김희부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증권건설주식회사(1987. 3경 중경건설주식회사로 바뀌었음)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였는지요

답 : 85. 4. 1-89. 2. 28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문 : 증인은 어떤 인연으로 위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지요

답 : 친구회사에 놀러갔다가 이세용의 눈에 띄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문 : 위 회사는 공소의 이세용이 회장이고, 피고인 한치준은 사장이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위 회사에 입사직후에는 회사일보다는 주로 이세용의 개인 심부름으로 경찰서, 법원, 변호사 사무실 등을 자주 드나들었고 또 이세용을 대신하여 글씨를 써 주는 일을 하였는지요

답 : 처음 입사해서는 은행심부름등 이세용의 개인 심부름을 주로 하였으나, 86 말에 경리아가씨가 그만 두고나서는 증인이 경리일을 맡아보았으며 이세용을 대신하여 글씨를 써주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 : 피고인 한치준이 증인에게 시키는 일은 대체로 무슨 일이었는지요

답 : 회사와 관계되는 일이었습니다.

문 : 위 이세용은 회사일에는 거의 관여하지 아니하고 재판에 관계되는 일을 주로 하여 왔는데 사실 인가요

답 : 재판에 관계되는 일만 해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회사일에 거의 관여하지 아니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문 : 위 이세용에게 최동열, 양종석, 문용선 등이 자주 찾아왔지요

답 : 예.

문 : 위 사람들은 회사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 한치준은 위 사람들과 거의 어울리지 아니하였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위 이세용의 심부름으로 수원에 있는 조남근 사무실에 간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몇번이나 갔으며, 그때가 언제쯤인지 기억할 수 있는지요

답 : 86 여름경 1번 갔던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그 당시 심부름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지요

답 :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서류봉투를 전하러 갔습니다.

문 : 증인은 1988. 5. 이세용이 구속된 후 이세용의 구명활동을 하는데 조남근이 비용을 대고 양종석이 일을 본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있다면 누구로부터 들었으며, 몇차례나 그러한 말을 들었는지요

답 : 한치준과 양종석으로부터 들었으며, 몇차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 증인은 1988. 11. 말경 문용선이 증인에게 전화로 이세용의 지시라고 하면서 충남경찰국 포과장한테 가서 약속어음 금 3,000만원짜리 1매를 찾아와서 한치준에게 주라고 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지시여부 등은 잘 모르겠고, 증인이 경찰국에서 가서 어음을 찾아온 사실은 있습니다.

문 : 그리하여 증인은 위 경찰국으로 그 과장을 찾아갔더니 그 과장이 조남근 발행의 약속어음 금 3,000만원짜리 1매를 증인에게 주었지요

답 : 예.

문 : 그 과장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는지요

답 : 기억 못하겠습니다.

문 : 증인은 그전에도 이세용의 심부름으로 경찰국의 사람들을 여러번 찾아간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위 약속어음을 할인할 곳이 없어 며칠

간 증인이 보관하고 있던중 평소 이세용의 소송사건을 담당해온 박종배 변호사로부터 어음을 할인하여 줄테니 가져오라는 전화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그리하여 피고인 한치준이 위 어음을 가지고 가서 할인하여 충남상호 신용금고에 할인료를 대고 적금을 냈으며, 이세용의 두사건 변호료로 금 500만원 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과 영수증을 증인에게 갖다주 었는데 사실인가요

답 : 예.

문 : 증인은 나머지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알 고 있는가요

답 : 회사일에는 사용치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 습니다.

문 : 피고인 한치준은 나머지 돈중 1,500만원은 이 세용을 위한 변호인 선임료로 지급한 돈에 상당하고 그 외에 이세용의 충청은행에 대한 대출금이자와 이 종일에 대한 사채이자를 지급하고 또 최동열에게 생 활비로 100만원을 주는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위 피고인 말이 맞는가요

답 : 예. 은행이자 같은 것은 증인이 직접 심부름 다녔고 최동열에게 생활비로 주었다는 것은 말로만 들었습니다.

문 : 증인은 1988년 추석 전날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할 수 있는가요

답 : 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문 : 피고인 한치준은 추석전날 공사대금을 추심하 기도하고 장비대여자들에게 대여료를 지급하기도 하 고 직원들 상여금도 주는 등의 일로 낮에는 주로 사무실에 있었고, 저녁이 되어서는 사무실 뒤편에 있 는 아리랑회관 식당에서 회식을 하였는데 기억이 나는가요

답 : 예. 기억합니다.

문 : 피고인 한치준은 1988년 이세용을 면회하고 와서 증인에게 "내가 임봉규를 잘 안다고 하며 임봉 규가 꾸민 연극이라고 하는 내용의 증인을 서달라고 하는데 야단났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잘 모르겠습니다.

문 : 그러면서 한치준은 임봉규를 잘알지도 못하는

데 위증을 서달라고 하니 고민이라고 하면서 이세용 이 출감하면 헤어져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증인은 여러차례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위증을 서달라고 하니 고민이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이세용이 출감하면 헤어져야 하겠다는 말은 여러차례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 증인은 이세용의 지시로 조병길이라는 이름을 써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이세용이 자기방으로 증인을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세용이 증인에게 조병길의 글씨가 있는 문서를 보여 주면서, 그대로 써달라고 하여 조병 길의 글씨를 흉내내어 써준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할 수 있는가요

답 : 확실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문 : 그무렵 증인은 위 이세용의 지시로 위 조병길 의 위 조병길의 인감증명을 10여통 떼어준사실이 있 는가요

답 : 예. 몇통을 떼어다 주었는지는 모르겠고 여러 번 위 조병길의 인감증명을 떼어다 준 사실이 있습니 다.

문 : 증인은 이세용이 구속되기 전에 이세용이 임 봉규로부터 갈취했다는 수표들에 증인이 배서를 하여 은행으로부터 현금으로 교환하여 이세용에게 갖다준 사실이 있지요

답 : 임봉규로부터 갈취한 수표였는지는 모르겠고, 증 인이 배서를 하여 현금으로 교환후 이세용에게 갖다 준 사실은 있습니다.

문 : 위 이세용은 그후로 증인에게 경찰이나 검찰 에서 나와서 물어보면 위 수표들을 조병길이 증인에 게 주면서 현금으로 바꾸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해달 라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조병길만 이야기한게 아니고, 조병길이나 그의 에 다른 사람들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심부 름시킨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문 : 증인은 1989년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을때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화로 출두요청을 받고 검 찰에서 이세용 구속사건에 관하여 이세용이 건네준 수표뒤편에 배서한 사실때문에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그때 증인은 무어라고 진술했는가요

답 :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문 : 그후 위 이세용이 증인을 찾는다는 말을 들었 으며 증인은 이세용을 피해다니는 입장이었지요

답 : 예.

변호인 노경래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이세용이 조병길 글씨가 들어있는 문 서를 증인에게 보여주면서, 조병길의 글씨 흉내를 내 어 써달라고 하여 써주었다고 하였는데, 그 당시 이세 용이 증인에게 조병길의 어떤 문서를 보여주면서 흉 내내 써달라고 하던가요

답 : 조병길의 서명이 들어 있는 문서였는데, 그 문 서가 어떤 문서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 증인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수표배서문제로 조사 받을 때 배서사실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진술 한 것이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검 사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이세용 심부름으로 수원에 있는 조남 근 사무실에 한번 간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가요

답 : 몇년도 인지는 잘 몰라도 여름경에 한번 간적 이 있습니다.

문 : 증인은 89년 추석 전날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가요

답 : 잘 모르겠습니다.

문 : 그런데 어떻게 88. 추석 전날은 그렇게 정확히 기억해낼 수 있는가요

답 : 그 당시는 증인이 중경건설 사무실에 근무했 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문 : 상 피고인 한치준이 이창열씨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요

답 : 들은 사실 없습니다.

문 : 증인은 이세용 부탁으로 충남경찰청에 봉투를

가지고 수차례 심부름을 다녀온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봉투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알고 있는가요

답 : 주로 돈이었으며, 서류도 들어 있는 때가 있었 습니다.

문 : 증인은 경찰청 출입을 한달에 몇번정도 하였 는가요

답 : 한달에 서너차례 간적도 있으나, 가지 않을때 는 한달이 지나도록 한번도 안간적도 있습니다.

문 : 증인은 경찰청사람들로부터 이세용에게 서류 를 전해달라고 부탁받은 적은 없었는가요

답 : 예. 없었습니다.

문 :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은 누가하였는가요

답 : 그 당시 한치준 사장이 했습니다.

문 : 한치준이 할인하였는지를 증인이 어떻게 정확 히 기억하는가요

답 : 할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증인이 해주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위 약속어음은 회사돈이었는가요

답 : 회사돈이 아닙니다.

문 : 충청은행에 대한 이자 및 이종일에 대한 사채 이자는 누구돈으로 지급했는가요

답 : 계속적인 채무는 회사돈으로 결제해왔습니다.

문 : 이세용이 구속되었을시 피고인 한치준이 이세 용을 몇차례나 면회했는지 알고 있는가요

답 : 평균 3일에 한번정도 면회했던 걸로 알고 있 습니다.

문 : 증인은 이세용의 지시로 종이에 조병길이라는 이름을 써 준 사실이 있다고 하였는데, 어떤 종이에 그 이름을 써 주었는지 기억할 수 있는가요

답 : 기억나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문 : 증인은 이세용으로부터 허위진술의 부탁을 받 았다고 하였는데 몇번이나 부탁받았으며 실제 부탁받 은대로 허위진술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허위진술해 달라는 부탁은 여러번 받았지만 그 부탁에 따라 허위진술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문 : 본 법정에 증인으로 올 때까지 누구로부터 증 인을 서달라고 부탁받은 적은 없는가요

답 : 한치영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시내에서 한치영 을 만나게 되었는데,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언해달라

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문 : 증인은 이세용을 인간적으로 배신한적이 있는
가요

답 : 그런 적은 없습니다.

문 : 증인은 혹시 퇴사후인 89. 10.경 서울플라자호
텔에서 임봉규, 한치준 등과 함께있다가 이세용을 만
난적이 있는가요

답 : 그런 사실 없습니다.

문 : 그렇다면 퇴사후에 임봉규, 한치준, 증인 세사
람이 함께 만난적은 있지요

답 : 예, 있습니다.

1992. 2. 27.

법원주사 이준연
관 사 여상규

☐자료 A-29 (동아, 92.4.10.)

姜基勳씨 7년간 구형	
92. 4. 10 동아	이서대필 항소심
서울지법형사1부 申相 법원사건 92영부자사24호 전담판사원근전 김희철 의 아사불 집행한 김희철 대우기소불 집행중 전담 3명등 전담판사1명등등 을 전담판사인 전담판사 장 김희철(가(가)등)등	한 항소심판결항쟁에서 자 살의죄(가(가)등)등(가(가)등) 판결판과 집행중 전담 판 사인 김희철(가(가)등)등 판결판과 집행중 전담 판 사인 김희철(가(가)등)등 판결판과 집행중 전담 판 사인 김희철(가(가)등)등 판결판과 집행중 전담 판 사인 김희철(가(가)등)등
전담판사 심판과 열조 沈昌燮판사 심판과 열조	전담판사 심판과 열조 沈昌燮판사 심판과 열조

☐자료 다-5-15 (공판기록 3823~3827)

공 판 절 차 재 개 신 청

사 건 92노 401 자살방조 등
피고인 강 기 훈

위 사건은 1992. 4. 9. 결심되었으나 아래와 같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코자 하오니 공판절차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김기설의 분신 후 1991. 5. 13-14경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남기춘 등 2명이 육군 제8736부대를 방문하여 부대장 등 입회하여 김기설이 위 부대를 제대할 당시 가깝게 지내던 서기선 하사의 수첩에 자신과 다른 전역병의 연락처를 적어준 김기설의 필적을 임의제출받아 가져간 사실이 있었는 바, 수사기록 어디에도 위 필적에 관한 언급조차 없어 그동안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음.

2. 변호인들은 이 사건 결심 후 우연히 위 사실을 알게 되어 위 서기선 하사(1991. 12. 예편)와 당시 위 검사의 필적수집시 입회하였던 이찬진 중위(현 변호사)를 만나 사실 확인 후 별첨 자술서 및 확인서를 받았는 바 그 원본을 법원에 제출코자 함.

3. 검찰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김기설의 필적을 수집하고서도 이를 은폐한 이유가 무엇이며(기록상) 필적 감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별첨 진술서 및 확인서의 원본을 증거로 제출할 것임.

4. 구속기간에 대한 의견

이 사건 구속기간이 1992. 4. 23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자살방조의 구속기간이고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은 불구속상태이므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을 하면 구속기간의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 첨 부 : 1. 변호사 이찬진의 진술서 사본
- 2. 서기선의 확인서 사본

1992. 4. 13.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유 현 석
 변호사 김 창 국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좌 하

진 술 서

성 명 이 찬 진
 주 소 서울
 주민등록번호
 직 업 변호사
 서울 호

본인은 사법연수원 제18기를 수료한 후 1989. 3. 4. 법무사관 제54기로 군에 입소하여 1989. 8. 18.부터 1992. 2. 29.까지 육군 1382부대에서 정훈장교로 근무하였는 바, 위 재직기간 중 1991. 5월 중순경 망 김기설과 관련된 분신의혹사건에 관하여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남기춘 검사 등 수사검사 2명과 함께 본인 소속부대의 예하부대인 8736부대에서 망 김기설의 필적수집 수사에 동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부대에서 망인의 필적 1장을 수집한 사실을 알고 있는 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 합니다.

다 음

- 1. 망 김기설의 군 경력 및 필적
- 위 망인은 1986년 하반기경 위 8736부대에 이병으

1992. 4. 11.

위 진술인 이 찬 진

— 확 인 서 —

본인은 1988년 1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8736부대 의무대 선임하사로 제직하였습니다.

이 부대에 전입한 1월부터 김기설군이 전역할 때까지 같이 근무하였습니다.

1991년 5월 12일 TV중계로 김기설 운구행렬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후 91년 5월 13인가 14일인가 군단 법무참모, 검사, 이찬진 중위 등 다섯 분이 방문하여 김기설이가 남긴 필적 조사를 하였읍니다.

김기설이 88년 제대 당시 본인에게 적어준 김기설 주소 및 전화번호, 금병철 주소 및 전화번호를 검사 두 분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돌려받지 않고 그 일을 잊어버리고 지냈읍니다.

1992년 4월 12일

작성자 서 기 선

강남구 역삼동 785 - 13 (남광 춘천막국수)

로 전입은 이래 최초 부대장 당번병 및 군중병 업무를 순차적으로 수행중 전역 1년여를 앞두고 위 부대 의무대 위생병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군 복무를 하였는 바, 특히 의무대에 근무시 당시 선임하사였던 서기선(당시 하사, 1991. 12. 중사로 예편)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군생활을 마쳤으며 동 의무대 근무기간 중 독특한 관계를 유지하여서, 망인이 전역시 위 서기선의 "군인수첩" 주소록에 망인의 고향주소, 전화번호, 서울의 연락처 등을 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인은 남기춘 검사 등 수사검사에게 그 소유의 군인수첩에서 해당 부분을 위 망인의 자필에 의한 것이라며 본인, 군단 법무참모, 법무 선임하사 등 입회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2. 유서와 군인수첩 주소록한 기재상의 필적에 관하여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검사들의 수사시간은 당일 17:30경 시작하여 19:30경 종료되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의 필적 1개만을 인수한 제 8736부대에서의 당일 수사는 종결되었고, 당일 20:00경 위 부대 인근 갈비집에서 수사검사와 수속대 부대장, 주임상사, 군단 법무참모, 법무 선임하사, 본인이 동행이 되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수사검사들은 앞서 본 바와같이 입수한 수첩상의 필적과 본인 김기설 명의 "유서"사본 등을 본인을 비롯한 참석인원들에게 제시하고 동일성 여부를 문의하였던 바, 본인은 상이하다는 판단보다는 유사하다는 판단이 훨씬 더 커서 수사검사들에게 "이것만으로도 잘 모르겠지만 감히 상이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고, 차라리 유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겠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으며, 당시 이견은 매우 미묘하고도 중대한 잇슈였기 때문에 아직도 이 부분에 관하여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부대장 등 참석인원들 역시 다르다는 판단을 내리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위와같이 저녁식사를 마친 후 수사검사들은 입수한 망 김기설의 필적을 갖고 서울지방검찰청의 복귀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를 출발하여 서울지검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자료 A-29 (동아, 92.4.12.)

부신자살한 전민원 사회
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해설하고 추적했다.

“유서글씨와 비슷한 金基尙씨 필적 검찰 증거 확보 뒤 은폐”

부신자살한 전민원 사회
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해설하고 추적했다.

【서울 12일 동아】 부신자살한 전민원 사회부장 김기설(55)의 유서글씨와 비슷한 필적의 유서글씨를 검찰이 확보한 뒤, 김기설이 유서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기설의 유서글씨와 비슷한 필적의 유서글씨가 검찰에 제출된 것은 지난 5월 13일 서울지방법원 서울중앙지청(재판장 김기원)의 결정에 따라 검찰이 김기설의 유서글씨를 확보한 뒤, 김기설이 유서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기설은 지난 5월 13일 서울지방법원 서울중앙지청(재판장 김기원)의 결정에 따라 검찰이 김기설의 유서글씨를 확보한 뒤, 김기설이 유서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료 B-19

성명서

검찰은 은폐해온 고 김기설씨의 모든 필적을 공개하고 유서대필사건 조작기도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

감추어진 것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을 의혹과 혼동 속으로 몰아넣은 이른바 <유서사건>은 결국 검찰에 의한 가증스러운 조작극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육군 8736부대에서 복무하다가 얼마전 각각 중위와 중사로 전역한 이찬진변호사와 서기선씨의 증언은 검찰의 이 <유서사건> 수사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면서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음모에 다름이 아니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 김기설씨 분신자살 직후인 작년 5월 13일경, 서울지방 검찰청 소속 남기춘검사 등 수사검사 2명이 고인이 복무했던 8736부대에서 <유서사건>과 관련해서 고 김기설씨의 필적수집을 위한 수사를 벌였으며, 이 수사에 동행한 이찬진 당시 중위 등의 입회하에 고인과 절친했던 서기선 당시 의무대 선임하사가 자신의 수첩에서 고인의 필적을 뜯어서 제출한 사실을 이들은 증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필적은 왜 이 유서사건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가? 이 필적은 어디로 사라져버렸단 말인가?

고 김기설씨 필적은,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듯이, 정자체보다 흘림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검찰이 고 김기설씨의 필적 수집에 막강한 수사력을 동원했음은 이 사건기록 분석과 여러가지 정황의 종합을 통해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러기에 검찰이 고인의 것이라며 제시한 필적이라는 것이 고작 몇점의 필적에 불과한 사실을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강기훈씨가 “제3의 장소에서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을 무렵, 도처에서 나타난 고인의 필적들이 두세점만 제외하고 모두가 흘림체였는데 비하여 검찰이 제시한 몇점은 모두가 정자체였다는,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검찰이 고인의 상당한 흘림체 필적을 수집했으면서도 유서와 같은 필체인 그것들을 제시하지 않고 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오랫동안 우리의 뇌리에 박혀 있던 이 의혹은 이번 이찬진변호사와 서기선씨의 증언에 의하여 기어 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나고 말았다. 우리는 이번에 드러난 이 사실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써, 병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음을 확신한다. 검찰은 아직도 고 김기설씨의 흘림체 필적을 상당수 은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아니 검찰이 그것을 모두 인멸해버렸을 가능성까지도 우리는 배제하지 않는다. ‘공복’의 탈을 쓴 인간들에 의한 이 얼마나 놀라운 범죄행위란 말인가?

이찬진, 서기선 양씨의 증언은 담당하게 먹구름에 가리워져온 이른바 <유서사건>의 진상을 시원스럽게 드러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검찰은 그 막강한 공권력을 동원하여 수집한 고 김기설씨의 필적들을 재판부에 제시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숨기고 있는 모든 필적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하며, 치졸한 조작극으로써 무고한 강기훈씨를 공권력의 위신을 유지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무모한 범죄행위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 당국에 대해 검찰의 조작은폐행위를 수사할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할 것과 관련 당사자를 모두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1992년 4월 13일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화:745-9564, 743-91278 팩시:742-8289

☐자료 다5-16 (공판기록 3828~3840)

서울고등검찰청

1992. 4. 14

수신 :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2부

발신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안 승 규

제목 : 참고자료 제출

귀원 92노 401호 피고인 강기훈에 대한 자살 방조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1992. 4. 13. 피고인의 변호인들로부터 공판절차 재개신청이 있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검찰의 의견을 밝히고 참고자료를 제출합니다.

- 첨 부 : 1. 의견서 1부.
- 2. 참고자료 1(수첩 1매)
- 3. 참고자료 2(제101대대 신자현황 등 4매)
- 4. 참고자료 3(노트 1권)
- 5. 참고자료 4(이력서 사본 1매)

변호인들의 공판절차 재개신청에 관한 의견

1. 변호인의 재개신청 이유

- 0. 1992. 4. 13. 피고인의 변호인 유현석 외 1명은 공판절차 재개신청을 하면서, 김기설 분신사건 후인 91. 5. 13-14경 서울지방법검찰청 검사 남기춘 등 2명이 육군 제8736부대에서 그곳 선임하사 서기선으로부터 김기설의 필적이 들어 있는 위 서기선의 군인수첩 중 1장을 가져갔는데도 수사기록에 위 필적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검찰이 위 필적을 은폐한 이유를 밝히고 위 서기선의 위 1명의 확인서 등을 법원에 제출코자 재개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0. 이와 함께 "강기훈,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 검찰은 수집한 필적 중 정자체만 제출하고 유·필적과 같은 소위 흘림체 필적은 은폐, 인멸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검찰의 수사경위

- 0. 검찰은 1991. 5. 13. 18:00경 육군 제8736부대에서 그곳 선임하사 서기선으로부터 김기설의 필적인 것 같다는 수첩 1장을 제출받았는 바 "첨부자료 1"로 첨부된 것입니다. 위 내용은 위 자료의 제3-5행에 기재된 바와 같이 김기설이라는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가 기재된 것이 그 전부입니다.
- 0. 위 자료는 객관적으로 김기설의 필적인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참고자료로 하고 필적감정은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며 그후 검찰은 김기설의 이력서, 안혜정이 김기설로부터 받은 편지 등 보다 확실하고 내용이 풍부한 글씨들을 입수하여 이를 압수, 필적감정에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 0. 위 필적 이외에도 "참고자료 2"와 같이 김기설이 근무한 제101대대에서 김기설이 쓴 것 같다는 필적 4매도 압수하였으나 역시 김기설이 작성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불명확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차트글씨이므로 필적감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참고자료로만 하고 필적감정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참고자료 3"과 같이 김기설의 고종사촌 이재구의 노트 속에서 김기설의 필적이라는 글씨를 입수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김기설의 글씨인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글자가 많지 않아 참고자료로 하고 필적감정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0. 위와같이 검찰은 입수된 자료 중 객관적으로 김기설의 글씨임이 명백한 것들을 필적감정의 대조자료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측의 주장과 같이 소위 유리한 자료만을 필적감정에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 0. 특히 위 참고자료 1의 수첩글씨는 피고인측의 주장처럼 소위 "흘림체"글씨이었던 것이 아니라 "참고자료 4" 이력서의 주소란에 기재된 것과 같은 정자체 글씨인 것이 분명합니다.
- 0. 문제된 필적 "참고자료 1"은 이를 입수하였던 검사 박경순이 이 수사가 끝난 후 참고자료로 보관하고 있다가 대만으로 유학을 가면서 검사 송명석에게 인계하여 계속 보관중에 있었습니다.

3. 공판절차 재개신청에 대한 검찰의 의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검찰에서 수집한 자료를

모두 압수하거나 또는 김기설의 필적이라고 주장된 것을 아무런 판단도 없이 전부 필적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변호인들도 익히 알고 있는 상식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 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측은 무슨 커다란 의혹인 있는 것처럼 언론에 공개하여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바 92. 4. 9.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이 더 이상 증거를 신청하지도 않고 아무런 의의도 제기함이 없이 결심이 되어 선고 기일을 불과 7일, 구속만기일을 10일 남겨 놓고 현 시점에서 결심된 공판결차를 재개할 합리적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시 구속을 하면 구속기간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한 마디로 또다시 6개월간 기한을 늘려 놓고 이번의 근거 없는 주장과 같은 새로운 트집을 잡아 여론을 오도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일 뿐이므로 공판결차 재개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1"

NAME	TEL NO	ADDRESS
송영기	215	
김기설		
이재민		
김부서		
김모		

"참고자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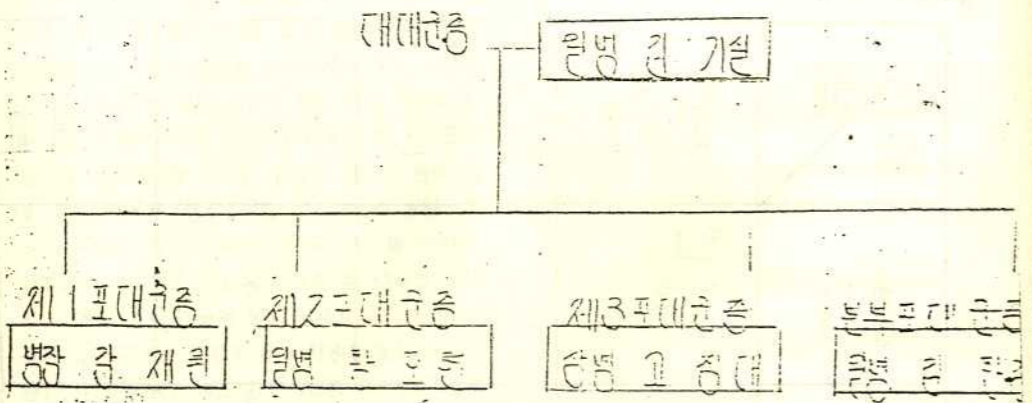
① 제11이대대 종파별 신차분량

"참고자료 2"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한성교
개교				
창교	3	1	8	
하사관	21	4	15	
병	99	16	79	1
계	123	21	100	1

(1986년 3월 현재)

㉔ 제 10기 태대 인증 조약표



㉕ 10기 인증 권평 (35권)

—	예 배 권	권
—	기 도 권	권
—	사 무 권	권

권 등

- 매주 화요일 : 여단 인증회의 총회 (태대인증)
- 매주 토요일 : 각 포대 인증 및 승가대회 소집
* 목적: 심경응부 승가인증 포대인증회의
- 매월 1회 [103명권 권평
: 04 방원 (주3회 인증)]
- 주 1회씩 초소방문 (주 3회 인증)
- 신병 및 귀가시방 연담 (주 3회 인증)
- 권평자 추천 및 선물권 (주 3회 인증)
- 권평방송 (취형권 5~10분권 권평 및 기보)
- 봄 가을 문학행사 (권평 권평 대회 및 권평 권평 대회)
- 권입 신병 가림서간 (태대인증)

④ 중요 활동 현황

◦ 예배

- 주일 낮 예배 * 주일 낮 예배주 찬양시간 (음성 및 찬
◦ 성가대원 기도
- 성주님 예배 * 주부헌서 : 성경부 (교재 : 인본별 권
◦ 포대헌종 인도
- 매일 아침기도 * 전명 찬양 예배

◦ 인도목사 : 최영환

◦ 참석 인원

- 주일 낮 : 평균 30 ~ 50 명
- 주일 밤 : 20 ~ 30 명
- 성주님 : 30 ~ 50 명

"참고자료 3"

"참고자료 3"

백내부나.

TEL.

프랑수아 부나.

TEL.

코 부나

TEL.

김기철 (한성역)

TEL.

"참고자료 4"

(인사기록제1호)

이 력 서

성 명 김 기 설 인 주민등록번호 5

생년월일 시기 1965년 11월 27일생 (만 24세)

주 소 경기도

호적관계 호주외의관계 본인의 부 호주성명 김 경 연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 명 칭
81	2	16	경란 중 학교 졸업	
81	3	3	서울 수도 전기 공업고 "응배접속" 입학	
82	4	20	등교 자퇴	
85	12	11	육군 제 0136 부대 입대	
88	6	23	육군 제 0136 부대 퇴대	
88	9	10	모드 스트 라이프 입사	
89	9	23	퇴 사	
89	10	10	선릉 섬유 입사	
90	9	21	퇴 사	

자료 다5-17 (공판기록 3841~3844)

서울고등검찰청

1992. 4. 9.

수신: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2부
 발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신 상 규
 제목: 추가의견서 제출

귀원 92노 401호 피고인 강기훈에 대한 자살
 방조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별첨 추가의견서와 같이
 추가의견을 제출합니다.

첨부: 의견서 1부. 끝.

의견서

1. 귀원 92노 401호 피고사건에 관하여 추가의견을 제
 출합니다.

1. 1992. 4. 9. 제5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측 증인으로
 증언한 한원석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믿을 수 없습
 니다.

첫째로 1991. 11. 18.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된 자술서 기재에 의하여 "본인은 고 김기설씨에게
 90년 11월경 300만원을 빌려준 바 있는데 당시 차
 용증서와 같은 아무런 근거자료도 받지 않았고"라
 고 기재되어 있어서 1992. 4. 9. 증언 중 "1990. 10.
 초순경 김기설이 액면 230만원의 약속어음 1매를
 가져와 증인에게 할인을 부탁하여 박영준씨의 아버
 지에게 얘기하여 할인해 주었다"라는 내용과 일시,
 금액, 대이자 등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반대신문
 에 대한 증언 중 김기설에게 230만원 주었다고 하
 다가 박영준의 아버지가 이자를 제하고 주었는데
 얼마를 주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여 믿
 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각서의 용지는 크기와 모양으로 보
 아 '91 전민련수첩으로 판단되는데 그 용지에 대하

여 김기설 수첩 혹은 김기설이 자신에게 선물한 수
 첩 중 어느 것에서 찢어낸 용지인지 모르겠다고 진
 술하여 그 점도 불명확한 진술이며 더우기 위 각서
 (변호인 제출 중23-1호)의 절취선은 전민련이 김기
 설의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검찰 중제11-1호)의 제
 일 뒷부분 모눈종이 3매의 잔류부분과 겹쳐서 김기
 설의 수첩에서 찢어낸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태인데
 증인은 자신이 선물받은 수첩은 없어졌다고 주장하
 면서 1990. 11. 말쯤 김기설의 사무실에서 '91 전민
 련수첩을 선물받았다고 진술하나 고 김기설이 전민
 련 사무실에 처음 나타난 것은 1990. 12. 말 말년회
 때이며 그 사무실에 근무한 것은 1991. 1.부터 입니
 다.

셋째로 증인은 문제된 각서를 91. 6. 초순경
 명동성당에 가서 서준식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
 는데 이 각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가 1991. 11. 제
 1심 8차 공판에서야 뒤늦게 법원에 제출된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넷째로 증인은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
 는데도 어떻게 알고 출석하였느냐는 재판의 질문에
 1992. 4. 6.쯤 신문기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
 을 알고 전민련 사무실에 연락하여 출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1991. 12. 말 전민련은 해체되고 종로
 5가에 있던 전민련 사무실도 폐쇄된 사실에 비추어
 출석경위도 석연치 않습니다.

위와같이 제2심 5차 공판에서 증언한 한원
 석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며 그가 받았다는 김기설
 명의 각서 역시 김기설의 글씨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1. 증인 이보은의 증언에 대하여 한 가지 첨가할 것은
 증인이 1991. 5. 9. 최재인으로부터 김기설의 수첩
 등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받아 보관하였다가 1991. 5.
 12. 꺼내어 보니 수첩의 표지 안쪽 비닐카바 속에
 김기설의 주민등록증이 꽂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
 는 반면, 최재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봉투에 수
 첩을 넣은 후 주민등록증을 봉투를 열고 그냥 떨구
 어 넣었을 뿐 표지 속에 끼워 놓지 않았다고 한 점

에 비추어 위 김기설의 수첩이 들어 있던 서류봉투는 중인 이보은의 주장처럼 아무도 손댈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1991. 5. 9. - 5. 12. 사이에도 이미 누군가가 손을 댄 것이 분명합니다.

1. 이상 1992. 4. 9.자 검찰의견서에 추가하여 의견을 개진합니다. 끝.

☐자료 다-5-18 (공판기록 3845~3852)

서울고등검찰청

1992. 4. 16.

수신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2부
발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안 승 규
제목 추송서

아래와 같이 추송합니다.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강기훈
죄명 자살방조 등
공소제기년월일 1991. 7. 12.
기록번호 1991 형제46779호

첨부: 1. 참고인 서기선의 진술서 1부.
2. 참고인 서기선에 대한 진술조서 1부.

진술서

성명 서기선(徐基先) 성별 남
연령 세 1966. 2. 28.생
주민등록번호
본적 충남
주거 강남구

위의 사람은 피고인 강기훈 사건의 참고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1. 91년 5월 13일경 제가 근무하고 있던 8736부대에서 그곳을 찾아온 검사들에게 김기설이 기재한 전화번호 및 주소가 써 있는 저의 군인수첩 한 장을 뜯어 내어 준 일이 있습니다.

1. 오늘 서울지방검찰청 416호실에서 검사가 저에게 보여준 수첩 한 장을 제가 91년 5월 13일경 저의 수첩에서 뜯어준 바로 그 수첩 한 장이 틀림없습니다.

1992년 4월 15일 서기선

진술조서

성명 서기선 주민등록번호
주거 서울
본적 충남
연령 세 1966. 2. 28.생

피고인 김기설(481)에 대한 자살방조 등 피의 사건에 관하여 1992. 4. 15.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1. 저는 육군 제8736부대에서 의무대 선임하사로 근무하다가 91. 12. 31. 전역하고 지금은 임시로 역삼동에 있는 매형이 경영하는 남광춘천막국수 집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저는 1991. 5. 13.경 제가 근무하고 있던 부대로 찾아온 검사에게 김기설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군인수첩 중 한 장을 뜯어준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묻는다면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

문: 진술인이 수첩 한 장을 검사에게 제출하게 된 경위를 말하여 보시오.

답: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김기설의 장례가 텔레비전에 방송된 다음 5. 13.경으로 기억하는데 군단 법무참모와 검사 2사람 등이 부대로 찾아와 김기설이가 남긴 필적이 있는지를 묻기에 제 수첩에 있는 글씨 한 장을 뜯어내어 검사에게 주었습니다.

481) '강기훈'의 오기.

문: 어떻게 하여 진술인의 수첩에 김기설의 글씨가 쓰여져 있었는가요.

답: 1988. 5.쯤 김기설이가 제대하던 날인데 제가 김기설에게 연락처를 적어달라고 부탁을 하여 김기설이가 제 수첩에다가 자기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써준 것입니다.

문: 당시 진술인이 근무하던 군 부대를 방문하였던 검사의 기억에 의하면 그 수첩에 김기설 이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적혀 있는데 그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기재한 것인데 확실치는 않지만 김기설의 글씨라고 진술인이 말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답: 제가 기억하기로는 검사들에게 말한 내용은 "기억은 확실치는 않지만 김기설의 쓴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주었습니다.

문: 그러면 그때 뜯어준 수첩을 보면 알아볼 수 있겠는가요.

답: 물론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참고자료 1(수첩 한장)⁴⁸²⁾를 진술인에게 제시하고 살펴보게 한 후,

문: 지금 보여준 거서 91. 5. 13.경 진술인이 검사에게 준 진술인의 수첩 중 한 장인가요.

답: 지금 보여준 것이 제가 그때 검사에게 제 수첩에서 뜯어준 것이 틀림없으며 그 앞면의 첫줄에 쓰여져 있는 송연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저의 글씨이고 둘째 칸에서 여섯째 칸 사이에 적혀 있는 김기설, 이성구, 금병철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은 김기설이가 쓴 것으로 기억하며 그 밑의 구복서, 고모라는 글씨와 전화번호는 저의 글씨이며 뒷면의 김미연 등 8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저의 글씨입니다.

이때 증인에게 확인시킨 수첩 1매의 앞면을 복사하여 조서 말미에 편철하다

문: 진술인이 92. 4. 12. 변호사들에게 확인서를 써준 일이 있는가요.

답: 네, 제가 확인서를 써준 일이 있습니다.

문: 그 경위를 말하여 보시오.

답: 4. 12. 11시 점심때 저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다가 지금은 변호사인 이찬진씨가 변호사 이석태 그

리고 서준식이라는 사람과 제가 있는 역삼동 춘천막국수 집으로 찾아와 그때 있었던 대로 제가 수첩 한 장을 검사 두 사람에게 제출한 내용을 확인서로 써주었습니다.

문: 그후 누구 또 찾아온 일이 있었는가요.

답: 오늘 오후 5시가 지나서 서준식씨가 혼자서 다시 찾아와 지금 검사가 보여준 그 수첩의 사본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맞냐고 묻기에 제가 뜯어주었던 수첩의 사본이라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문: 1991. 5. 13. 부대 근처의 갈비집에서 검사와 군부대 장교 등 몇명의 수첩의 글씨에 대하여 유서의 글씨와 유사한지 상이한지 대화를 하였는데 기억하고 있는가요.

답: 저는 수첩 1매만 제출하였을 뿐 그 식사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그 모임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도 김기설의 쓴 글씨와 유서의 글씨가 유사한지 상이한지 알 수 없으며 유서를 본 기억도 없기 때문에 무어라고 말할 입장이 못됩니다.

문: 참고로 더 할 말이 없는가요.

답: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대로 오기나 중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하다.

진술자 서기선

1992. 4. 15.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신상규

검찰주사(보) 송기덕

* 서기선 수첩 복사본 <생략> (공판기록 3852)

482) 자료집 II책 687쪽 참조.